

제349회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7년2월13일(월)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 건
2.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김동식) 고발의 건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7.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8.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9.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1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수도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수도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수도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6.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4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9.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2.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5.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57.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58.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59.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60.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6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6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6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6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6. 감정노동자보호법안
6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8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8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8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8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8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8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9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9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9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9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9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5.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9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2.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1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0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0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2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주한미군기지 이전, 축소, 철수 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12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9. 청년 첫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 13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4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4.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145. 석탄화력발전소 생명안전업무와 환경오염방지업무의 도급(경쟁입찰) 금지 및 그 종사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입법 및 개선에 관한 청원
- 14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 147. 업무보고
 - 가. 환경부
 - 나. 고용노동부
 - 다. 기상청
- 148.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백종문) 고발의 건
- 149. 이랜드파크 임금체불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150. 이랜드파크 임금체불관련 청문회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 151. 이랜드파크 임금체불관련 청문회 자료 요구의 건
- 152. MBC 노조탄압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153. MBC 노조탄압 관련 청문회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 154. MBC 노조탄압 관련 청문회 자료 요구의 건
- 155. 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156. 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청문회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 157. 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청문회 자료 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 간사(하태경) 인사	17
2.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김동식) 고발의 건	17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김종태 · 김석기 · 강석호 · 홍문표 · 박명재 · 김현아 · 윤종필 · 장석춘 · 이철우 · 김태흠 · 홍철호 · 윤영일 의원 발의)	21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 · 김도읍 · 김학용 · 신상진 · 홍문표 · 이종명 · 황주홍 · 홍철호 · 김태흠 · 강석호 · 김선동 · 이현재 의원 발의)	21
6.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 · 송희경 · 김명연 · 박덕흠 · 김선동 · 이종배 · 이우현 · 윤종필 · 경대수 · 박인숙 의원 발의)	21
7.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
8.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정태욱 · 김성원 · 김현아 · 이은권 · 유기준 · 성일종 · 지상욱 · 김정재 · 박맹우 의원 발의)	21
9.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 · 최인호 · 서영교 · 박재호 · 전재수 · 이원욱 · 한정애 · 김해영 · 송옥주 · 강병원 · 권미혁 · 노회찬 · 김경수 · 민홍철 · 김부겸 · 이상돈 의원 발의)	21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서형수 · 이찬열 · 장정숙 · 최도자 · 우원식 · 어기구 · 양승조 · 홍익표 · 백혜련 · 김진표 · 김병관 · 박광온 · 신동근 · 유동수 · 전해철 · 전해숙 · 권칠승 · 박주민 · 이상돈 · 김종훈 의원 발의)	21
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金成泰 · 장석춘 · 강석호 · 김정재 · 문진국 · 윤종필 · 김승희 · 홍문종 · 하태경 의원 발의)	21
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 · 강길부 · 신보라 · 조정태 · 정양석 · 박명재 · 권석창 · 문진국 · 김종태 · 이종명 의원 발의)	21
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
14.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
15.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 · 김현권 · 김철민 · 송영길 · 표창원 · 이개호 · 제윤경 · 위성곤 · 박광온 · 금태섭 · 손혜원 의원 발의)	22
1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이찬열 · 이동섭 · 전해숙 · 정인화 · 이양수 · 김종희 · 김관영 · 이상돈 · 유성엽 의원 발의)	22
1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 · 박맹우 · 김도읍 · 이장우 · 김종태 · 윤영석 · 이우현 · 김성찬 · 염동열 · 이명수 의원 발의)	22
18.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이찬열 · 이동섭 · 전해숙 · 정인화 · 이양수 · 김종희 · 김관영 · 주승용 · 백재현 의원 발의)	22
19.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
20. 소음 · 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박찬대 · 박재호 · 황주홍 · 추혜선 · 박선숙 · 김정우 · 문미옥 · 소병훈 · 안규백 · 김영춘 · 박주민 의원 발의)	22
2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서형수 · 이찬열 · 장정숙 · 최도자 · 우원식 · 어기구 · 양승조 · 홍익표 · 백혜련 · 김진표 · 김병관 · 박광온 · 신동근 · 유동수 · 전해철 · 전해숙 · 권칠승 · 박주민 의원 발의)	22
2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 · 이정미 · 광대훈 · 김선동 · 경대수 · 이종명 · 장석춘 · 임이자 · 정갑윤 · 김석기 · 이종배 · 황주홍 의원 발의)	22
2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

24.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이원욱 · 윤후덕 · 김상희 · 김현미 · 기동민 · 정성호 · 윤호중 · 윤관석 · 이찬열 의원 발의)	22
25.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김종태 · 김석기 · 강석호 · 홍문표 · 박명재 · 이종명 · 신상진 · 김성찬 · 김현아 · 윤종필 의원 발의)	22
26.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
27.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
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 · 이찬열 · 김해영 · 강병원 · 문미옥 · 황주홍 · 윤후덕 · 정재호 · 이철희 · 박명재 의원 발의)	22
2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 · 이동섭 · 송옥주 · 신용현 · 장정숙 · 김중희 · 박선숙 · 오세정 · 이정미 · 김광수 · 천정배 · 이상돈 의원 발의)	22
3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서형수 · 이학영 · 윤호중 · 송옥주 · 이용득 · 정성호 · 강병원 · 이철희 · 박재호 의원 발의)	22
3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
32.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이찬열 · 주승용 · 이양수 · 김중희 · 김관영 · 윤소하 · 김중로 · 박준영 · 정인화 의원 발의)	22
33.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윤종필 · 金成泰 · 김승희 · 홍문중 · 조훈현 · 김규환 · 박대출 · 김상훈 · 박명재 · 이은권 의원 발의)	22
34.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이상돈 · 이종걸 · 황주홍 · 김관영 · 송기석 · 최명길 · 박선숙 · 김세연 · 오세정 · 최경환(국) · 이상민 · 김삼화 · 김성수 · 진영 · 이태규 · 정동영 · 이원욱 · 박영선 · 박준영 · 이정미 · 신용현 · 이용주 · 조배숙 · 이혜훈 의원 발의)	22
3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 · 강병원 · 권미혁 · 김상희 · 김영주 · 김영춘 · 서형수 · 소병훈 · 오제세 · 위성곤 · 윤후덕 · 이상민 · 이용득 · 이재정 · 전해철 · 진영 · 최윤열 · 표창원 · 한정애 · 홍영표 의원 발의)	22
36.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3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이상돈 · 이종걸 · 황주홍 · 김관영 · 송기석 · 최명길 · 박선숙 · 김세연 · 오세정 · 최경환(국) · 이상민 · 김삼화 · 김성수 · 진영 · 이태규 · 정동영 · 이원욱 · 박영선 · 박준영 · 이정미 · 신용현 · 이용주 · 조배숙 · 김광수 · 이혜훈 의원 발의)	23
3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3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 · 정성호 · 문진국 · 김선동 · 이현재 · 어기구 · 위성곤 · 윤훈 · 김정훈 · 정양석 · 박완수 의원 발의)	23
4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41. 지진 · 지진해일 · 화산의 관측 및 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 · 소병훈 · 유은혜 · 기동민 · 박남춘 · 김영진 · 우원식 · 윤소하 · 이인영 · 윤관석 · 신경민 · 문미옥 · 이철희 의원 발의)	23
42.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4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 · 박정 · 송옥주 · 한정애 · 남인순 · 최명길 · 김상희 · 신창현 · 윤후덕 · 이원욱 의원 발의)	23
4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4547)	23
4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4751)	23
46.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47.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4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안규백 · 송옥주 · 이석현 · 김현권 · 한정애 · 서형수 · 강병원 · 이개호 · 이동섭 · 고용진 · 박홍근 · 이인영 의원 발의)	23

49.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 · 인재근 · 소병훈 · 강창일 · 신창현 · 위성곤 · 정성호 · 김해영 · 이해찬 · 김종대 의원 발의) 23
5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이용득 · 전해숙 · 이해찬 · 김정우 · 윤관석 · 한정애 · 추혜선 · 서형수 · 신창현 · 이정미 · 박재호 · 채이배 · 박홍근 의원 발의) 23
5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 · 김영주 · 이재정 · 진선미 · 김해영 · 정춘숙 · 강훈식 · 윤후덕 · 박남춘 · 안호영 · 김병욱 · 김병기 · 박정 · 김경협 · 서형수 · 서영교 · 이용득 · 안규백 · 윤소하 · 한정애 · 송옥주 · 김종민 · 김영호 · 유은혜 의원 발의) 23
52.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강석호 · 김정재 · 문진국 · 이학재 · 박순자 · 윤종필 · 김승희 · 홍문종 · 하태경 의원 발의) 23
5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 · 유은혜 · 김현권 · 전해숙 · 서영교 · 김영호 · 조승래 · 김정우 · 추혜선 · 이정미 · 신경민 의원 발의) 23
5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55.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 · 문진국 · 이종명 · 홍문표 · 정용기 · 권석창 · 김용태 · 김현아 · 박명재 · 엄용수 의원 발의) 23
56.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 · 최인호 · 박재호 · 전재수 · 이원옥 · 한정애 · 서영교 · 김해영 · 송옥주 · 강병원 · 권미혁 · 노회찬 · 김경수 · 김부겸 · 김영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3127) 23
57.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 · 최인호 · 박재호 · 전재수 · 이원옥 · 한정애 · 서영교 · 김해영 · 송옥주 · 강병원 · 권미혁 · 노회찬 · 김경수 · 김부겸 · 김영진 · 이상돈 의원 발의)(의안번호 3148) 23
58.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강병원 · 주승용 · 이용득 · 서형수 · 우원식 · 이찬열 · 신창현 · 이학영 · 송옥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3398) 23
59.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서형수 · 이학영 · 윤호중 · 윤관석 · 송옥주 · 이용득 · 정성호 · 강병원 · 변재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3828) 24
60.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박재호 · 김경수 · 우원식 · 남인순 · 문미옥 · 한정애 · 이용득 · 이훈 · 최인호 · 박광온 · 권미혁 · 김정우 · 신창현 · 양승조 · 김현미 · 송옥주 의원 발의) 24
6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한정애 · 이용득 · 박재호 · 이정미 · 박선숙 · 서형수 · 김삼화 · 강병원 · 신창현 의원 발의) 24
6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 · 서영교 · 전해숙 · 김정우 · 김상희 · 전해철 · 민병두 · 조정식 · 임종성 · 박남춘 · 김현권 의원 발의) 24
6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6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황주홍 · 고용진 · 김종희 · 윤관석 · 민병두 · 박주민 · 김해영 · 윤호중 · 정인화 의원 발의) 24
6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 · 장정숙 · 신용현 · 김관영 · 김중로 · 황주홍 · 박선숙 · 정인화 · 김수민 · 한정애 · 권은희 · 정동영 · 이동섭 의원 발의) 24
66. 감정노동자보호법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 · 박영선 · 김정우 · 송영길 · 김상희 · 윤후덕 · 김민기 · 서형수 · 서영교 · 노웅래 · 김병욱 · 소병훈 · 손혜원 · 안규백 · 민병두 · 노회찬 · 심상정 · 홍의락 · 여기구 · 이태규 · 윤관석 · 김수민 · 김종희 · 오세정 · 김현미 · 이정미 · 김해영 · 전해숙 · 김경진 · 장정숙 · 박남춘 · 설훈 · 인재근 · 권철승 · 정성호 · 김동철 · 전재수 · 추혜선 · 전현희 · 유승희 · 김성수 · 신경민 · 박광온 · 안민석 · 유은혜 · 임종성 · 우원식 의원 발의) 24
6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 · 강길

부 · 강병원 · 권미혁 · 김영춘 · 김종대 · 김종훈 · 김해영 · 남인순 · 노회찬 · 민홍철 · 박남춘 · 박덕흠 · 박재호 · 서영교 · 소병훈 · 손혜원 · 송옥주 · 신창현 · 유은혜 · 윤호중 · 윤후덕 · 이용득 · 이정미 · 전재수 · 최인호 · 추혜선 · 한정애 의원 발의) 24

6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이용득 · 진선미 · 장정숙 · 한정애 · 문미옥 · 강병원 · 서형수 · 최도자 · 이정미 의원 발의) 24

6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 · 홍영표 · 문미옥 · 이용득 · 이정미 · 우원식 · 서형수 · 고용진 · 박용진 · 김민기 · 전혜숙 · 정춘숙 · 신창현 의원 발의) 24

7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 · 이종명 · 문진국 · 권석창 · 김용태 · 김현아 · 엄용수 · 박명재 · 여상규 · 황영철 의원 발의) 24

7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 · 서영교 · 전혜숙 · 김정우 · 김상희 · 전해철 · 강창일 · 민병두 · 소병훈 · 박남춘 · 김현권 의원 발의) 24

7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 · 김종대 · 윤소하 · 심상정 · 추혜선 · 노회찬 · 권미혁 · 김영주 · 김종훈 · 김해영 의원 발의) 24

7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 · 김영우 · 백승주 · 이종명 · 김종대 · 김선동 · 박명재 · 김성태 · 유승민 · 윤후덕 의원 발의) 24

7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 · 백승주 · 송석준 · 이종명 · 정태욱 · 김승희 · 김종석 · 박성중 · 이군현 · 이철규 · 김성태 · 주광덕 · 강석호 의원 발의) 24

7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7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7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7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 · 안상수 · 윤영석 · 강석진 · 이현재 · 김명연 · 이양수 · 권석창 · 김성원 · 이장우 · 이군현 · 김성찬 · 성일중 · 박찬우 · 이만희 · 주광덕 · 유재중 · 윤상현 · 유민봉 · 홍문중 · 이채익 · 엄용수 · 최교일 · 나경원 · 김승희 의원 발의) 24

7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이해찬 · 이정미 · 박찬대 · 노회찬 · 윤소하 · 박주민 · 최인호 · 추혜선 · 김경협 · 김경진 · 어기구 · 서영교 · 서형수 · 김부겸 · 유동수 · 위성곤 · 유은혜 · 김병욱 · 김철민 · 강창일 · 이석현 · 김수민 · 홍의락 · 김종대 · 문희상 · 임종성 · 권미혁 · 전해철 · 박남춘 · 김정우 · 송영길 · 오영훈 · 이용득 · 권철승 · 송옥주 · 윤종오 · 민홍철 · 김경수 · 김종훈 · 조승래 · 주승용 · 이훈 · 김광수 · 이찬열 · 심상정 · 윤후덕 · 박홍근 · 한정애 · 김삼화 의원 발의) 25

8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 · 김종대 · 윤소하 · 심상정 · 추혜선 · 노회찬 · 유은혜 · 박주민 · 윤종오 · 김종훈 의원 발의) 25

8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안규백 · 김현권 · 소병훈 · 설훈 · 이석현 · 김경협 · 서형수 · 한정애 · 이동섭 · 이정미 · 민병두 · 손혜원 · 이인영 · 김영춘 · 송옥주 · 박재호 · 김부겸 · 원혜영 · 신창현 · 홍영표 · 유은혜 의원 발의)(의안번호 2652) 25

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정성호 · 박정 · 인재근 · 어기구 · 신창현 · 손혜원 · 서형수 · 문미옥 · 진선미 · 김정우 · 유은혜 · 홍영표 · 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2684) 25

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 · 조배숙 · 김중희 · 유성엽 · 윤영일 · 오세정 · 장정숙 · 최경환(국) · 박주현 · 한정애 의원 발의) 25

8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김종훈 · 어기구 · 박용진 · 노회찬 · 추혜선 · 윤소하 · 심상정 · 김종대 · 윤종오 · 김상희 · 박재호 · 박남춘 · 손혜원 의원 발의) 25

8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 손혜원 · 윤소하 · 노회찬 · 박재호 ·

- 백혜련·전혜숙·권미혁·윤호중·윤관석·유은혜·김현미·신창현·장정숙·인재근·박남춘 의원 발의) 25
8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권미혁·김영주·김종훈·김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3597) 25
8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권미혁·김영주·김종훈·김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3638) 25
8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송옥주·손혜원·윤종오·소병훈·유은혜·황주홍·이상돈·장정숙·서영교·박남춘·박재호·김상희·김정우·송영길·표창원·신창현·정성호·윤관석·박주민·김해영·김종대·이정미·박선숙·김관영·이해찬·김현미 의원 발의) 25
8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이동섭·이석현·소병훈·안규백·김현권·서형수·우원식·김경협·김종훈·이정미·홍영표·설훈·김영주·한정애·강병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4053) 25
9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이석현·소병훈·안규백·김현권·서형수·우원식·김경협·김종훈·이정미·홍영표·설훈·김영주·한정애·강병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4072) 25
9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최명길·서영교·윤후덕·임종성·김병욱·박정·박경미·윤종오·이용득·이정미·이찬열·서형수·전혜숙·안규백·김상희·신창현 의원 발의) 25
9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권미혁·박경미·박홍근·어기구·윤호중·이용득·이태규·채이배·최명길 의원 발의)(의안번호 4409) 25
9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홍영표·이용득·이정미·우원식·서형수·박용진·김민기·전혜숙·정춘숙 의원 발의) 25
9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전혜숙·정인화·이종걸·김종회·김관영·주승용·위성곤 의원 발의) 25
95.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홍영표·박홍근·이용득·김종대·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윤종오·박용진·강병원 의원 발의) 26
9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윤소하·김정우·양승조·김해영·인재근·남인순·최도자·설훈·전혜숙 의원 발의) 26
9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민병두·박재호·전혜숙·권미혁·진선미·김해영·유은혜·소병훈·김현미·장정숙 의원 발의) 26
9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권미혁·김영주·김종훈·김해영 의원 발의) 26
9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문미옥·강병원·유은혜·이학영·제윤경·박광온·서형수·김경협·남인순·박정·이용득·도종환·양승조·홍영표 의원 발의) 26
10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이철우·조훈현·정병국·강석호·김도읍·곽대훈·정용기·김성원·박명재 의원 발의) 26
10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6
102.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홍영표·양승조·문미옥·윤호중·윤후덕·백혜련·박재호·신창현·한정애·오영훈·설훈·박남춘·전혜숙·서형수·박용진·김삼화 의원 발의) 26
1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노회찬·추혜선·

	윤소하·심상정·김종대·김종훈·윤종오·우원식·어기구 의원 발의)	26
10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이동섭·이석현·소병훈·안규백·김현권·서형수·우원식·김경협·김종훈·이정미·홍영표·설훈·김영주·한정애·강병원 의원 발의)	26
1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정성호·박정·인재근·어기구·신창현·손혜원·서형수·문미옥·진선미·김정우·유은혜·홍영표·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2686)	26
1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이용득·전혜숙·이해찬·김정우·윤관석·한정애·추혜선·서형수·이정미·박재호·채이배·박홍근 의원 발의)	26
1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서영교·김정우·윤종오·손혜원·박주민·어기구·윤소하·김삼화·채이배·박홍근·박경미·서형수·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3055)	26
1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김중로·이춘석·이원욱·이용득·우원식·최명길·문진국·임종성·한정애 의원 발의)	26
10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홍영표·양승조·문미옥·윤호중·윤후덕·백혜련·박재호·신창현·한정애·오영훈·설훈·박남춘·전혜숙·서형수·박용진·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3478)	26
1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홍영표·문미옥·이용득·이정미·우원식·서형수·유승희·고용진·박용진·김민기·전혜숙·정춘숙·신창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4541)	26
1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임이자·김승희·황영철·곽대훈·박덕흠·권석창·정병국·문진국·배덕광 의원 발의)	26
1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6
1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강훈식·권미혁·기동민·김경수·김병관·김병욱·김상희·김영춘·김영호·김정우·김종훈·김종민·김철민·김한정·문미옥·민병두·박경미·박광온·박정·설훈·소병훈·송기현·송옥주·어기구·우원식·위성곤·유동수·유은혜·윤관석·윤호중·윤후덕·이훈·임종성·전해철·정재호·조승래·주승용·최운열·홍영표 의원 발의)	26
1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서영교·김정우·윤종오·손혜원·박주민·어기구·윤소하·김삼화·박홍근·박경미·서형수·홍영표 의원 발의)	27
1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최인호·박재호·전재수·이원욱·한정애·김해영·강병원·김경수·김영진·민홍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3144)	27
1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최인호·박재호·전재수·이원욱·한정애·김해영·강병원·김경수·김영진·민홍철·이정미·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3217)	27
1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최인호·박재호·전재수·한정애·김해영·강병원·김경수·민홍철·이정미·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3253)	27
1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정성호·김수민·김정우·김현미·손혜원·윤관석·표창원·송옥주·김해영·박남춘 의원 발의)	27
1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김진표·이찬열·백혜련·김영진·장정숙·이용득·진선미·문미옥·강병원·서형수·최도자·이정미 의원 발의)	27
1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함진규·김성찬·김명연·성일중·이주영·권석창·홍문표·정태욱·정병국 의원 발의)	27
12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주호영·	

- 안상수·배덕광·이양수·이명수·경대수·조훈현·전희경·황영철 의원 발의) 27
12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윤소하·김정우·양승조·김해영·인재근·남인순·최도자·설훈·전혜숙 의원 발의) 27
12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신창현·송옥주·노웅래·서형수·유은혜·김정우·강훈식·백재현·양승조 의원 발의) 27
1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김해영·추혜선·윤소하·김정우·남인순·김경진·윤관석·전혜숙·김두관·김상희·변재일 의원 발의) 27
125. 주한미군기지 이전, 축소, 철수 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염동열·정갑윤·장석춘·엄용수·김현아·김선동·어기구·윤후덕·김석기·경대수·민경욱·김성태·김종대 의원 발의) 27
12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노회찬·추혜선·심상정·윤소하·김종대·서형수·서영교·김현권·위성곤·김해영 의원 발의) 27
12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박정·이찬열·박광온·권칠승·인재근·김해영·이훈·정재호·유승희·김성수 의원 발의) 27
12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정병국·안규백·이종명·황주홍·이명수·박명재·최도자·박정·유승민·황영철 의원 발의) 27
129. 청년 첫일자리 지원 특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박정·신창현·이훈·김현권·윤후덕·박범계·김경수·문미옥·오제세·유승희·최운열·유은혜·송옥주·이상민 의원 발의) 27
13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박정·신창현·이훈·박홍근·김현권·윤후덕·박범계·김경수·오제세·최운열·조웅천·유은혜·송옥주·김영춘·추혜선·박광온·김정우·윤관석·고용진·유승희·이정미·이상민·박주민 의원 발의) 27
13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신창현·이훈·박홍근·김현권·윤후덕·박범계·김경수·문미옥·오제세·유승희·최운열·조웅천·유은혜·송옥주·이상민 의원 발의) 28
13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신용현·장병완·송기석·황주홍·오세정·김경진·이동섭·유성엽·주승용·김종희·윤영일·정인화·정갑윤·이찬열·김관영·김동철·장정숙·김삼화·박준영·손금주 의원 발의) 28
13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이우현·박찬우·김순례·박성중·이명수·이은권·안상수·유승민·김성찬·조원진·김성태·송희경 의원 발의) 28
13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박명재·김석기·경대수·정갑윤·박덕흠·하태경·이철규·조훈현·송희경·윤한홍·함진규·이종명·김선동 의원 발의) 28
13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정세균·박지원·김현미·홍영표·송옥주·박경미·이훈·홍문표·김태년·이정미·황주홍·강훈식·민홍철·양승조·김영춘·박주선·김성식·조정식·박홍근·윤관석·민병두·김종민·천정배·전현희·박정·신경민·추미애·강창일·김영호·전해철·박준영·윤희중·변재일·강병원·위성곤·신창현·남인순·김부겸·백혜련·권미혁·기동민·김경협·박광온·김관영·노회찬·김광수·문희상·조웅천·손혜원·권칠승·소병훈·임종성·인재근·박남춘·고용진·김정우·박재호·김종희·김진표·이개호·김한정·최경환(국)·김종훈·오영훈·이찬열·송기석·제윤경·홍의락·문미옥·채이배·백재현·정인화·이동섭·안규백·이용득·김두관·송기현·진선미·심상정·추혜선·정병국·김병관·황희·최명길·이원욱·이춘석·박찬대·설훈·노웅래·윤후덕·서영교·서형수·전혜숙·주승용·김현권·김철민·유은혜·김영진·유성엽·심재권·박용진·안호영·김상희·이해찬·김경수·주호영·박순자·정태욱 의원 발의) 28
13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박정·신창현·박홍근·김현

권 · 윤후덕 · 박범계 · 김경수 · 문미옥 · 오세세 · 유승희 · 최운열 · 조웅천 · 유은혜 · 송옥주 · 이상민 · 홍익표 · 박찬대 · 정성호 · 어기구 · 박주민 · 김정우 · 조정식 의원 발의)	28
13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 · 민병두 · 김해영 · 문미옥 · 이찬열 · 이춘석 · 김정우 · 김현권 · 신경민 · 김현미 의원 발의)	28
13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 · 주승용 · 송기석 · 김동철 · 김해영 · 신용현 · 황주홍 · 오세정 · 윤영일 · 이용주 · 장정숙 · 김삼화 · 김종희 의원 발의)	28
13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 · 김현아 · 박덕흠 · 박완수 · 이명수 · 이우현 · 이학재 · 이해찬 · 이현승 · 이현재 · 정용기 · 함진규 · 홍문표 의원 발의)	28
14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 · 권미혁 · 김해영 · 강병원 · 서영교 · 김상희 · 도종환 · 박완주 · 전해숙 · 박광온 의원 발의)	28
14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 · 정진석 · 김현아 · 박인숙 · 송희경 · 이종배 · 조훈현 · 김석기 · 박명재 · 함진규 의원 발의)	28
14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 · 김영호 · 정춘숙 · 송옥주 · 문미옥 · 김삼화 · 전해숙 · 백혜련 · 박경미 · 양승조 · 서형수 의원 발의)	28
14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144.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 · 이종명 · 황주홍 · 염동열 · 황영철 · 광대훈 · 장제원 · 강효상 · 金成泰 · 정병국 의원 발의)	28
145. 석탄화력발전소 생명안전업무와 환경오염방지업무의 도급(경쟁입찰) 금지 및 그 종사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입법 및 개선에 관한 청원(이정미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28
14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정동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29
147. 업무보고	33
가. 환경부	
나. 고용노동부	
다. 기상청	
2.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김동식) 고발의 건(계속)	61
o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68
148.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백종문) 고발의 건	69
147. 업무보고(계속)	72
가. 환경부	
나. 고용노동부	
다. 기상청	
o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75
149. 이랜드파크 임금체불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76
150. 이랜드파크 임금체불관련 청문회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76
151. 이랜드파크 임금체불관련 청문회 자료 요구의 건	77
152. MBC 노조탄압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77
153. MBC 노조탄압 관련 청문회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77
154. MBC 노조탄압 관련 청문회 자료 요구의 건	77
155. 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77
156. 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청문회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78
157. 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청문회 자료 요구의 건	78
147. 업무보고(계속)	78
가. 환경부	
나. 고용노동부	

다. 기상청

(10시31분 개의)

○위원장 **홍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약 2주간 위원회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는 부득이하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시급한 민생법안의 처리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회가 중심을 잡고 일해야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희 상임위에는 지금 법안도 많이 계류 중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20대 국회 와서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도 위원장으로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각 당의 사정 때문에 회의 조차 잡을 수가 없었고 1월 임시국회가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국회가 불 꺼진 국회다, 일 안 하는 국회다 이런 비판까지 받았던 것을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국민들의 민생과 연관된 법안을 처리하고 또 현안들에 대해서 활발하게 상임위 활동이 이루어져야 일하는 국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또 지금 구제역이라든지 또 우리 고용노동부 소관에서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2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만약에 4월에 대선을 하게 되면 4월 국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임시국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20대 국회

와서 1년 동안 고용노동부 산하 같은 경우에는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1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원장을 둘러싸고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각 당 간사에 빨리 협의를 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법안소위부터 좀 정상화되어서 2월 국회에서 꼭 성과를 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이 많은 관계로 곧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현재 공석인 바른정당의 간사 위원을 선임하고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처리한 다음 법안 및 청원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부 및 기상청에 대한 201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완희 입법조사관입니다.

조국제 입법조사관입니다.

최유순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임이자 위원** 예.

○**위원장 홍영표** 예.

○**임이자 위원** 지금 의사일정에 간사 선임 건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환노위의 소위 위원장이 환경법안소위 위원장님이 있고 노동법안소위 위원장님이 있는데 환경법안소위 위원장님은 야당에서 맡기로 했고 노동법안소위 위원장은 여당이 맡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른정당도, 이제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이 나감으로 인해서 바른정당도 야당이 됐는데 노동법안소위 위원장은 여당에서 맡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여러 우리 환노위 위원 들께 호소드리는데 여당이 맡는 게 균형도 맞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답합니다.

○**河泰慶**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홍영표** 예, 그러면 우리 하태경 위원께서 말씀을 하십시오.

○**河泰慶** 위원 안 그래도 의사진행발언 한 건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두 번째 안으로 국정감사 증인(김동식) 고발의 건이 있는데 지난번 간사 회의 때 당시에 불출석 증인 네 사람을 안건 조정 기간이 지나면 고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고 그 네 사람 중에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 건은 해고자가 복직이 됨으로써 고발조치 취하하기로 우리가 간사 간 합의를 했고요.

세 사람인데, 나머지 두 사람은 한국GM노조 지부장 정종환하고 당시 채용 비리에 연루된 고지섭 상무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불출석사유서 낸 이후에 본인의 어떤 중대한 범죄에 대한 자성, 반성 여기에 대한 반성문이라도 내라, 그러면 빼 주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간사 협의에서 그렇게 서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보냈다고 해서 체크를 해보니까 오지 않았습시다. 오지 않았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자동적으로 김동식과 더불어서 고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같이 오늘 의제에 올렸으면 좋겠고.

또 언론에 난 대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인 채용 비리를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GM노조 간부 중에 무려 17명이 채용 비리 범죄에 공모를 했고 또 정규직 35.5%를 성적 조작을 했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조직적 범죄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아무런 반성을 국회에 표시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엄중히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같이 고발 대상자에 자동적으로 포함되어야 된다, 반성문을 안 보낸 것이 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동소위원장 건은 저희 당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만 관계된 것도 아니고 다른 상임위에 같이 걸려 있는 것인데……

두 가지 이유로 저희 당 입장은 그대로 있는

게 좋다, 이유는 정치 질서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급격한 변화의 한 가운데에 있고 또 당세라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급변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당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당이 위원이 많아질 때마다 자꾸 바뀌게 되면 국회의 안정적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형식적으로는 새누리당, 당명 바뀌었나요? 아무튼 여당이지만 대통령이 대통령직 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지금 여당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내용적으로 지금 현재 여당으로 보기 어렵고 또 당세라는 것은 계속 바뀔 수가 있다, 때문에 저희 정치 질서가 대선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국면에서 그 부분은 다시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시점이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강병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강병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병원** 위원 초선 위원으로서 환노위에 들어와서 다들 열심히 일하고자 하시는 것들은 다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정말 국민에게 봉사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허투루 시간을 쓸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달 동안에, 우리가 1월 국회도 그렇고 열심히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 환노위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부터 먼저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쨌든 법안소위원장 문제를 가지고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회의 운영이라는 것이 국회의 관례를 중심으로 그리고 여야 간의 합의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해 왔다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른정당의 하태경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굉장히 미래적인 것이고 확정할 수 없는 것이며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내용적으로 여당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취지 인지는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새누리당이 여당인 것은 법적인 것으로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내용적으로 여당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

고요.

그리고 당세, 정치 질서의 급변 등 미래 상황을 예측하셨는데 그런 것 역시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상황이 와서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처리할 문제는 처리하고 지금은 새누리당이 여당으로서 있는데 국회 관례에 따라서 새누리당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른정당의 하태경 위원께서 빨리 결단을 내려 주셔서 환노위가 제대로 국민 앞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홍영표 이 논쟁을 좀 길게 하시는 것은 그렇고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저희 소위원회와 전체 상임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도 사실 법안 처리를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소위원장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1월에 소위가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월에도 이런 사태가 계속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월 국회가 없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6월인데 20대 국회 들어와서 지금 몇 개 법안은 1년 동안 저희가 논의도 못 해 보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국회의 상임위원장이나 소위원장은 사실상 선출해서 보임이 되고, 그래서 본인 의사에 따라서 그 진퇴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는 새누리당에서 하든 바른정당에서 하든 관계없이 저희 상임위를 빨리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이 문제 때문에 또 2월에도 법안소위도 열릴 수 없다고 하고 그리고 상임위마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면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바른정당하고 새누리당에서 빨리 협의를 하셔서 결론을 내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마무리하시지요. 그러시겠습니까?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그냥 막연히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수요일 날 법안소위가 있지 않습니까? 만일 또 그것이 합의

가 안 돼서 수요일 날 법안소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거나 이렇게 된다면 정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사이에서의 이 관계 문제 때문에 전체 법안소위 자체가 벌써 두 달이나 지체됐는데 내일모레 있는 회의까지 또 유회가 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오늘내일 사이에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홍영표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시지요.

또 하시겠습니까?

○임이자 위원 예, 제가 문제 제기를 했으니, 이의 제기했으니……

○위원장 홍영표 임이자 위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 지금 위원장님과 강병원 위원님 그리고 이정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마음 잘 알고요. 또 우리가 진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을 해야지요. 그래서 바른정당과 새누리당 사이에서 노동소위 위원장 가지고 하는 부분은 오늘 여기서 일단락 짓고요, 일단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머니까 여기서 일단락 짓고 그러나 수요일 날 노동소위가 열리기 전까지는 이 문제를 양당이 매듭지을 수 있도록 중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영표 이 문제에 관련된 발언이십니까?

○신보라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홍영표 신보라 위원님.

○신보라 위원 소위 위원장은 원칙에 맞게 풀어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GM대우 노조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이번에 드러난 사건으로 보면 노조가 취업 통과권을 쥐고 청년의 절박함을 돈으로 맞바꾸려는 행태에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악습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단체협약상의 고용세습 조항 등이 조금 악용되어 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려서 좀 명확하게 규명되고 시정될 것은 시정되는 그런 노력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泰慶 위원 위원장님, 아까 좀 오해의 소지

가 있는 발언이 있어서 지금 제가 그것만 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예, 하십시오.

하태경 위원님.

○河泰慶 위원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고용노동법안소위원장으로서는 최대한 많은 의견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치의 정신에서 우리가 아주 성실하게 법안 심의를 해 왔던 과정을 다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께서 제가 위원장으로 있으면 일이 제대로 안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가지고……

○강병원 위원 제가요?

○河泰慶 위원 거의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위원장 홍영표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 것 아니지요?

○위원장 홍영표 예.

○河泰慶 위원 그러면 뭐……

그래서 지금도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사 간 의견 차가 있는데 최대한 타협을 해서 협치의 정신에 맞게 합의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서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형수 위원 일단 법안소위 위원장 문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저는 더 큰 문제가 간사단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께서도 간사 간 합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제가 이해하는 국회법은 일단 전체 상임위 운영에 관련해서는 위원장이 전체적인 권한을 갖되 다만 필요한 부분은 간사와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간사가 네 분으로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상임위 일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안건 이런 방향 자체가 전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상임위 활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연 상임위 전체회의보다 간사단 회의가 더 상위기구인지 하는 그런 심각한 걱정을 저희들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간사단 회의 자체가 이것이 정말 합의제인지 아니면 필요하면 다수결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다음 간사 간의 협의·합의 때문에 상임위 자체가 파행되는 일 자체는 이번에 분명히 좀

바로잡아야 되겠고요.

붙여서 말씀드리면 분명히 지금 현재 여당·야당으로 해서 소위원회를 맡기로 했으면 실사 여당이 의석수가 제3당 이하가 되더라도 당연히 여당이 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이해 자체에 대해서 좀 다시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그 문제는 아무튼 하태경 간사님하고 임이자 간사님하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서 원만하게 합의해서 결론을 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태경 위원님, 신보라 위원님 말씀하신 한국GM에 대한 청문회는 이따가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안은 취업 비리를 한번 묶어서 ‘최경환 전 부총리를 비롯한 권력형’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도 많이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꼭 특정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묶어서 취업 비리에 관한 청문회를 한번 추진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이따가 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泰慶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다른 건 하나 꼭 짚을 게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예, 말씀하십시오.

○河泰慶 위원 뭐냐 하면 새누리당에서 사·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원진 위원이 사임을 하고 새로운 분이 보임이 됐는데 배덕광 위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 결정이 언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배덕광 위원은 지금 환노위 출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이 부분 사·보임 문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셔서 가지고 환노위 출석할 수 있는 분으로 보임을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홍영표 저는 조원진 위원 사·보임은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니다. 그것은 하여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 건

(10시52분)

○위원장 홍영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서 현재 공석

중인 바른정당의 간사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해당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른정당에서는 하태경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관례대로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하태경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하태경) 인사

○위원장 **홍영표** 하태경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泰慶** **위원** 지금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저희 환노위에서는 20대 국회 출범하면서부터 많은 내부의 의견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끈질기게 그리고 성실하게 협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정신을 앞으로도 철저히 지키겠다는 말씀 새로운 다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김동식) 고발의 건

○위원장 **홍영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16년도 국정감사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국정감사장에 불출석한 증인 중 불출석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김동식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안건은 지난 10월 14일 새누리당의 요구로 안전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안전조정위원회가 선임되지 않아 조정을 마치지 못한 4건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 중 간사 간 합의에 따라 고발하기로 결정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원**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강병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병원** **위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5조를 보면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 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그 본문의 죄라는 것이 뭐냐 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노위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많은 증인들을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증인들이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전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정도로 그때 많은 논의도 있었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많은 증인들이 불출석을 했는데, 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고발하여야 된다고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김동식 불출석 증인 고발 건만 있지 나머지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한 고발은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하태경 간사님께서 의사 진행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GM대우의 노조 증인들 불출석 건에 대해서는 반성문을 내면 빼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고 간사들 사이에서 합의가 됐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그게 제출이 안 돼 가지고 다시 이 사람들도 의제에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이 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여야 된다고 의무사항인데 이것이 정말 간사 몇 분이서 합의하시면 면책이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는 간사들께서 그 불출석 증인들을 면책하실 하등의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잘못된 간사들 간의 합의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환노위 모든 위원 분들이 국정감사를 위해서 엄청나게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본인의 이 증인들에게 여러 가지 것을 묻고 확인하고 새로운 세상의 변화를 만들고자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함으로써 본인이 몇 달 간 국정감사 준비했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경우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긴급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증인으로 당연히 출석했어야 됴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 우리 환노위 그리고 국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저는 이 증인들에 대한 고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MBC 백종문 증인의 경우 사용자의 불법

행위를 스스로 실토했습니다. 그래서 백종문 녹취록이 나왔고 당사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MBC 인사노무관리 담당 임원이었고 미래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특히 MBC 경영진 같은 경우는 2012년 MBC 노동조합의 파업 종료 후에 보복성 해고와 징계, 손배가압류, 단체협약 일방해지, 각종 직종 폐지, 이루 말할 수 있는 노동조합 탄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국감에서 증인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최근 최순실 청문회에 불출석했던 증인들도 백종문과 같이 재판 수사 중이라는 등의 이유를 댔지만 우병우 등 불출석한 증인 32명 전원에 대해서 고발 조치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일입니다. 2월 국회운영위원회에서도 불출석 증인과 위증한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증감법을 통과시키고자 국회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회의 권위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야 간사 간에 면책조항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국감에 불출석했던 증인들 전원에 대해서 고발조치하자라고 긴급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강병원 위원님께서 국감에 불참한 모든 사람들을 고발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백종문 증인에 대해서는 안건을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강병원 위원 예, 긴급동의.

○위원장 **홍영표** 그러면 그것은 안건을 저희가 이따가 표결을 하겠습니다. 안건이 성립되려면 저희가 과반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태경 간사님이 말씀하신 한국GM의 두 사람은 간사 간에 그 협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사자들한테 왜 그날 출석을 못 했는지를 내라고, 반성문을 하거나 뭘 내라고 했는데 우리 행정실에서 통보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논의를 하십시오.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지금이라도 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고발할 것인지, 검찰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저는 그때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그당시에 병원에 있어서, 병원에 불가피하게 가야 해서 못 온다는 것을 구두로만 전달받았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통보가 안 됐습니다, 그 서류를

내라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간사 간의 협의를 한 것은 너무나 증인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선별해서 원활하게 국감을 진행하기 위해서 간사 간 협의를 한 것이고 또 그중에서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고발조치에서 배제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것을 좀 알아주시고요.

일단은 김동식 문제는 사실 지난번 간사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처리하고요.

그다음 우리 강병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MBC 백종문 위원은 안건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시니까, 긴급동의하시니까 그것은 안건으로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GM 문제는 하태경 간사님이…… 우리 행정실에서 그 간사 간 합의해서 반성문이나 사유서를 내라는 통보를 안 했습니다, 간사 간 합의한 것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하태경 간사님이 판단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하자면 그냥 고발을 할 것을, 이것도 안건에 올려서 표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증인 문제.

그러면 먼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하고……

○위원장 **홍영표** 아니, 종합적으로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지난번 간사 간에 합의된 것만 안건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된 것은 김동식이었고……

○河泰慶 위원 합의된 것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아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자고요.

○河泰慶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때 합의 내용을 위원장님이 전달을 약간 잘 못 하고 계셔가지고 그 부분 정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장 **홍영표** 제가요?

○河泰慶 위원 예.

○위원장 **홍영표** 제가 전달을 잘 못 했다고요?

○河泰慶 위원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河泰慶 위원 우선 강병원 위원 의견을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그러면 예외 없이 편파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강병원 위원 제가 편파적으로 하자는 얘기 안

했잖아요.

○河泰慶 위원 그러면 긴급동의를 불출석한 사람들 다 거명을, 긴급동의를 하셔야지 그중에 한 사람만 딱 찍어서 하는 이것은 보복성이다……

○이정미 위원 4명을 다 얘기했어요.

○강병원 위원 아니, 몇 분 얘기가 되셨다면서요?

○河泰慶 위원 그러면 긴급동의를 보완을 해 주세요, 긴급동의를.

○위원장 홍영표 그러니까 1명만 하세요.

○河泰慶 위원 백종문 플러스 당시 불출석한 대우조선사장 정성립 이분까지도 긴급동의를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강병원 위원 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니까 하실 말씀 하시고 제 얘기 제가 알아서 할게요.

○河泰慶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편파적이라는 것이고……

○위원장 홍영표 하태경 간사님 발언 중입니다. 끝나고 말씀하십시오.

○河泰慶 위원 두 번째는 간사 간 합의 내용은 반성문 없으면 이게 저절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한국GM은. 그래서 김동식과 동시에 상정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합의 내용입니다. 반성문 있으면 빼고 없으면 올라간다, 오늘 사실 우리가 종결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동시에 지금 고발 안건으로 올리는 게 맞고요.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간사 간 합의 내용과 다르다……

○위원장 홍영표 그렇지 않고요.

임이자 위원님 간사 협의 말씀하십시오.

○임이자 위원 저는 국정감사할 때, 증인 채택하고 했을 때는 간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랐고요.

○위원장 홍영표 최근에.

○임이자 위원 최근에 와서는 지금 4당 간사 간에 합의가 있었던 부분은 김동식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발의 건으로 가기로 했고 나머지는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 본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해석되어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시다.

○임이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물론 우리가 강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수궁을 합시다라는 원만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우리 환노위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간사 간에 합의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간사 간에 합의해 온, 관례상으로도 합의해 오고 그렇게 갔던 부분들을 지금 와서 또 긴급동의해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 환노위 자체를 끌고 가지 말자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는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이렇게 하시지요.

이 문제는요 지금 잘못하면 그냥 공방전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증인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고 그다음 한국GM에 대해서도 안건 하십시오. 그럼 바로 처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영표 왜냐하면 어차피 다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진짜……

○위원장 홍영표 아니, 지금 국회법상에 긴급동의로 제안을 하면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임이자 위원 아니, 지금까지 간사 간에 합의를 죽 잘 해 왔는데 그런데 무조건 긴급동의 받으셔 가지고 계속 투표에 의해서 의결한다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로 간의 협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숫자상으로도 지금 밀리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여야 간에 서로 균형 있는 대화를 하겠느냐 이것이지요.

○위원장 홍영표 아니, 국회법상에 긴급동의라는 회의 진행상의 규정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면 그것을 위원장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럼 제가 무시하고 가나요?

○임이자 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잘 해 왔지 않습니까? 여야 간사 간에 잘 해 왔고 서로 얘기 잘 해 왔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것을 또 인정해서 왔는데 이제 와 가지고 그 건 하나만 달랑 들고 와서 이것을 긴급동의 한다고 하면 환노위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영표 아니, 위원장이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회의 진행을 하는 사람이고 국회법상의 어떤 회의규정, 절차에 따라서 제안하는 것을 제가 하지 마라, 하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간사 간 협의를 아마 거의 뭐 한 열 차례는 했을 것입니다. 간사 간 협의해서 결론이 안 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긴급동의를 해서 전체회의에서 다루겠다고 하면 저희 상임위에서는 전체회의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

○신보라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신보라 위원님.

○신보라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국정감사 때 증인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실은 지난 10월부터 거의 사오 개월 정도를 계속 논의를 해 왔던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10월 14일의 환노위 회의록에 보더라도 그때 당시 안전조정위원회에 회부했던 그때부터 실은 간사 간에 거의 열 차례가 넘는 회의와 진통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한 측면들도 있었고 그런 갈등을 거치면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결론을 내서 오늘 이 안건이 올라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정 정도 합의에 이른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 위원의 지적으로 올라와서 이 모든 그동안의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 논쟁들은 다 뒤엎고 긴급동의로 그냥 이 사안을 다시 다 올려 가지고 개별 처리하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간에 있었던 간사 간의 진통과 합의의 노력들은 또 뭐가 될 것이며 그러면 이제 모든 사안들이 그냥 간사 간에 합의와 노력을 하다가도…… 어쨌든 오늘 안건은 4당 간사 간의 합의를 거쳐서 결국 안건으로 상정이 된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다시 또 다 뒤집는다고 하면 모든 환노위의 전체회의가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우리가 함께 인지하고 좀 풀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강병원 위원님께서도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 보심이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그래서 저희가 긴급동의를 오

면 바로 그게 안건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다수가 찬성할 때만 안건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간사 협의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간사 협의해서 합의가 안 되면 이 상임위 자체가 그냥 거의 마비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이고요.

저는 지금도 당연히 4당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발의권이나 이 자체를 제가 제한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십시오.

○이정미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의사진행……

○위원장 홍영표 먼저 이정미 위원님이 하십시오. 하고, 문진국 위원님도 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이 얘기를 계속 공방을 하면 끝이 안 날 것 같아서요. 일단 회의는 진행이 돼야 되고 그래서 지금 여야 4당 합의한 김동식 고발건을 먼저 처리해 놓고 지금 백종문 고발 건,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 이분이 증인출석을 안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법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시니까, 오후에 노동부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정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지금 환경부나 저기에서 많이 와 계시고, 그러면 오후로 이 논의를 넘기면 어떻습니까, 국정감사 안건을?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겨서 그 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간사님들끼리 협의를 해 주십시오.

○문진국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홍영표 문진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진국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회의는 진행을 하고 오후 때 다시 간사들이 모이니까 합의해서 그때 처리하도록 이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안 때문에 지금 다 기다리고 계시니까 법안을 오전에 빨리 처리하고 또 환경부까지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점심시간에 간사 간 협의나 위원님들 사이에 논의를 하셔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 되면 오후에 이 안건 그대로 하겠습니다.

○河泰慶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영표 동의 안 되십니까?

○河泰慶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 말씀만 드리고……

○위원장 홍영표 예.

○河泰慶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한국 GM 고지섭·정종환 두 사람에게 대한 반성문 제출 건을 통보를 안 했다고 하셨는데요, 간사 간에 합의된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 부분을 그렇게 태연하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

우리 위원회에서 어쨌든 결정된 것을 집행하는 책임은 저는 위원장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이 위원장님이 지시를 했는데 집행이 안 된 것인지 위원장님이 지시를 안 하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명확지 않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원회에서 반드시 집행해야 될 사안인데 그 부분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명확히 해 주셔서 가지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영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사 간에 그렇게 회의에서 합의를 하였고 그것도 저는 구두로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제가 한정에 간사한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행정실에다가, 행정실장에게 말을 해서 통보가 서면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정에 간사를 통해서 그 두 사람은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하니까 서류를 제출하거나 반성문을 쓰면 고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행정실에다가 서면으로 다시 통보해라 이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간사 간에 합의해서 행

정실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어찌 됐든 그것은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국정감사 증인의 건은 오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김종태·김석기·강석호·홍문표·박명재·김현아·윤종필·장석춘·이철우·김태흠·홍철호·윤영일 의원 발의)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김도읍·김학용·신상진·홍문표·이종명·황주홍·홍철호·김태흠·강석호·김선동·이현재 의원 발의)

6.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송희경·김명연·박덕흠·김선동·이종배·이우현·윤종필·경대수·박인숙 의원 발의)

7.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정태욱·김성원·김현아·이은권·유기준·성일종·지상욱·김정재·박맹우 의원 발의)

9.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최인호·서영교·박재호·전재수·이원욱·한정애·김해영·송옥주·강병원·권미혁·노회찬·김경수·민홍철·김부겸·이상돈 의원 발의)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서형수·이찬열·장정숙·최도자·우원식·여기구·양승조·홍익표·백혜련·김진표·김병관·박광운·신동근·유동수·전해철·전혜숙·권칠승·박주민·이상돈·김종훈 의원 발의)

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金成泰·장석춘·강석호·김정재·문진국·윤종필·김승희·홍문중·하태경 의원 발의)

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강길부·신보라·

- 조경태 · 정양석 · 박명재 · 권석창 · 문진국 · 김종태 · 이종명 의원 발의)
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 · 김현권 · 김철민 · 송영길 · 표창원 · 이개호 · 제윤경 · 위성곤 · 박광운 · 금대섭 · 손혜원 의원 발의)
 1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이찬열 · 이동섭 · 전해숙 · 정인화 · 이양수 · 김종회 · 김관영 · 이상돈 · 유성엽 의원 발의)
 1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 · 박맹우 · 김도읍 · 이장우 · 김종태 · 윤영석 · 이우현 · 김성찬 · 염동열 · 이명수 의원 발의)
 18.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이찬열 · 이동섭 · 전해숙 · 정인화 · 이양수 · 김종회 · 김관영 · 주승용 · 백재현 의원 발의)
 19.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 소음 · 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박찬대 · 박재호 · 황주홍 · 추혜선 · 박선숙 · 김정우 · 문미옥 · 소병훈 · 안규백 · 김영춘 · 박주민 의원 발의)
 2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서형수 · 이찬열 · 장정숙 · 최도자 · 우원식 · 어기구 · 양승조 · 홍익표 · 백혜련 · 김진표 · 김병관 · 박광운 · 신동근 · 유동수 · 전해철 · 전해숙 · 권칠승 · 박주민 의원 발의)
 2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 · 이정미 · 곽대훈 · 김선동 · 경대수 · 이종명 · 장석춘 · 임이자 · 정갑윤 · 김석기 · 이종배 · 황주홍 의원 발의)
 2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이원욱 · 윤후덕 · 김상희 · 김현미 · 기동민 · 정성호 · 윤호중 · 윤관석 · 이찬열 의원 발의)
 25.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김종태 · 김석기 · 강석호 · 홍문표 · 박명재 · 이종명 · 신상진 · 김성찬 · 김현아 · 윤종필 의원 발의)
 26.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7.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 · 이찬열 · 김해영 · 강병원 · 문미옥 · 황주홍 · 윤후덕 · 정재호 · 이철희 · 박명재 의원 발의)
 2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 · 이동섭 · 송옥주 · 신용현 · 장정숙 · 김종회 · 박선숙 · 오세정 · 이정미 · 김광수 · 천정배 · 이상돈 의원 발의)
 3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서형수 · 이학영 · 윤호중 · 송옥주 · 이용득 · 정성호 · 강병원 · 이철희 · 박재호 의원 발의)
 3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2.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이찬열 · 주승용 · 이양수 · 김종회 · 김관영 · 윤소하 · 김중로 · 박준영 · 정인화 의원 발의)
 33.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윤종필 · 金成泰 · 김승희 · 홍문중 · 조훈현 · 김규환 · 박대출 · 김상훈 · 박명재 · 이은권 의원 발의)
 34.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이상돈 · 이종걸 · 황주홍 · 김관영 · 송기석 · 최명길 · 박선숙 · 김세연 · 오세정 · 최경환(국) · 이상민 · 김삼화 · 김성수 · 진영 · 이태규 · 정동영 · 이원욱 · 박영선 · 박준영 · 이정미 · 신용현 · 이용주 · 조배숙 · 이혜훈 의원 발의)
 3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 · 강병원 · 권미혁 · 김상희 · 김영주 · 김영춘 · 서형수 · 소병훈 · 오제세 · 위성곤 · 윤후덕 · 이상민 · 이용득 ·

- 이재정 · 전해철 · 진영 · 최운열 · 표창원 · 한정애 · 홍영표 의원 발의)
36.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이상돈 · 이종길 · 황주홍 · 김관영 · 송기석 · 최명길 · 박선숙 · 김세연 · 오세정 · 최경환(국) · 이상민 · 김삼화 · 김성수 · 진영 · 이태규 · 정동영 · 이원욱 · 박영선 · 박준영 · 이정미 · 신용현 · 이용주 · 조배숙 · 김광수 · 이혜훈 의원 발의)
3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 · 정성호 · 문진국 · 김선동 · 이현재 · 어기구 · 위성곤 · 윤한홍 · 김정훈 · 정양석 · 박완수 의원 발의)
4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1.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 · 소병훈 · 유은혜 · 기동민 · 박남춘 · 김영진 · 우원식 · 윤소하 · 이인영 · 윤관석 · 신경민 · 문미옥 · 이철희 의원 발의)
42.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 · 박정 · 송옥주 · 한정애 · 남인순 · 최명길 · 김상희 · 신창현 · 윤후덕 · 이원욱 의원 발의)
4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4547)
4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4751)
46.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7.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안규백 · 송옥주 · 이석현 · 김현권 · 한정애 · 서형수 · 강병원 · 이개호 · 이동섭 · 고용진 · 박홍근 · 이인영 의원 발의)
49.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 · 인재근 · 소병훈 · 강창일 · 신창현 · 위성곤 · 정성호 · 김해영 · 이해찬 · 김종대 의원 발의)
5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이용득 · 전해숙 · 이해찬 · 김정우 · 윤관석 · 한정애 · 추혜선 · 서형수 · 신창현 · 이정미 · 박재호 · 채이배 · 박홍근 의원 발의)
5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 · 김영주 · 이재정 · 진선미 · 김해영 · 정춘숙 · 강훈식 · 윤후덕 · 박남춘 · 안호영 · 김병욱 · 김병기 · 박정 · 김경협 · 서형수 · 서영교 · 이용득 · 안규백 · 윤소하 · 한정애 · 송옥주 · 김종민 · 김영호 · 유은혜 의원 발의)
52.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강석호 · 김정재 · 문진국 · 이학재 · 박순자 · 윤종필 · 김승희 · 홍문중 · 하태경 의원 발의)
5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 · 유은혜 · 김현권 · 전해숙 · 서영교 · 김영호 · 조승래 · 김정우 · 추혜선 · 이정미 · 신경민 의원 발의)
5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5.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 · 문진국 · 이종명 · 홍문표 · 정용기 · 권석창 · 김용태 · 김현아 · 박명재 · 엄용수 의원 발의)
56.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 · 최인호 · 박재호 · 전재수 · 이원욱 · 한정애 · 서영교 · 김해영 · 송옥주 · 강병원 · 권미혁 · 노회찬 · 김경수 · 김부겸 · 김영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3127)
57.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 · 최인호 · 박재호 · 전재수 · 이원욱 · 한정애 · 서영교 · 김해영 · 송옥주 · 강병원 · 권미혁 · 노회찬 · 김경수 · 김부겸 · 김영진 · 이상돈 의원 발의)(의안번호 3148)
58.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강병원 · 주승용 · 이용득 · 서형수 · 우원식 · 이찬열 · 신창현 · 이학영 · 송옥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3398)

59.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서형수·이학영·윤호중·윤관석·송옥주·이용득·정성호·강병원·변재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3828)
60.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박재호·김경수·우원식·남인순·문미옥·한정애·이용득·이훈·최인호·박광온·권미혁·김정우·신창현·양승조·김현미·송옥주 의원 발의)
6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한정애·이용득·박재호·이정미·박선숙·서형수·김삼화·강병원·신창현 의원 발의)
6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서영교·전혜숙·김정우·김상희·전해철·민병두·조정식·임종성·박남춘·김현권 의원 발의)
6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고용진·김종희·윤관석·민병두·박주민·김해영·윤호중·정인화 의원 발의)
6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장정숙·신용현·김관영·김종로·황주홍·박선숙·정인화·김수민·한정애·권은희·정동영·이동섭 의원 발의)
66. **감정노동자보호법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박영선·김정우·송영길·김상희·윤후덕·김민기·서형수·서영교·노웅래·김병욱·소병훈·손혜원·안규백·민병두·노회찬·심상정·홍의락·어기구·이태규·윤관석·김수민·김종희·오세정·김현미·이정미·김해영·전혜숙·김경진·장정숙·박남춘·설훈·인재근·권칠승·정성호·김동철·전재수·추혜선·전현희·유승희·김성수·신경민·박광온·안민석·유은혜·임종성·우원식 의원 발의)
6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강길부·강병원·권미혁·김영춘·김종대·김종훈·김해영·남인순·노회찬·민홍철·박남춘·박덕흠·박재호·서영교·소병훈·손혜원·송옥주·신창현·유은혜·윤호중·윤후덕·이용득·이정미·전재수·최인호·추혜선·한정애 의원 발의)
6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이용득·진선미·장정숙·한정애·문미옥·강병원·서형수·최도자·이정미 의원 발의)
6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홍영표·문미옥·이용득·이정미·우원식·서형수·고용진·박용진·김민기·전혜숙·정춘숙·신창현 의원 발의)
7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이종명·문진국·권석창·김용태·김현아·엄용수·박명재·여상규·황영철 의원 발의)
7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서영교·전혜숙·김정우·김상희·전해철·강창일·민병두·소병훈·박남춘·김현권 의원 발의)
7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권미혁·김영주·김종훈·김해영 의원 발의)
7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김영우·백승주·이종명·김종대·김선동·박명재·김성태·유승민·윤후덕 의원 발의)
7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백승주·송석준·이종명·정태욱·김승희·김종석·박성중·이군현·이철규·김성태·주광덕·강석호 의원 발의)
7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안상수·윤영석·강석진·이현재·김명연·이양수·권석창·김성원·이장우·이군현·김성찬·성일종·박찬우·이만희·주광덕·유재중·윤상

현·유민봉·홍문중·이채익·엄용수·최교일·나경원·김승희 의원 발의)

7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이해찬·이정미·박찬대·노회찬·윤소하·박주민·최인호·추혜선·김경협·김경진·어기구·서영교·서형수·김부겸·유동수·위성곤·유은혜·김병욱·김철민·강창일·이석현·김수민·홍의락·김종대·문희상·임종성·권미혁·전해철·박남춘·김정우·송영길·오영훈·이용득·권칠승·송옥주·윤종오·민홍철·김경수·김종훈·조승래·주승용·이훈·김광수·이찬열·심상정·윤후덕·박홍근·한정애·김삼화 의원 발의)

8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유은혜·박주민·윤종오·김종훈 의원 발의)

8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안규백·김현권·소병훈·설훈·이석현·김경협·서형수·한정애·이동섭·이정미·민병두·손혜원·이인영·김영춘·송옥주·박재호·김부겸·원혜영·신창현·홍영표·유은혜 의원 발의)(의안번호 2652)

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정성호·박정·인재근·어기구·신창현·손혜원·서형수·문미옥·진선미·김정우·유은혜·홍영표·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2684)

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조배숙·김종희·유성엽·윤영일·오세정·장정숙·최경환(국)·박주현·한정애 의원 발의)

8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김종훈·어기구·박용진·노회찬·추혜선·윤소하·심상정·김종대·윤종오·김상희·박재호·박남춘·손혜원 의원 발의)

8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손혜원·윤소하·노회찬·박재호·백혜련·전혜숙·권미혁·윤희중·윤관석·유은혜·김현미·신창현·

장정숙·인재근·박남춘 의원 발의)

8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권미혁·김영주·김종훈·김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3597)

8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권미혁·김영주·김종훈·김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3638)

8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송옥주·손혜원·윤종오·소병훈·유은혜·황주홍·이상돈·장정숙·서영교·박남춘·박재호·김상희·김정우·송영길·표창원·신창현·정성호·윤관석·박주민·김해영·김종대·이정미·박선숙·김관영·이해찬·김현미 의원 발의)

8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이동섭·이석현·소병훈·안규백·김현권·서형수·우원식·김경협·김종훈·이정미·홍영표·설훈·김영주·한정애·강병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4053)

9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이석현·소병훈·안규백·김현권·서형수·우원식·김경협·김종훈·이정미·홍영표·설훈·김영주·한정애·강병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4072)

9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최명길·서영교·윤후덕·임종성·김병욱·박정·박경미·윤종오·이용득·이정미·이찬열·서형수·전혜숙·안규백·김상희·신창현 의원 발의)

9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권미혁·박경미·박홍근·어기구·윤희중·이용득·이태규·채이배·최명길 의원 발의)(의안번호 4409)

9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홍영표·이용득·이정미·우원식·서형수·박용진·김민기·전혜숙·정춘숙 의원 발의)

9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전혜숙·정인화·이종걸·김종희·김관영·주승용·위성곤 의원 발의)

95.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 · 홍영표 · 박홍근 · 이용득 · 김종대 · 윤소하 · 심상정 · 추혜선 · 노회찬 · 윤종오 · 박용진 · 강병원 의원 발의)
9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윤소하 · 김정우 · 양승조 · 김해영 · 인재근 · 남인순 · 최도자 · 설훈 · 전해숙 의원 발의)
9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 민병두 · 박재호 · 전해숙 · 권미혁 · 진선미 · 김해영 · 유은혜 · 소병훈 · 김현미 · 장정숙 의원 발의)
9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 · 김종대 · 윤소하 · 심상정 · 추혜선 · 노회찬 · 권미혁 · 김영주 · 김종훈 · 김해영 의원 발의)
9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문미옥 · 강병원 · 유은혜 · 이학영 · 제윤경 · 박광온 · 서형수 · 김경협 · 남인순 · 박정 · 이용득 · 도종환 · 양승조 · 홍영표 의원 발의)
10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 · 이철우 · 조훈현 · 정병국 · 강석호 · 김도읍 · 곽대훈 · 정용기 · 김성원 · 박명재 의원 발의)
10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2.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 · 홍영표 · 양승조 · 문미옥 · 윤호중 · 윤후덕 · 백혜련 · 박재호 · 신창현 · 한정애 · 오영훈 · 설훈 · 박남춘 · 전해숙 · 서형수 · 박용진 · 김삼화 의원 발의)
1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 · 노회찬 · 추혜선 · 윤소하 · 심상정 · 김종대 · 김종훈 · 윤종오 · 우원식 · 여기구 의원 발의)
10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이동섭 · 이석현 · 소병훈 · 안규백 · 김현권 · 서형수 · 우원식 · 김경협 · 김종훈 · 이정미 · 홍영표 · 설훈 · 김영주 · 한정애 · 강병원 의원 발의)
1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정성호 · 박정 · 인재근 · 여기구 · 신창현 · 손혜원 · 서형수 · 문미옥 · 진선미 · 김정우 · 유은혜 · 홍영표 · 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2686)
1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이용득 · 전해숙 · 이해찬 · 김정우 · 윤관석 · 한정애 · 추혜선 · 서형수 · 이정미 · 박재호 · 채이배 · 박홍근 의원 발의)
1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서영교 · 김정우 · 윤종오 · 손혜원 · 박주민 · 여기구 · 윤소하 · 김삼화 · 채이배 · 박홍근 · 박경미 · 서형수 · 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3055)
1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 · 김중로 · 이춘석 · 이원욱 · 이용득 · 우원식 · 최명길 · 문진국 · 임종성 · 한정애 의원 발의)
10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 · 홍영표 · 양승조 · 문미옥 · 윤호중 · 윤후덕 · 백혜련 · 박재호 · 신창현 · 한정애 · 오영훈 · 설훈 · 박남춘 · 전해숙 · 서형수 · 박용진 · 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3478)
1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 · 홍영표 · 문미옥 · 이용득 · 이정미 · 우원식 · 서형수 · 유승희 · 고용진 · 박용진 · 김민기 · 전해숙 · 정춘숙 · 신창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4541)
1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 · 임이자 · 김승희 · 황영철 · 곽대훈 · 박덕흠 · 권석창 · 정병국 · 문진국 · 배덕광 의원 발의)
1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 · 강훈식 · 권미혁 · 기동민 · 김경수 · 김병관 · 김병욱 · 김상희 · 김영춘 · 김영호 · 김정우 · 김종훈 · 김종민 · 김철민 · 김한정 · 문미옥 · 민병두 · 박경미 · 박광온 · 박정 · 설훈 · 소병훈 · 송기현 · 송옥주 · 여기구 · 우원식 · 위성곤 · 유동수 ·

유은혜·윤관석·윤호중·윤후덕·이훈·임종성·전해철·정재호·조승래·주승용·최운열·홍영표 의원 발의)

- 1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서영교·김정우·윤종오·손혜원·박주민·어기구·윤소하·김삼화·박홍근·박경미·서형수·홍영표 의원 발의)
- 1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최인호·박재호·전재수·이원욱·한정애·김해영·강병원·김경수·김영진·민홍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3144)
- 1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최인호·박재호·전재수·이원욱·한정애·김해영·강병원·김경수·김영진·민홍철·이정미·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3217)
- 1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최인호·박재호·전재수·한정애·김해영·강병원·김경수·민홍철·이정미·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3253)
- 1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정성호·김수민·김정우·김현미·손혜원·윤관석·표창원·송옥주·김해영·박남춘 의원 발의)
- 1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김진표·이찬열·백혜련·김영진·장정숙·이용득·진선미·문미옥·강병원·서형수·최도자·이정미 의원 발의)
- 1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함진규·김성찬·김명연·성일종·이주영·권석창·홍문표·정태욱·정병국 의원 발의)
- 12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주호영·안상수·배덕광·이양수·이명수·경대수·조훈현·전희경·황영철 의원 발의)
- 12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윤소하·김정우·양승조·김해영·인재근·남인순·최도자·설훈·전혜숙 의

원 발의)

- 12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신창현·송옥주·노웅래·서형수·유은혜·김정우·강훈식·백재현·양승조 의원 발의)
- 1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김해영·추혜선·윤소하·김정우·남인순·김경진·윤관석·전혜숙·김두관·김상희·변재일 의원 발의)
- 125. **주한미군기지 이전, 축소, 철수 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염동열·정갑윤·장석춘·엄용수·김현아·김선동·어기구·윤후덕·김석기·경대수·민경욱·김성태·김종대 의원 발의)
- 12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노희찬·추혜선·심상정·윤소하·김종대·서형수·서영교·김현권·위성곤·김해영 의원 발의)
- 12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박정·이찬열·박광온·권철승·인재근·김해영·이훈·정재호·유승희·김성수 의원 발의)
- 12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정병국·안규백·이종명·황주홍·이명수·박명재·최도자·박정·유승민·황영철 의원 발의)
- 129. **청년 첫일자리 지원 특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박정·신창현·이훈·김현권·윤후덕·박범계·김경수·문미옥·오제세·유승희·최운열·유은혜·송옥주·이상민 의원 발의)
- 13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박정·신창현·이훈·박홍근·김현권·윤후덕·박범계·김경수·오제세·최운열·조웅천·유은혜·송옥주·김영춘·추혜선·박광온·김정우·윤관석·고용진·유승희·이정미·이상민·박주민 의원 발의)

- 13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 · 신창현 · 이훈 · 박홍근 · 김현권 · 윤후덕 · 박범계 · 김경수 · 문미옥 · 오제세 · 유승희 · 최운열 · 조응천 · 유은혜 · 송옥주 · 이상민 의원 발의)
- 13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 · 신용현 · 장병완 · 송기석 · 황주홍 · 오세정 · 김경진 · 이동섭 · 유성엽 · 주승용 · 김종희 · 윤영일 · 정인화 · 정갑윤 · 이찬열 · 김관영 · 김동철 · 장정숙 · 김삼화 · 박준영 · 손금주 의원 발의)
- 13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 · 이우현 · 박찬우 · 김순례 · 박성중 · 이명수 · 이은권 · 안상수 · 유승민 · 김성찬 · 조원진 · 김성태 · 송희경 의원 발의)
- 13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 · 박명재 · 김석기 · 경대수 · 정갑윤 · 박덕흠 · 하태경 · 이철규 · 조훈현 · 송희경 · 윤한홍 · 함진규 · 이종명 · 김선동 의원 발의)
- 13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정세균 · 박지원 · 김현미 · 홍영표 · 송옥주 · 박경미 · 이훈 · 홍문표 · 김태년 · 이정미 · 황주홍 · 강훈식 · 민홍철 · 양승조 · 김영춘 · 박주선 · 김성식 · 조정식 · 박홍근 · 윤관석 · 민병두 · 김종민 · 천정배 · 진현희 · 박정 · 신경민 · 추미애 · 강창일 · 김영호 · 전해철 · 박준영 · 윤호중 · 변재일 · 강병원 · 위성곤 · 신창현 · 남인순 · 김부겸 · 백혜련 · 권미혁 · 기동민 · 김경협 · 박광온 · 김관영 · 노회찬 · 김광수 · 문희상 · 조응천 · 손혜원 · 권철승 · 소병훈 · 임종성 · 인재근 · 박남춘 · 고용진 · 김정우 · 박재호 · 김종희 · 김진표 · 이개호 · 김한정 · 최경환(국) · 김중훈 · 오영훈 · 이찬열 · 송기석 · 제윤경 · 홍의락 · 문미옥 · 채이배 · 백재현 · 정인화 · 이동섭 · 안규백 · 이용득 · 김두관 · 송기현 · 진선미 · 심상정 · 추혜선 · 정병국 · 김병관 · 황희 · 최명길 · 이원욱 · 이춘석 · 박찬대 · 설훈 · 노웅래 · 윤후덕 · 서영교 · 서형수 · 전해숙 · 주승용 · 김현권 · 김철민 · 유은혜 · 김영진 · 유성엽 · 심재권 · 박용진 · 안

- 호영 · 김상희 · 이해찬 · 김경수 · 주호영 · 박순자 · 정태옥 의원 발의)
- 13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 · 박정 · 신창현 · 박홍근 · 김현권 · 윤후덕 · 박범계 · 김경수 · 문미옥 · 오제세 · 유승희 · 최운열 · 조응천 · 유은혜 · 송옥주 · 이상민 · 홍익표 · 박찬대 · 정성호 · 어기구 · 박주민 · 김정우 · 조정식 의원 발의)
- 13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 · 민병두 · 김해영 · 문미옥 · 이찬열 · 이춘석 · 김정우 · 김현권 · 신경민 · 김현미 의원 발의)
- 13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 · 주승용 · 송기석 · 김동철 · 김해영 · 신용현 · 황주홍 · 오세정 · 윤영일 · 이용주 · 장정숙 · 김삼화 · 김종희 의원 발의)
- 13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 · 김현아 · 박덕흠 · 박완수 · 이명수 · 이우현 · 이학재 · 이해찬 · 이현승 · 이현재 · 정용기 · 함진규 · 홍문표 의원 발의)
- 14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 · 권미혁 · 김해영 · 강병원 · 서영교 · 김상희 · 도종환 · 박완주 · 전해숙 · 박광온 의원 발의)
- 14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 · 정진석 · 김현아 · 박인숙 · 송희경 · 이종배 · 조훈현 · 김석기 · 박명재 · 함진규 의원 발의)
- 14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 · 김영호 · 정춘숙 · 송옥주 · 문미옥 · 김삼화 · 전해숙 · 백혜련 · 박경미 · 양승조 · 서형수 의원 발의)
- 14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4.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 · 이종명 · 황주홍 · 염동열 · 황영철 · 곽대훈 · 장제원 · 강효상 · 金成泰 · 정병국 의원 발의)
- 145. **석탄화력발전소 생명안전업무와 환경오염방지업무의 도급(경쟁입찰) 금지 및 그**

종사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입법 및 개선에 관한 청원(이정미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14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정동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시12분)

○**위원장 홍영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46항까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내용은 단말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구두 제안설명을 희망하신 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먼저 서형수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남 양산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2016년 10월 31일 대표발의한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수해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및 지역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된 4대강사업이 완공 6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은 당초 사업 목적과 다르게 수질은 악화되었고 수생태계 또한 그 원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700만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은 이제 녹조라떼도 모자라 녹조곤죽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질관리의 책임부처인 환경부는 낙동강의 원수 관리보다는 정수의 과학화에 더욱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먹는 물로서의 낙동강을 포기하고 새로운 식수댐을 건설하자는 지자체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대강사업 정책 실패의 가장 큰 피해가 바로 낙동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속히 낙동강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4대강사업이 낙동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낙동강의 현 상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4대강사업과의 연관관계를 규명하여 이를 토대로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낙동강 및 낙동강 수계의 인공구조물과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 파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조사활동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낙동강의 자연친화적인 하천 및 하천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낙동강 및 낙동강 수계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의 개방 및 해체 등을 건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파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은 단체를 구성하여 위원회에 신고 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낙동강 주변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법안의 취지대로 낙동강의 현 상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4대강사업과의 연관 관계를 규명하여 이를 토대로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먹는 물로서의 낙동강을 지키고 700만 낙동강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의원**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서울 은평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가슴기 및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정안을 제안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법률안의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가슴기살균제에 의한 사

망자가 1092명이고 피해자는 522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는 304명의 사망·실종자를 낳았습니다.

이런 참사에 따른 희생자를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슴기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와 세월호 참사의 배경에는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정부 당국의 책임 소지가 있었고 사고 이후에도 당국의 재난관리시스템이 부실했던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가슴기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 및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두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의 진상을 밝혀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 방안의 수립 및 안전사회 건설을 확립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고자 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은 여전합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들의 눈물 어린 희생 위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덧칠해 다시는 이 땅에 그런 가슴 아픈 역사가 기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19건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들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상정된 법률안 중 정부가 제출한 19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의 글로벌스탠더드를 반영하여 국내에서 대량 증식되어 유통되는 종은 양도·양수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그 시기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시·이상 지역에 대해 2020년까지 도시생

태현황지도 작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시 변경 협의 거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 적용대상을 구매차량에서 임차차량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가 하락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요건 및 절차를 명확하게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유해폐기물로 인한 화재, 폭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출자에게는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보관·처리 시설 등에는 해당 자료의 게시를 의무화하고 분산된 폐기물 수출입 허가와 신고 관련 규정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석면피해구제법과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석면환경보건센터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운영 실적이 저조한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오염 토지의 소유 또는 점유자에게 원인자의 정화 작업에 대한 협조 의무를 부과하여 조속한 정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친환경제품의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환경표지 사용료를 폐지하고 정부가 환경산업체의 사업 수행 실적을 관리함으로써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상법 개정을 통해서도 위험 기상정보의 제공을 위한 기상 영향 예보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기후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상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국제협력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연공원법 등 8개의 일부개정 법률안은 인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기간을 사전에 통지하고 동 기간이 경과하면 그다음 날부터 민원 처리가 완료되는 것으로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데 따른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불이익과 행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19개 법률안은 그간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관련 부처와 충분히 논의하여 마련된 것이니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75항~제77항, 제101항, 제112항, 제14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가 제출한 6건의 법률안을 제안설명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연간 무급 3일의 난임휴가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의 주체는 남녀 모두라는 인식을 높이고자 '육아휴직'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사 및 조치 의무,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강화하였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러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일자리 지원사업들 간의 중복을 막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9월 첫째 주 월요일을 고용의 날로 제정하여 고용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히 동절기에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14일간 연속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실업급여 후 7일간의 대기기간 없이 바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재 은폐 근절을 위하여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일하기에 안전한 일터가 되도록 건설공사 현장에 여러 작업이 혼재하는 경우 공사 일정, 작업 순서 등을 관리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고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령화사회를 맞아 나이와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령자'와 '준고령자' 명칭을 일괄하여 '장년'으로 변경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의 경우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장년 근로자에 대하여 재취업 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허가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명확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나 변경허가 신청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말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17건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4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하여 하겠으며 질의 방식은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현안과 관련된 질문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과 관련된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대체토론을 하시는 분이 많을 줄 알았는데 별로 없어서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일단 환경부장관님께 먼저 하겠습니다.

화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화평법 제29조, 30조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의 등록 대상 기존 화학물질이나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수·양도하는 경우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제조·수입자와 하위 사용자 간의 정보제공이 필요한 경우 등에 화학물질의 명칭, 용도, 사용상의 제한, 유해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송옥주 위원** 그런데 환경부는 화평법 시행규칙인 제35조제2항을 통해서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송옥주 위원** 이 경우에 정보제공의무자가 영업비밀을 주장하면 정보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인지에 관해서 판단이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화학물질의 안전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보제공의무자가 영업비밀을 주장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내용 알고 계신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송옥주 위원** 현행법의 문제가 정보제공자가 영업비밀을 주장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으로 예외를 인정한다는 부분이어서 화평법의 목적을 하위 법령에서 지금 완화시키고 있다는 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 8일이었지요, 환경부가 발표한 PHMG 유통업자 적발 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들 업체는 MSDS의 성분 함량을 유독물 기준 이하로 허위 조작하는 수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인 PHMG를 일반화학물질인 것처럼 위장하여 유통시켰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정보제공의무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반화학물질로 조작하고 영업비밀로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송옥주 위원** 우려스럽지요?

현재 기업들이 영업비밀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

럼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당한 영업비밀은 보호하되 영업비밀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마저 기업의 권한으로 넘겨줘야 되면 안 된다는 판단에서 화평법을 개정한 부분이고요. 이에 대해서 환경부와 그리고 관련 있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화평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장관 조경규** 말씀드릴까요?

○**송옥주 위원** 예.

○**환경부장관 조경규** 지금 말씀해 주신 화평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소위 과정에서 앞으로 많이 논의를 하시겠지만 현행법에서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주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송옥주 위원** 유해화학물질 부분을 언급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그러니까요.

○**송옥주 위원** 영업비밀 부분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지해야 된다고……

○**환경부장관 조경규**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전달체계와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일반화학물질에 대해서 정보전달을 확대하기 위해서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것을 전면 도입……

○**송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화평법의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 심사할 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옥주 위원** 제가 최저임금 관련된 대체토론이 또 하나가 있어서요, 나머지는 그러면 서면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 알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최저임금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송옥주 위원**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8월 9일 날 제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것이 지난 목요일 날 기사입니다. 실질 최저

임금이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혹시 이 자료 보셨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자료는 봤습니다.

○송옥주 위원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지금 보니까 4인 가족, 2인 가족이 아니라 혼자 벌어서 혼자 사는 비혼 1인 가족인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생계비에도 충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나마 과거에는 한 80% 정도 차지했는데요 지금 육칠십% 차지할 정도로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마치 전체 근로자 임금이 인상돼서 기업 부담이 증가할 거라는 주장이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장됐다는 분석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저임금과 고임금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를 줄여서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자료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제적인 평가 부분입니다. 이미 최저임금에 대해서 여러 선진국에서 지금 이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한국노동연구원의 국제노동브리프 자료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얘기 들었습니다.

○송옥주 위원 독일과 영국의 경우에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나서 소득격차 해소에 효과가 있었고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임금 상승 효과 그리고 소비와 성장의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다는 평가 자료입니다.

본 위원은 사실은 올해 초에 상당히 고무가 됐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2017년 새해를 열면서 최저임금은 여야 논의의 진전에 따라 매우 의미 있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본 위원이 이에 대해서 환영 논평을 내고 국민과 민생을 책임지는 공당으로서 적극적으로 입법에 동참하기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첫 각오로 최저임금 인상 및 공생적 최저임금 정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끝까지 국민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본 위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또 본 의원의 개정안에는 다른 의원님들이 한 것과 다르게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사업주의 경영 환경 악화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이를 예방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그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어려움만 논하지 말고요, 이런 대안을 마련해서 영세사업주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하고 문제도 풀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여기 상임위 관련 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들께도, 정부에게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전향적인 자세와 획기적인 방안, 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영표 더 이상 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그러면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5항까지의 안건은 환경소위에, 의사일정 제66항부터 제146항까지의 안건은 고용노동소위에 각각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에 환경소위원장과 하대경 고용노동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은 잠시 퇴장하셨다가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의 당내 회의가 있어서 저희가 3시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7. 업무보고

- 가. 환경부
- 나. 고용노동부
- 다. 기상청

(11시36분)

○**위원장 홍영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47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3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는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장관 인사말씀을 업무보고와 포함해서 해 주시고 기존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오늘 참석한 주요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유년 새해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금년도 환경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20대 국회가 출범한 이래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신 덕분에 환경 현안 해결과 환경 행정 선진화에 성과를 점차 보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이 전년 대비 약 35% 이상 확대되었고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 총 13건의 주요 법률이 제·개정되어 국민들께 보다 질 높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홍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환경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국민들께서 환경 위험요인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의 배출 기준을 현행 대비 최대 5배까지 대폭 강화하고 노후경유차는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등 국내 저감대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변국과의 협력도 강화하여 중국 동북부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 규명 연구에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농도 상황이 계속될 경우 수도

권의 공공·행정 기관의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조업 중지 등 특단의 비상조치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시는 가슴기살균제 피해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유통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여 문제 제품은 즉시 공개·수거토록 조치하는 한편 살생물제 관리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신청한 4438명에 대한 피해 조사·판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폐이외 질환에 대한 판정 기준도 단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하천 녹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댐·보·저수지의 유량을 일제히 방류하여 녹조 발생을 억제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4대강사업 이후 변화된 수생태계 등에 대한 정밀진단에도 착수하겠습니다.

둘째, 생활밀착형 환경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의 체감도를 높여겠습니다.

우선 교통소음의 85%를 차지하는 타이어 관리를 위해 타이어 소음 자율표시제를 도입하고 악취를 풍기던 폐기물 운반차량 5만 7000여 대를 밀폐형으로 전면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심 속 훼손되거나 방치된 부지를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자연마당과 생태놀이터로 조성하고 도심 열섬효과를 낮추고 가뭄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도시 전체의 물순환을 촉진하는 사업도 대전·광주 등 전국 6개 대도시에서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전국 확산을 위해 금년 중 아산·경주 등 5개소를 준공하고 음성 등 3개소를 신규 착공하는 한편 중국 등 해외 진출을 위한 협력사업에도 착수하겠습니다.

빈병 보증금 인상 후속조치로 빈병 반환 거부 또는 부당한 가격 인상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여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 환경 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파리기후협정 후속협상에 대응하기 위해 금년 5월까지 국가 목표의 이행 검증체계, 차기 목표 설정 등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여 유엔에 제출하겠습니다.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물산업·생물산업에 대한 법령 정비,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에 진력하

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굴·육성하는 한편 친환경차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렌터카 등 전기차 다량 수요처 발굴과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공동주택 등에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연 3% 이상 성장하는 환경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 R&D 관리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산업 연구단지를 준공하여 신기술·시제품에 대한 실증 인프라를 조기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환경산업펀드를 출시하여 투자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새로운 환경제도를 조기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시행된 환경오염 피해구제제도는 첫 해 환경책임보험 가입률이 98%에 이르러 성공적으로 출발했다는 평가입니다. 금년에는 업종별 보험요율 차등화, 단체계약상품 출시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자문, 소송비용 지원 등으로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부터 본격 시행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 상시 기술진단 등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장 정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인프라도 보장하여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대비하여 재활용업계 등과 협업하여 하위 법령을 연내 마련하고 매립·소각 부담금 도입 시범사업, 재활용시설 확충 등 직매립 제로화 기반도 공고히 하겠습니다.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계획 등을 담은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현장 확인을 확대하고 화학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은 특별관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부는 올해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산업계 등과도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고, 작년 국정감사 이후 새로 임명된 본부 간부 및 소속·산하 기관

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본부입니다.

홍정기 물환경정책국장입니다.

김동진 자원순환국장입니다.

김법정 기후대기정책관입니다.

김영훈 환경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으로 소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석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입니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입니다.

최홍진 영산강유역환경청장입니다.

(소속기관장 인사)

다음으로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철 국립생태원장입니다.

(산하기관장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주요 업무 그리고 주요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을 맞이하여 처음 개최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상청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률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는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여름철 장마와 폭염, 가을철 태풍 차바까지 계절별로 다양한 위험기상 현상이 발생하여 국민들도 많이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기상청은 이러한 위험기상에 대한 예보 정확도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단기·중기·해양·황사 예보전문분석관의 도입, 예보관의 교육훈련 확대, 영향예보의 시범운영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12일에는 계기지진 관측 이래 가장 강력한 규모 5.8의 지진과 이어진 수백 차례의 여진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기상청은 지진정보 긴급재난문자를 국민에게 직접 통보하는 등 신속한 지진정보의 전달과 지진대응 체계 개선에도 매진하였습니다.

한편 3년간 이어져 온 항공라이다 관련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여 기상청 본연의 기상예보 업무 등에 다시 매진할 수 있게 된 매우 의미 깊고 뜻깊은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의 정책목표를 ‘전문역량과 미래 과학기술의 접목을 통한 서비스 향상’으로 정하고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에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주요 기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기상예보와 지진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이들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예보, 지진 등 전문분야의 인재 육성을 위해 전문교육과정을 개편·개설하고 우수한 교수인력을 확보하여 직원 개개인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미래의 업무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셋째, 기상청과 유관기관의 관측자료를 통합하여 위험기상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관측장비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관측자료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넷째,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유망기술들을 기상업무에 접목하여 미래 기상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다섯째, 손해 및 보험 분야로 기상융합상품의 활용을 확대하고 날씨경영을 지원하는 한편 신규 창업기업 발굴 및 우수기업을 육성하여 민간 기상서비스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과학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범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국제사회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기상청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 실현을 통해 국민의 행복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향후 정책 수립과 사

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국정감사 이후 새로 보임된 기상청과 산하기관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청 주요 간부입니다.

정준석 예보국장입니다.

김성균 기후과학국장입니다.

장동연 기상서비스진흥국장입니다.

이미선 지진화산센터장입니다.

김금란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입니다.

권오웅 기상레이더센터장입니다.

(간부 및 소속기관장 인사)

다음은 산하기관장입니다.

김종석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입니다.

정홍상 APEC기후센터원장입니다.

홍성유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입니다.

(산하기관장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표 위원장, 임이자 간사와 사회교대)

○**이정미 위원** 환경부장관님,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서 공무원들이윗사람의 지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과정이 얼마나 나라에 큰 혼란을 미치는가 우리가 여실히 보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명박정부 때 4대강사업 이런 거지요. 개발업자들 요청 받아 가지고 정부가 그것 하라고 하니깐 환경부가 그 지시 받아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되돌리기 어려운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환경정책의 어떤 객관성, 타당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2개의 국책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있고 국립환경과학원이 있지요. 여기 다 예산 들여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환경 타당성이 있는가를 전문가들에게 다 자문을 얻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이정미 위원** 그런데 제가 일련의 요즘 진행되

는 사업들이 이런 환경정책기관들, 전문기관들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타당성이 없다거나 이런 의견을 냈는데도 환경부가…… 우리 장관님께서 환경을 지키는 싸움답이 되시겠다고 했는데 싸움답이 아니라 개발업체의 요구, 사업체의 요구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사전에 질의서를 미리 다 보내드렸고 제가 죽 연관해서 어떤 케이스들인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익산 폐석산에다가 하수슬러지를 매립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이정미 위원**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 전에 직접, 우리 국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고 그 문제에 관련된 심각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고시하고 시범사업을 공모를 받는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는데 고시 이전 단계의 환경영향평가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슬러지를 매립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토양과 하수에 실질적인 어떤 오염이 진행되는가라는 것을 알려면 사계절 영향평가 정도는 기본으로 되어야 되고 환경정책평가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그 사업주인 녹원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환경영향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고시를 한 이런 과정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는?

그래서 폐석산 매립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일단 중단시켜 놓고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된다, 한 번 그것 매립하고 나면, 땅이랑 지하수랑 오염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청드리고요.

영양의 AWP 풍력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주민들 동의서 얻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 다 거짓 작성했다는 것 확인이 됐고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환경영향평가법상으로는 이것을 딱히 규정할 만한, 어떤 위법한 사실로 지적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 그냥 통과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단 말

이에요.

이것도 전반적으로 지금 그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곳에 엄청난 환경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고 재검토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지금 사회적으로 이미 신문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일본의 다이저 돌고래 수입하면 안 된다, 전 세계적으로 국제수족관협회에서도 이런 추세가 있다는 것 다 아실 거고……

돌고래가 굉장히 지능이 높은 동물이에요. 그런데 장관님, 생각해 보십시오. 장관님 몸의 1.5배만한 곳에다가 가둬 놓고 평생을 살라고 그러면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돌고래를 지금 수입해 가지고 그 좁은 수족관에다가 가둬 둔다는 거 이거 세계적 추세에 완전히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정말 이 잘못된 돌고래 수입을 환경부가 이렇게 승인한 것에 대해서 반성이 있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큰돌고래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 관리규정을 어떻게 제·개정하실 건지 이런 답변 주셔야 하고요. 사이테스(CITES) 종에 대한 수입 제한과 관리규정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포 유달산 케이블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지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걸 일단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검토해서 입지 타당성을 판단하겠다고, 이것 프로세스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다시 프로세스를 밟아서 타당성조사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설악산 케이블카, 지금 문화재청에서 불승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이 부결된 지 하루 만에 다시 지리산에서 케이블카 한다고 합니다. 설악산에는 산양 문제가 터졌어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한다고 하면 거기 반달곰 문제가 또 터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국립공원에다가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국립공원 케이블카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행하겠다는 환경부의 정책 때문입니다. 이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합니다.

이건 어느 국립공원에도 갖다 놔도 이런 환경 영향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를 계기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한다라는 이 시범사업 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근혜정부의 이 국정농단 사태와 일련의 관계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환경부가 포기하지 않으셨던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을 요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임이자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 대답을 드릴까요?

○이정미 위원 예.

○환경부장관 조경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섯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간단간단하게, 자세한 건 다음에 설명을 하더라도 간단하게……

우선 폐석산 채움 고화처리된 하수처리 오니 이 문제는 저희가 마음대로 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14년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그동안 전문가 검토의견이라든지 사업의 법적 근거를 이미 작년 4월에 마련해 가지고 우선 이게 그 당시에 KEI에서 하기로, 이건 조금 관리기준이 필요하니 이것에 대해서 시범을 좀 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시범 절차를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적정한지 그리고 또 그 지역이 적정한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신청사가 제출을 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할지 여부, 한다면 그 지역에 할지 다른 데 할지 이런 것을 종합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양 AWP 풍력발전 문제는 저희가 KEI나 이런 관계기관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주민동의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문제가 있는 걸 저희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보충 의견을 보완하라고 한 게 낙동정맥 내 발전기 이

동이라든지 제척 문제 또 동식물 이동 장애 해결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그쪽에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고 지금 말씀하신 그 주민동의서 하자 치유 문제와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돌고래 문제는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현행 법규나 규정상 사이테스 2급 종으로 돼 있어 가지고 법령상 이걸 안 해 줄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령은 아니라 하더라도 좀 비윤리적인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이걸 사전에 막는 게 필요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수부, 과학적인 의견은 또 해수부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수부하고 금방 말씀하신 법령상 2급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비윤리적인 문제라든지 또 금방 말씀하신 돌고래 사육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중 자체가 2급 종이라 하더라도 그런 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이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기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게 사전에 좀 선제적으로 되어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사업을 추진할 때, 조금 방향을 잡을 때 그런 걸 보호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법령상 그렇게 금지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좀 제한하거나 제약하는 쪽으로 저희가 해수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 유달산 케이블카 건은 저희 영산강청에서는 KEI 검토의견을 충실히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경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목포 시민의 절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넘어가고 환경영향평가 할 때 금방 말씀하신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최종 판단은 안 내렸으니까 관계 기관 검토의견 또 경관영향에 대한 목포 시민 추가 여론조사 등 이런 걸 종합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케이블카 문제를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지리산 문제를 해 주셨는데, 참고로 지리산은 저희가 지난주에 일단 반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가적으로 다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다음에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과 관련된 기본방침이나 가이드라인 문제는 지금 다시 또 이것을 논의해서 하면 기본적으로 또 10년,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범사업, 지리산하고 설악산하고를 한 문제는 지금 그것도 나름대로 절차가 진행되니까 그 과정을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문화재청 부결 문제는 문화재위원회가 본 문제하고 저희가 본 문제는 조금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과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시행 주체인 양양군에서 행정심판 청구 등 여러 가지 다른 조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조금 보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의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건건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해주시고 저희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조경규 무슨 말씀인지는 저희가 충분히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들이 전부 제가 장관으로 부임해서 바로 다 시행을 한 문제는 대부분 아니고요, 그전부터 수년간 진행되어 온 것이 절차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정미 위원 장관님의 의지로 정말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치시면 됩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 그래서 많이 의견 수렴을 해서 절차도 지연하고 과정상의 합리성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충분히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수 위원 장관님, 인사청문회를 언제 하셨지요, 작년에?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서형수 위원 인사청문회를 언제 했지요, 작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인사청문회 하신 적 있잖아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8월 27일 날 했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날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억을 상기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환경부가 환경보전 업무에 전체 70% 이상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고 환경기술이나 환

경개발, 환경산업 쪽은 30% 미만 하시겠다 그런 약속을 한번 하셨거든요. 기억하시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서형수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까 현안질의에서도 제가 보면 거의 한 40% 이상이 기술, 산업, 펀드 이런 쪽으로 지금 치중되어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 상기해 드리려고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40%……

○서형수 위원 그건 나중에……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 조금 구체적인 문제로서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이었습니다. 장관님이 전직에 계실 때 사실은 업무를 주도해서 환경부가 관장하고 있던 온실가스 감축의 총괄부서 기능 자체를 국무조정실로 옮겨 가셨고 그다음에 배출권 거래제 자체는 환경부가 갖고 있던 걸 기재부로 넘겼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이 환경부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컨트롤타워를 옮기고 각 소관 부처별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하셨다, 만약 그 판단이 잘못돼서 지금 온실가스 감축이나 이런 문제 있으면 다시 환경부로 되돌려오는 데에 노력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서형수 위원 지난 12월에 로드맵 발표했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서형수 위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조경규 지난해 말 발표한 로드맵은 새로운 목표치나 이런 걸 제시한 게 아니고……

○서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장관 조경규 작년에 저희가 확정된 그것을 앞으로, 일단 작년 말까지 기본적으로 감축 목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서형수 위원 시간이 짧아서 제가 좀……

○환경부장관 조경규 꼭 그런 정도의 차원으로 만든……

○서형수 위원 어쨌든 말 그대로 ‘로드맵’이라고 그러면 일단 출발점에서 목표점이 있으면 중간에 어떤 경로로 가겠다는 그 길을 밝히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서형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기본계획서에, 그러니까 2030년 사이 중간에, 2020년도에는 어떻게 가고 2025년…… 그런 길이 있습니까? 없지요, 거기는? 로드맵이 아니지요, 그 자체는?

○환경부장관 조경규 아니,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는 작년 말까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패스(path)까지도 다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래서 그걸 좀 늦췄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서형수 위원 그러니까 일정을 좀 늦췄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그렇습니다.

○서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연 환경부가 독자적으로 갖고 있었을 때 만약에 로드맵을 만들었을 경우하고 지금 현재하고 봤을 때 냉정하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이게 주인 없는 업무로 그냥 떠도는 것 아닌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지금 그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우선 작년 6월에 그렇게 체계를 개편하고 지금 시행한 지 사실은 한 6개월 됐습니다.

○서형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시작을 보면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작 자체를 어떻게 평가하시나 이거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거버넌스 체계를 바꾼 이것을 평가하려면 적어도 한 일이 년 정도는 해 봐야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될 건지……

○서형수 위원 예, 조금 세부적인 질문 하나만 더 하고……

자료 좀……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는 온실가스 감축에서 보면 관리 업체에 대한 목표관리하고 배출권 거래제하고 분리해서 관리하지요, 규모에 따라서?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서형수 위원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대상이 지금 여기 보면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만 관리를 하고 에너지 감축에 대해서는 아예 목표 지표에서 빠져 버렸습니다, 목표관리제는 남아 있는데. 그런데 이게 빠짐으로 해서 사실은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 업체에 대한, 에너지 감축에 대한 목표 자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목표 하나하고요.

그다음,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봐 보니까 오히려 환경부에서는 거꾸로 이것도 하나의 규제 완화 차원에서 목표관리제 대상인 관리업체,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도 에너지 사용량은 앞으로 목표관리를 하지 않겠다라는 자료가 왔더라고요. 그 자체의 그 이유를 보니까 지금 에너지 진단과 이중규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면 에너지 진단에서는 전혀 그런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에너지 사용량 자체에 대한 목표관리를 폐지한다는 것은 재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 특히 지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도 현재 하고 있는 이행계획서 서식 중에서 15종에서 10종으로 삭제를 하고 근본적으로 이행실적 보고서는 아예 제출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겨우 남아 있는 목표관리, 환경부의 목표관리 쪽에서 과연 이런 이행실적 보고서도 받지 않고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는지, 거기에 대한 규제 완화의 방향 자체는 2개 다 저는 틀렸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주시고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하나는 조금 다른 질문인데……

그다음에 저는 이번 1년 동안 앞으로 환경보호 관련해서, 지난번에 장관께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좀 세부적으로 낙동강 수질 개선 문제하고 그다음에 제일 큰 것은 환경위험정보에 대한 정보 전달체계, 그다음 소통 체계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환경정보 생산이나 평가 그다음에 공유하는 데에서 주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 거기에 따르는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들을 좀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 지금 뒤에 말씀하신 그 문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지금 전문가 의견도 듣고 검토 중이니까 그게 조금 자세하게 나오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목표관리제하고 에너지전략목표하고 감축 의무 문제는 저희가 보기에 이게 규제완화 차원이 아니라 양쪽으로 이중으로 규제를 받는다……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 해당 기업들은, 560개 기업은 대규모로 큰 기업인데, 거기는 그렇게 받지 않는데 그것보다 더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정합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제도를 좀 합리화하자라는 차

원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끔 이 제도 개선할 때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형수 위원 제도개선, 원래 지금 나온 안이 환경부에서 나온 안이 아니고 산업부에서 나온 안이지요, 이 안 자체가? 이게 산업부의 요구가 있었던 거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저희가 작년 11월에 국조실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형수 위원 아니, 그런데 환경부에서 실제적으로 이 제도 자체를, 그러니까 개선안 자체를 내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처의 요청을 받으신 겁니까?

○환경부장관 조경규 지금 여기 기록을 보니까 작년 11월에 저희 녹색법 관련해서 전체적인 규정 정비할 때 국조실 주관으로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러니까 산업부의 요청을 받은 거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산업부 요청,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서형수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일단 배출권 허가제 대상일수록 더 그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누락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마치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고 ‘큰 데는 안 하는데 작은 데는 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이미 시행이 돼서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예.

○위원장대리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올해 환경부 업무보고 중에 저는 환경교육 강화 측면을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

지난해 국정감사 때 제가 환경교육의 아쉬움을 지적한 바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에 힘입어서 이번에 환경교육 예산으로 16억이 배정됐습니다. 이제 실천이 중요한 과제일 수 있겠지요, 장관님?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환노위원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가지고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잘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저는 환경교육에서 중요한 게 기반 그리고 전문인력 그리고 콘텐츠 이 세 가지의 삼박자가 굉장히 맞아 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계획에서 보고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환경교육 선도학교 그리고 푸르미 이동환경교실 이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들이 잘 되려면 전문인력과 콘텐츠도 함께 돼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환경교사 신규 임용이 9년째 0명에 불과하고 매년 환경교육학 전공자가 배출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경교육의 전문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상당히 미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업무계획에서 보고된 환경교육 선도학교 지정과 운영 그리고 중등부로 푸르미 이동환경교실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환경 분야의 교육 전문 인력 배치와 활용을 어느 정도 고민하고 계시는지, 좀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임이자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우선 지금 말씀하신 선도학교 지정은 저희가 맞춰 가지고 환경 전공 교사가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중등 푸르미 문제는 저희가 환경교육 전공자 4명을 강사로 구성을 해서 환경교사 자격증이 있는 전공자 해서 수도권 지역에 시범적으로 자유학기 한 학기 동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3개 교가 신청을 했는데 그 학교는 환경교육 전공 교사가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2월 말까지 최종적으로 신청을 다 받아서 선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보라 위원 그런 전문인력들이 잘 성장하고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이 전략적으로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그 내용들을 좀 더 보고를 해 주시고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신보라 위원** 그리고 환경교육에서 콘텐츠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중등부로 푸르미 이동환경교실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겨냥해서 운영을 하겠다, 한 학기 분량으로…… 그런데 자유학기제의 취지가 체험과 함께 진로 탐색에 사실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동환경교실 콘텐츠를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환경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거나 체험활동은 있지만 환경 분야에 얼마나 다양한 진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탐색할 수 있는 내용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균형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 구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그것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기차 보급과 관련한 건데요. 친환경 전기차 보급만큼 충전기 확충에도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충전 여건들이 잘 개선이 되어야 전기차 이용에 불편이 없을 거고 그것이 친환경 전기차 보급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전기차 구매자들의 민원을 좀 살펴봤는데, 생활 속에서 전기차 충전과 사용에 대한 크고 작은 불편들이 있어서 잠시 소개를 좀 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차 구매자들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고정형 완속충전기를 이용하면 좋을 텐데 아직 그런 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서 아파트 기둥 콘센트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입주민의 동의가 많이 필요한 사안인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입주민들 의견 수렴을 거쳐서 허락을 받았는데 실제 그런 전기차 충전에 쓰겠다는 안내태그를 부착하고 동의를 얻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실은 이런 것들이동에 1개 정도밖에 허용이 안 돼서 이용에 불편함이 있고, 그마저도 다른 차량이 그 앞에 주차를 해 버리면 사실상 이용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

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LH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세대 임대주택의 문제입니다.

다세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홍영표** 예.

○**신보라 위원** 지하 주차장이 없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상에 콘센트나 전용 공간이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것들을 전봇대를 활용해서 저렇게 전봇대 옆에 고정형 완속충전기를 설치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 LH가 이 부분에 굉장히 비협조적이라는 것이지요.

LH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은 도면상 정해진 시설 외에는 아무것도 설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완속충전기 설치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걸 민원인이 시청에 민원을 얘기했더니 ‘수차레 LH와 논의를 해 봤으나 조율이 어려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로 보건대 특히 LH공사 같은 경우는 다세대 임대주택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불편들이 계속해서 접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전기차 충전 공간에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더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에 대한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것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살펴보실지에 대해서 대책과 사안을 의원실로 보고도 해 주시고요.

지금 대책을 강구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 우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려면 충전시설 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에 100% 공감을 하고요. 그걸 위해서 금년도에도 약 1만 2000개 정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한 두 가지 정도의 보틀넥이 있습니다.

하나는 LH공사처럼 임대주택을, 사업자는 LH

인데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일부 임차인은 반대하는 데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런데 금년 들어서 거꾸로 임차인들이 설치를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저희가 협의한 결과 금년 안에 LH 임대주택 중 50여 곳에 충전기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잡았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더 많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사실은 충전을 시키려면 다른 차가 주차를 안 해 있어야 되는데 공공질서 차원에서 알아서 해 주면 좋은데 거기에 내연기관차를 주차를 시켜 놓으면 전기차 충전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현재로서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제재 수단이 법령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홍보나 이런 국민인식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잘못 하면 과태료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경차나 친환경차 전용구역에 주차장 관련해서 잘못 세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부과한다든지 등등 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부처 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영표 신보라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돈 위원 어저께 JTBC 뉴스 또 오늘 조간신문에 4대강사업 관련해서 ‘녹조, 댐·보를 상시 방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아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9년 동안에 우리나라 환경에서 제일 망친 것은 4대강사업하고 그 일환인 영주댐 문제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정부 산하기관들의 이른바 전문가라는 박사들 또 알량한 연구용역에 영혼을 팔아먹은 대학교수들 책임이 큼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추후에 밝혀질 거라고 보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오늘 끝나면 저희 의원실에서 만든 이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전문가들이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문제는 여기서 앞으로 다룰 기회가 많을 것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국정감사 때

는 다른 안건이 많아서 다루지 못했던 것인데 우리나라 아파트, 특히 인천 송도, 판교에도 일부, 세종시에 들어가 있는 생활폐기물,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얘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실 것 같으면 이게 배출원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음식물쓰레기 별도로 버리고 생활쓰레기 버리면 쓰레기 수거차가 아파트 동까지 오지 않고 지하에 공사가 되어 있는 중앙집하시설로 모여서 거기에 트럭이 와서 음식물쓰레기 별도로, 그다음에 가정 생활쓰레기 별도로 하는 것인데, 이게 제가 아는 한 스웨덴에 좀 있다고 듣고 거의 세계적으로 없는 겁니다. 굉장히 첨단화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아파트 각 가구당 약 300만 원 정도의 시설비가 아파트 분양비에 포함됐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집하시설이 사용되고 있는 데가, 이게 한 10년 전부터 해서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제일 많이 들어섰습니다. 대체로 보면 여기 통계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현재 44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군데 가 본 중에서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시설을 볼 것 같으면 통로가 음식물쓰레기 별도로 이송을 하고 생활쓰레기 별도로 이송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운영되는 곳은 제가 아는 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군데 가 본 데인 송도에서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섞어서 단일 배출, 그러니까 설계한 것은 반도 못 쓰고 그냥 통합해서 쓰는 거예요. 써서 그것을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한 군데서는 음식물쓰레기는 전처럼 그냥 별도로 하고 생활쓰레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시설의 절반밖에 못 쓰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각 아파트에서 300만 원씩 시설비 냈다면 150만 원은 대체로 헛돈을 썼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또 하나 문제는 이것을 과연 얼마 동안이나 내구성 있게 잘 쓸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부에서는 이 자동집하시설을 폐기물처리운반시설로 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자동집하시설을 폐기물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2007년, 노무현 정권 마지막 해지요. 이른바 연구보고서

입니다. 보게 되면 환경부에서 발주한 연구입니다. 거기에 서울산업대학교, 특히 음식물쓰레기로 여기저기에서 연구비를 가장 많이 탄 교수 몇 사람 중 한 명일 겁니다. 학회 자체가 음식물쓰레기로 연구비 해서 여기저기 돈 따서 연구했던 학회인데 거기 교수고, 거기 보면 자문위원회, 작게 보입니다마는 저것이 이 시스템을 파는 회사입니다. 환경부가 낸 정책연구에 이 거대하게 비싼 시스템을 팔아먹을 회사의 임원이 자문위원을 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에 의해서 이것이 폐기물 처리에 합법적이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홍영표** 예.

○이상돈 **위원** 결론을 내서 한 것인데, 제가 갖는 의심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 실무선, 국·과장에는 이것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라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사람이 사실상 상부압력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만 했다고 한 진술이나 증언의 녹취록도 있습니다.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갖는 문제는 현재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 시스템을 보면 이게 과연 기능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가 제가 그것을 좀…… 이것은 앞으로 계속 다뤄야 될 것이고 또 실태 파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가구들이 300만 원이라는, 이거 곱하기 하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실패한 시스템을 가져온 게 아니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섞어서 태워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른바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분리했던 20년 환경부 정책이 스스로 모순이 되는 게 아니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실태 파악이 필요하고, 즉 이것이 처음부터 사기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심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장관님 말씀하십시오.

○환경부장관 **조경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이상돈 위원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해 주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

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 또는 이런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당시에 이게 약간 부적절한 그게 있었느냐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해 본 바로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세세하게는 아직 모르니까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음식물류 폐기물은 소각 매립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해서 자원생산 향상에 이바지하는 게 저희 정책의 목표기 때문에 그 목표에 맞춰서 자동집하시설이 과연 폐기물 배출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종합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어떤 부분적인 문제점을 인식해서 작년 11월에 지침을 개정해서 우선 신규 설치 시에는 분류별로 설치를 의무화했고 기존 시설의 경우에는 수거체계를 마련하는 등 재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일단 조치를 취했는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영표** 이상돈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옥주 **위원** 장관님, 혹시 환경부에서 작년 겨울에 진행한 기후변화 취약계층 한파적응 시범사업 알고 계세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송옥주 **위원** 그 활동인력이 그린리더라고 하는데요, 그린리더는 환경부가 2011년부터 추진한 그린스타트 운동의 활동가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및 생활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교육 양성 과정을 이수한 시민활동가인 거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맞습니다.

○송옥주 **위원** 시민들인 거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송옥주 **위원** 취약계층 지원사업에서 그린리더의 역할은 취약계층에 대한 취약성 평가와 취약성 진단 컨설팅을 진행하고 방문서비스를 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문풍지나 단열 에어 캡을 설

치하는 등 서비스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린리더 운영관리 매뉴얼에 취약성 평가와 취약성 진단 컨설팅과 관련된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범사업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그린리더들이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컨설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환경부장관 조경규** 저도 지난……

○**송옥주 위원** 아니, 가능 여부만 말씀을 하세요, 계속 질문이 있으니까.

○**환경부장관 조경규** 저도 지난번에 그린리더하고 같이 그 컨설팅에 한 번 나가 봤거든요, 현장에. 나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 충분하지는 않다고 느꼈습니다.

○**송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열정페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에 부합하는 적절한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가구에 2인 1조를 배치하는데요, 한 가구 컨설팅에 1인당 만 원씩 주고 있어서 활동비식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아마 소일거리 삼아서 이 부분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활동비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취약계층 적응지원 사업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하지만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전혀 다른 활동목적 갖고 있는 시민활동가들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효과를 떨어뜨림과 동시에 그린리더 활동가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사업입니다.

2017년 활동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이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송옥주 위원** 작년에는 1000가구 대상으로 사업을 한 것 같고요, 올해부터는 50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늘릴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상 확대 이전에 취약계층 적응지원 사업의 활동인력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시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활동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대로 갖춰서 교육시킨 후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적응지원 사업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고 이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

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처음으로 이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콘텐츠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거기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할 때는 이게 임금 성격이라기보다는 자원봉사인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소정의 수고료 이런 식으로 해서 만 원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과연 그게 효과적인지, 아니면 또 이번에 5000가구를 확대를 하니까 이게 대상가구 확대하는 게 효과적인지, 금방 말씀하신대로 작은 가구 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되게 하는 게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을 좀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한 가지 더 추가질문을 하겠는데요.

아까 업무보고 17페이지에 초미세먼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고내용이 있었습니다. ‘국내 오염도, 인체 위해성,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서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과 경보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올해 11월 달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은 좀 남아 있기는 한데요. 지금 미세먼지에 불안해하는 많은 국민들이 이것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가급적이면 EU나 WHO 기준에 맞춰 달라라는 민원들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현재 PM10이나 PM2.5의 기준이 2006년, 한 10여 년 전에 마련된 정책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게 WHO 기준으로 보면 잠정목표2 수준인데 저희가 지금 지향하는 정책이나 작년에 마련한 미세먼지 종합대책 기준으로 봐도 약간 오버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런 기본방향을 가지고 이번 달에 용역도 발주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기준 강화와 관련해서 국제적인 어떤 추세 또 국민건강 영향 이런 것을 전부 해서 가능한 한 저희는 초안은 상반기나 8월 정도까지 마련하려고 하는데, 아까 11월 그것은 최종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민심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다음은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河泰慶 위원** 장관님, 사진 보면서 합시다.

사진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최근에 기승인데 AI도 그렇고 구제역도 그렇고 환경부 관련해서는 살생처분 하지 않겠습니까? 살처분 하는데, 그러니까 죽여서 처분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생매장을 하더라고요. 생매장하는 현장을 보니까, 저기 사진에 보시면 좀 끔찍해요. 그런데 비닐을 이중으로 해서 깔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게 전혀 보장이 안 되고.

저기 사진에도, 중간 사진 보십시오. 흙이 옆으로 흘러 나와 가지고 비닐이 찢겨져 가지고 하는 것 볼 수 있고, 제일 중간에. 그다음에 중간 위쪽에 보면 아예 3분의 1 정도는 비닐이 없지 않습니까, 훼손이 되어서 없고. 그래서 이 침출수가 유출이 되면 주변 지하수에 문제가 있고, 저게 농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부에 직결이 된다.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 이것 살처분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 다른 방식이 없느냐. 소각 처리하는 거랑 비용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닭·오리 50t 매립 처리 시에는 약 4000만 원 비용이 발생하고 소각 처리할 경우에는 2000만 원, 반 정도 들고요. 또 매립 살처분은 3년 후에 다시 재처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또 한 1~2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 소각 처리는 추가 비용이 없다.

그다음에 소각 처리하면 실제로 잉여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체 소각에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가 남는다, 그래서 해마다 구제역이나 AI나 없어야 되겠지만 발생할 경우에 사후 처리하는 방식을 소각으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고.

또 보통의 경우에 이번같이 아주 거대한 양을 매장하면 한 2개월 뒤에 악취가 발생한답니다. 그리고 우기철에는 침출수가 빠져나가서 지하수가 바로 환경오염이 되고, 이 부분을 장관님이 한번 봐 주시고요. 모아서 죽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국립공원, 속리산을 타깃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현장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기 화면에 보시듯이 입구인데요, 조경공사 하고 또 식재 공사하는데 등산객은 올라가고 있고 옆에서는 공사하고 있고 그래서, 안전담당자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공사,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도 없고 안전 펜스도 없고 등산객들이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고 또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식재공사 관련해서는 표준공사 시방서, 안전관리지침 이런 기준 자체가 없더라, 이런 기준 마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화면……

화장실이 되게 빈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몰리는 철에는, 저기 보면 남자화장실, 남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자화장실도 3개인데 줄 잔뜩서 있고, 그래서 등산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것은 굉장히 부실행정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알았는데 화장실 위에 태양광 발전전지가 저렇게 있어요. 그런데 위치가 태양이 거의 안 들어오는, 해가 안 비치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나뭇잎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게 잔뜩 있고 사실상 무용지물 상태인데……

저거 자료 한번 뽑아 보십시오. 전국의 국립공원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저걸 다 없애든지 하면 제대로 하든지, 여하튼 예산 낭비도 꽤 심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산불……

30초만 쓰겠습니다.

산불 방지 관련해서…… 우리 정치인들도 등산할 때 다 인사하고 가는데, 그래서 등산을 자주하는데 라이터나 이것을 다 걸거든요. 그런데 산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공익들이 나와 가지고 ‘라이터 주고 가세요’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막상 여기 속리산에는 아예 없더라고요. ‘인화물질 보관함’ 해 가지고 덩그러니 있고 아무도 눈치도 안 주고 그냥 지나간다…… 그래서 인화물질 보관함 주변에 방송이라도, 인화물질, 라이터 같은 것 여기 안 내놓고 가면 과태료를 물 수 있든지 이런 경고방송이라도 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산불이 2016년, 15년, 14년 해서 이런 라이터, 담배 가지고 가서 산에서 담배 피우다가 불 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래서 산불도 많이

예방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우선 국립공원 관련된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사진에 나온 게 아마 속리산의 화북분소 철거지의 조경공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탐방객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자 배치라든지 이런 것에 철저를 기하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에다가 별도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편의시설 확충은 당연한 말씀이고, 당연히 해야 되어서 저희도 정비를 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은 일부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여성전용 화장실이 많이 필요하다 그 문제, 그거 계속 늘려 나가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화장실에 대해서 안심벨, 그것은 저희가 금년까지 326개 전 화장실에 다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에 183개를 추가해서 전체 다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河泰慶** 위원 안심벨은 무슨 용도로……

○**환경부장관 조경규** 들어갔는데 혹시 위험하고 이럴 때 벨을 누르는 그런 시설……

○**河泰慶** 위원 여자화장실이 위험한가 보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혹시나……

그다음에 태양광발전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파악해 봤더니 354개 화장실 중에 태양광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게 21개소입니다. 그런데 21개소가 말씀하신 대로 하도, 2007년 이전에 다 설치가 되다 보니까 어디는 노후화되어서 기능도 못 하고 어디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좀 바뀌어 가지고 태양도 안 들고 이래서, 21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미흡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예방 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제대로…… 큰 금액이 아닙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 홍보나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담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지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AI나 구제역 매몰지 그 문제, 이거 지금 정부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금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도 예방이나 방역조치에 모든 인력이 다 동원되어서 사후관리와 관련되는 것은 급한 불 끄고 좀 하자 이래서 3, 4월쯤 되면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아까 보여 주신 그런 방식은 전부 일반매몰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과거에 2010년, 11년에는 그런 방식이 거의 한 90% 이상을 차지했었는데 최근에는 다 없애 가지고 한 15% 정도만 아까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그 15%도 환경에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난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가 관계부처 합동점검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월까지 주변이라든지 수질조사를 완료해 봐 가지고 매몰지 관리 개선방안을 환경부 차원에서도 낼 수 있는 것은 내서……

사실 이게 지금 법령상 직접 매몰하고 그 매몰지를 관리하는 부담은 농식품부하고 지자체에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환경오염이 없는지, 그 주변의 지하수 관련된 오염이 없는지, 그런 지원해주는 기능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뒤에 결과적으로 오염이 되면 모두 또 환경부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유념해서 농식품부에서 방역대책본부 중심으로 개선방안 마련할 때 이번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 종합방안 만들 때 저희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소각 처리하는 문제는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비용분석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또 개체수가 많다 보면 소각이 그렇게 단기간에 개파가 될 수가 없습니다.

○**河泰慶** 위원 갑자기 몰려나오니……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이게 왜냐하면 빨리 매몰을 24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 어디 갔다가 24시간 내에 소각할 수가 없고 또 이동 과정에서 이게 전염병 관련 법상 혹시 전염병 전파될 우려도 있고 이래서, 그런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일부만……

○**河泰慶** 위원 거점을 해서 몇 군데만 집중적으

로……

○**환경부장관 조경규** 그러니까 그 일부만 지금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앞으로는 기술 발전도 한다면지 해서 단시간 내에 소각을 빨리 하는 기술 이런 게 개발이 되면 이런 것을 하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河泰慶 위원** 경제 타당성 분석이 맞다 이 말씀이시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3, 4월에 그것을 할 때 저희 의견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해 가지고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河泰慶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하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창현 위원**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23일 폐이외질환경검토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천식의 경우도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것 맞습니까, 장관님?

○**환경부장관 조경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때 논의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논의 중입니다.

○**신창현 위원** 담당국장 좀 옆에 나오세요.

아직 장관님이 보고를 확실히 못 받으신 것 같은데……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환경보건국장입니다.

○**신창현 위원** 13차 회의에서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나요?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신창현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회의록을 보고 얘기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신창현 위원**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은 결론이 안 났어요?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신창현 위원** 진단기준을 만들자고 그때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일부 위원들이 진단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그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시되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창현 위원** 장관님, 업무보고 자료 20쪽에 보시면 맨 하단의 ‘폐 이외 질환 판정기준 개발’에 폐 이외 질환의 경우 독성실험 등을 거쳐 태아, 천식…… 태아는 17년 2월까지, 천식은 17년 4월 목표로 판정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신창현 위원** 결론도 안 내고서 이렇게 판정기준 마련한다면 어느 한쪽이 틀린 것 아니에요? 결론 났으니까 판정기준 만드는 것이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아니요, 저희가 지난주에 16차 회의까지 했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제13차 회의록 가지고, 그것 할 때까지는, 그 당시에 저희가 태아 피해에 대해서는 1월 중에 그것까지 해서 결론을 내기로 했었는데……

○**신창현 위원** 장관님, 태아 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8차인가 9차 폐이외질환경검토위원회에서 태아, 유산 등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이미 이것은 끝난 얘기고요.

그동안 천식에 관해서는 내부에서도 찬반양론이 있어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해 오다가 지난 12월 23일 날 13차 회의에서 그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더 이상 팽팽하지 않고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환경부 업무보고 자료에 4월을 목표로 판정기준을 이제는 만들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의 피해로 신청한 사람 중에 1·2단계가 아닌 3·4단계 판정을 받아서 지금 아무런 지원도 못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3·4단계 판정받은 피해자 중에 천식 환자들의 경우에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잖아요. 이런 기쁜 소식은 적극적으로 우선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알려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식에 대해서도 피해를 인정하기로 거의 의견이 모아지고 4월까지 판정기준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절망하지 마십시오’라고 한번 격려해 주실 의향 없으세요, 장관님?

○**환경부장관 조경규**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시는데 것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저희도 그것을 해 드렸으면 참 너무나 좋겠는데,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절차라는 것은 이게 절차가 되어서……

저희가 보수적일지는 모르지만 행정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정부 그것으로 정해지기 전에 또 선불리 이야기를 해서 과도한 기대를 했다가 뒤에 이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또 우려도 있어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한 것이지 금방 말씀하신 방향이 틀리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정이 진행되는 것은 알려 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가 어떻게 결론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것까지는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워서 알려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신창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관님 말씀 제가 존중하고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계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국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쁜 소식은 좀 서둘러서 우선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먼저 개별통보를 해 주면 좋겠어요.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위원님, 아직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조치를 못 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창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주세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빨리 해서 그렇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그래요.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이자 위원 장관님, 2016년도 국민환경의식 조사를 해 보면 우리 국민들이 경제, 복지만큼이나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임이자 위원 또 환경 중에서도 국민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게 미세먼지하고 유해화학물질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임이자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의식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미세먼지 관련되어 가지고 감축하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46.9%가 ‘별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요. 그다음에 또 ‘국내 미세먼지 수준이 만족스럽습니까?’ 하니까 ‘불만족스럽습니다’ 하는 게 과반이 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미세먼지 관련되어 가지고 국민체감형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것하고, 생활화학제품 관련되어서는 자가검사 표시를 지금 하도록 되어 있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임이자 위원 이 부분이 확실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기환경 기준이 WHO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임이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되어 가지고 2005년부터 16년까지 미세먼지 저감해 보려고 하는 데 예산이 한 1조 9257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17년도는 얼마 정도가 지금 되어 있지요? 한 4833억 정도 반영되어 있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임이자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불안감은, 여전히 아직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WHO에서 기준을 정해 놓은 것보다도 절반밖에 미치는 못하는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지금 WHO에서 권고기준을 해 놓은 것은 PM2.5 같은 경우는 일평균은 25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PM10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이 50입니다.

무엇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 놓았는지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임이자 위원 그러면 권고기준으로 갔을 때는 심폐질환과 폐암에 의한 사망률 증가가 최저수준이고 점점 갈수록 증가되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임이자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WHO 대기환경기준 잠정목표2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잠정목표보다도…… 사실은 사망위험률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9% 정도는 그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임이자 위원** 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경보발령 기준 관련해 가지고 WHO 권고 수준으로 상향하자는 법안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혼란과 불안을 더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선 경보발령 기준 상향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목표기준인 WHO 권고기준 정도로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시급히 강화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조경규** 아까도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을 때처럼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기환경기준은 06년도에 정책목표로 삼은 것이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경과됨에 따라 현실을 반영 못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이자 위원** 이번 2017년도에 용역 들어가시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그래서 이번 달에 대기환경기준 개선을 위한 용역을 출발해서 금년 상반기 정도까지 용역을 하고 하반기에 그 결과를 통해서, 11월까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거 용역 발주하시고 나서 그 경과를 우리 방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구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임이자 위원** 그다음에 지난 1월 6일 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을 강화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임이자 위원** 영유아, 청소년, 노인 계층까지 포함해서 양로원이나 요양시설 등의 노인복지시설까지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에 의하면 단계가 6단계까지 되어 있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임이자 위원** 6단계 중에서 영유아나 청소년, 노인 계층을 다 포함해 가지고 예비주의보 때는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도록 되어 있고 항상 마스크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이자 위원** 그러면 지금 공기청정기를 학교 그다음에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데 다 지금 가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조경규** 저희가 공기청정기라는 것을 예시로 든 것은 공기청정기가 있는 학교나 어린이집에서는 공기청정기 같은 것을 돌려서 그 안의 공기를 깨끗하게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전 학교에 공기청정기나.....

○**임이자 위원** 장관님!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임이자 위원** 매뉴얼을 작성할 때는 누구라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보편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임이자 위원**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거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매뉴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 여기에 따라서 바로바로 대처를 해야 될 텐데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라’라고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나뽀, 예비주의보 이럴 때,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공기청정기를 다 튼다거나 경로당에 다 틀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매뉴얼을 잘 적용해서 작동하는 게 사실은 정책목표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기청정기라는 그 항목을 거기에 넣어 놓음으로 인해서, 그러면 공기청정기 없는 곳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리고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다 넣어 놓은 것은 다양한 수단 중에 공기청정기도 하나의 예시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공기청정기가 없으면 그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규정이 또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수정하셔야 됩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임이자 위원** 황사 마스크도 마찬가지로. 황사 마스크도 수입한 거나 우리나라에서 전체 만드는 게 3000만 개밖에 안 되는데, 이게 다 엉터리입니다.

이 부분 다시 현실에 맞게끔 누구라도 바로 실행

행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로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3100만 개가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한 것은 추정 취약계층 인원이 850만 명이라고 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당시의 상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영표**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진국 위원** 우선 저는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국립공원공단 상임감사 문제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상임감사 본인이 부인하고 있지만 직원 폭행 및 음주 강요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문진국 위원** 그래서 노동부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또 환경부도 감사 후에 경고 조치를 내렸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임이자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진국 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국립공원공단의 직원 사기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 지금 알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조경규** 제가 직원들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문진국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문진국 위원** 그러면 공단의 주무장관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부장관 조경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게 제가 작년 국감에서 제기되자마자 조치하려고 자체감사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우선은 현행 법령상 상임감사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해임이나 파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공운법상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을 관장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서 검토했는데, 지금 이 사안은 아직 사법적으

로 판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사실 자체만 가지고는 해임이나 파면이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냥 우선 서면경고 조치를 하고 관계부처랑 해서 검찰에 지금 현재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진국 위원** 짧게……

○**환경부장관 조경규** 그리고 본인은 팩트는 인정하지만 그 정도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니까 검찰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것인데, 우선 근본적으로는 신분상 조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조치까지 가기 이전이라도 노조라든지 상임감사 등 이런 데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무장관으로서 그런 부분을 잘 마무리를 짓도록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문진국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이 벌써 반이 가 버렸으니까 한꺼번에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제사회는 온실가스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지난 2015년 12월 파리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16년 11월 공식발효 이후 ‘2030 감축 로드맵’ 등 후속조치 이행계획 구체화, 부문별 감축 및 적응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사항이 좀 미흡해서 그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이 너무 약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8위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개선 노력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2017년 기후변화이행지수 역시 58개국 중 최하위권인 55번째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정부는 지난해 6월 기후변화 대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온실가스 통계관리는 국조실, 배출권 거래제 총괄은 기재부, 실무는 환경부 등 관장기관이 운영하는 것으로 개편했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관리 운영 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이관되어 있다 보니 효율성 문제 등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적응, 협상 등과 관련해 주관기

관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의 답변 바랍니다.

다음 문제점은 현재 신기후체제 대응 대부분이 정부 중심의 기후변화 적응정책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후 체제하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중요성만 강조되고 법제도 기반 및 지역·민간의 참여체계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준비 중이신지 답변 바랍니다.

에너지 정책도 국제 추세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주원인에 에너지 발전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석탄발전설비 규모는 2014년 대비 2029년 약 6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제 탈석탄 추세와 반대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재생에너지 분야도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나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및 G20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장관님, 기후변화, 대기질, 에너지정책은 공기를 매체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에너지정책을 기존 경제성에서 친환경성으로 전환하지 않고 현재처럼 산업정책에 기반할 경우 신기후체제 대응에 한계가 발생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길면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간단하게 답변드리고 나머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섯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기후변화대응지수, CCPI 지수가 나쁜 이유는 지수체계가 1인당 배출 수준이나 온실가스 배출 추세와 같은 계량적인 게 그 지표에 60%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불행히도 지금까지는, 아

직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제구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나쁜 그렇게 봐서, 앞으로는 저희도 그게 어느 정도 정점이 되는 해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노력을 해서 좋게 개선시키도록.....

○문진국 위원 우리나라가 최하위권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형수 위원님께서도 문제 제기해 주셨지만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작년 국감 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6개월 경과된 시점에서 환경부장관으로 왔다고 해서 당장 환경부로 가져오자 이렇게 하면 또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답변드린 대로 일년 경과나 종합분석을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아까처럼 부족하다면 다시 돌아오는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단일화 쪽으로도 신경 쓰시고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그리고 아까 적응 정책, 다른 지자체·민간·공공기관 참여 확대는 저희도 하고 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석탄발전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7차 전력수급계획상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미세먼지 특별대책 수립할 때 특별히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시작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할 때는 석탄발전 감축이라든지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담도록 저희도 방안을 만들어서 산업부랑 협의를 하도록.....

○문진국 위원 그 부분은 정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겁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그리고 저희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때 저희 환경부에서도 정책수단이나 틀을 많이 제시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이자 문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강병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유독물질 PHMG 불법 유통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하셨더라고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강병원 위원 잘하셨습니다. 보니까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에서 했더라고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강병원 위원 앞으로 기회가 되시면 이 수사단을 좀 보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 사실은 작년 말에 좀 보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정식 직제화되는 것이 조금, 저희 다른 직제랑 막 연계가 되어 있어서 못 했는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올해 살생물제법을 제정하시려고 하시는데 이 법이 되면 또 기업들이 다른 불법적인 방법들을 많이 강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수사단을 좀 보강하시는 것이 또 미래를 좀 대비하는 환경부의 자세가 아닌가 싶고……

○환경부장관 조경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그런 것들 대비하시기 위해서 국회에 뭔가를 요청하신다 그러면 본 위원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찬성해서 돕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감사합니다.

○강병원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보도자료를 보니까 33개 업체가 불법 유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름들은 공개되지 않거나 영어 이니셜로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본 의원실에서 그 33개 업체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피의사실공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강병원 위원 얼마 전에 동아일보 보니까 단독으로 그냥 SK케미칼이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해 주신 분은 환경부에 계신 분이 하셨는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아니고……

○강병원 위원 추측으로 썼을까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SK케미칼이 동아일보의 취재에 아마 그냥 자복한 것 같습니다.

○강병원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동아일보도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이 되어서 고소를 당했을까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본 업체가 자발적으로 한 것은 또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병원 위원 제가 봐서는 동아일보가 형법 제126조에 피의사실공표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SK케미칼을 명시한 것은 그만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발상에 대해서 환경부가 좀 자신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33개 업체들은 2013년부터 불법 유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까지 했었지요. 장관님, 이 기간을 생각해 보시면 가슴기살균제 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 사회의 화두가 됐고, 정말 지금까지 1000명이 넘게 돌아가셨고, 5000명이 넘는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불법 유통을 했다라는 것은 이 업체를 선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조경규 선의가 아니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악의 아닙니까, 악의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강병원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 업체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피의사실공표라고 해서 보호받아야 될지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형법 제20조에 보면 정당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법 집행이나 법령 준수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장관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형법 제22조를 보면 긴급피난 조항이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가해질 경우, 시급히 어떠한 위험을 회피해야 하는 경우에 바로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33개 업체가 2013년도부터 불법 유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지 모르고, 이 물질이 또 주변에서 더 사용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환경부에서 수거를 해서 가지고 33개 업체를 발견해 내셨지만 아직도 그 물질이 더 쓰이고 있을지 모르고,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 잡았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33개의 불법 유통업체를 피의사실공표가 아니라 형법 제20조와 제22조의 정당행위와 긴급피난이라는 조항에 힘을 실어서 공

개하셨을 때 더 많은 피해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7호 가를 보면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조항에 근거해서, 이런 피의사실공표 때문에 업체를 공개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런 조항에 근거해서 국민들의 잠재적인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한번 이 33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조경규 저도 개인적으로는 당장 공개하고 싶고, 보도자료를 낼 때 제가 공개를 하라고 처음에 지시를 했습니다.

○강병원 위원 잘하셨네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그랬는데 저희가 또 공개를 하려다 보니까 중수단이라는 조직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검찰에서 검사가 파견돼서 하는 조사단이다 보니까 저희가 법률적으로 따져 보니까 이것이 검찰·경찰같이 이렇게 수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자가 하면 관계가 없는데 직접 그 수사를 한 자가 보도자료를 뿌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형법 20조, 22조 말씀해 주셨지만 약간 간접적인 조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126조에 나온 피의사실공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참 법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것 그냥 기소가 되면 자동 공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기소를 빨리 해라 그래서 저희가 동부지검에다가 요청을 하기로, ‘빨리 기소를 해라. 그러면 우리 빨리 공표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해당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조금 어폐는 있습니다만 자복하게끔, 자기들이 스스로 공개하게끔 하는 이런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피의사실공표죄가 과연 문제라면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빨리 국민들한테 알려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2월 말까지 일부 아까 33개 업체 중에 소명이 조금 덜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소를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날짜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니까 그렇게 하자 하고 그냥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냥 최종 보도자료 나갈 때는 A·B·C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자체가 사실은 저도 그냥 법적인 근거만 있으면 바로 같이 공개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직접 중수단이라는 것이 환경부 산하에 있는 수사 조직이고 이래서 또 동부지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준다고 해서 그 기간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에서 일단 우선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형법 20조, 22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깊이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다시 한 번 법률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조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만일 가능하다면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아일보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되지 않는 거랍니다, 직접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동아일보는 SK에다 물어보고 SK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깐 그렇게 해 준 것 같습니다.

○강병원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법무법인 두 곳의 의견서를 받아 봤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의견서 하나는 제가 장관님께 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강병원 위원 아까 장관님도 악의적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강병원 위원 그러면 직원들 취재에 응해서 하나씩 하나씩 흘리세요.

(웃음소리)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상황에서도 이것을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업체 그리고 MSDS를 다 조작까지 했지 않습니까? 또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르는 건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것들에 관해서 법이 정한 대로 좀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행위로 이윤을 획득한 기업들에 대해서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3배 이내로 배상 책임을 묻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정을 좀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환경부장관 조경규 지난번에 제가 가슴기살균제 특별법 할 때도 의견을 드렸지만 지금 한 7개 법률에서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물리는 것은 이제 거의 그냥 상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지난번 그것 할 때 소비자 전체적인 측면에서 공정위에서 금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화학제품뿐만 아니라 전체를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하는 법을 지금 개정한다고 하니 그것이 되면 여기 별도로 안 해도 동일한 효과를 내니까 그것은 법률 간의 실효성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혹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환노위에서라도 함께 좀 논의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이자 강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화 위원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께서 PHMG 이번에 적발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법률적으로 준비를 해 주신 것 같고요. 그에 이어서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찰에서 피의사실공표 등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2월 중으로 기소를 하겠다고 했단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불법으로 PHMG를 제조·유통한 업체가 서른세 곳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김삼화 위원 그 총 유통량이 295t 정도로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아까 강병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SK케미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되어 있고, 그 SK케미칼이 불법 유통한 PHMG 양이 30t 정도라고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김삼화 위원 아, 말씀하시기 힘드신……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김삼화 위원 알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SK케미칼은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가슴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되는 원료물질을 제조한 회사고, 실제로 또 PHMG는 아니지만 다른 것으로 가슴기살균제도 제조·판매까지 했던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것은 2013~2016년 4년 동안 295t이었는데 그 4년 동안 환경부가 제대로 적발을 이번에 처음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도 했는데 적발을 못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 조금만 경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이 PHMG 불법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2015년 1월에 화관법이 시행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것이 우리한테……

○김삼화 위원 화관법 이후에?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일원화되어서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부터 유해화학물질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 특히 16년에 조사를 했는데 14년 통계치를 저희가 검증을 하다 보니까 3개 업체가 조금 이상하다, 뭔가 앞뒤가 좀 숫자상 안 맞고 이렇다, 그러면 이것이 조금……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중수단이 마침 설치 됐기에 거기를 급습해 가지고……

○김삼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 압수수색을 해 보니 이 3개 업체뿐만 아니라 그 밑의 쪽 하위 유통업체 30개 해 가지고 전체 33개가 걸려서 그것도 전부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접 제조한 데도 있고, 어디는 받아 가지고 또 유통한 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검찰에 기소를 하게 된 겁니다.

○김삼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 그래서 15년 전에는 이와 같은 조치를 했으면 좋겠지만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됐고요.

○김삼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제약이 좀 있어서 제가 쪽 여쭙 볼 테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김삼화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동안 유해화학물질 무허가업소로 적발한 곳이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2015년에는 열두 곳이고 2016년에는 열아홉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장관님께서도 화관법이 2015년부터 시

행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렇게 PHMG 1건에 무허가업소가 서른세 곳이 적발된 것과 비교를 하면 단속이 너무 안이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좀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 한 해 동안 유통된 PHMG 양이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자료를 보면 110t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고 계실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화관법이나 화평법이 도입될 때도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반영되어서 법이 좀 허술했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관리체계가 허술했으면 이제라도 단속체계라도 환경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2만 개가 넘고 또 인력…… 단속 횟수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특히 유해한 화학물질은 국민의 건강, 생명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이후에 좀 한꺼번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단속한 것과 관련해서 환경부 보도자료를 보면 불법 유통된 PHMG가 어떤 섬유에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또 어떤 업체들이, 아까 그 부분은 피의사실공표 때문에 말씀을 못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섬유에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이것도 피의사실공표 때문에 못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고, 또 PHMG가 피부 독성이 낮고……

1분만 주십시오.

호주에서는 섬유에 항균제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PHMG 처리를 한 섬유는 매우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정조사에서도 칫솔모, 필터 이런 것에도 쓰이는 합성섬유에도 SK PHMG가 처리되었다 하는 그런 정황도 다수 제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4년에 발간한 자료를 보면 PHMG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피부 세포 생존과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급성 경피독성값이 낮다 그래서 독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데요. 유해 정도가 낮다고 해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최대한 차단을 해서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의무라고 보여집니

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그리고 불법 유통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PHMG의 정확한 사용처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될 것인지 이 부분의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조경규** 지금 한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관법 개정되고 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많이 단속 점검을 했는데 아까 단속·점검 실적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 문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유해화학물질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 110t, 2만여 개 업체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 사실은 저희도 이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업체는 많고 저희 단속인력은 부족하고 이래서 좀 이것을 스마트하게 하기 위해서 화학물질 안전을 하고 어떻게 하면 단속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까 고민 중인데 저희가 우선 인력도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를 쭉 해서 좀 위험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는 저희 중수단을 좀 정규 조직화하든지 인력을 확충해서 어떤 불시 점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PHMG가 섬유나 이런 데 쓰는 건데 이것도 장기 노출되면 안 된다는 부분은 당연히 그것을 일부러 되게 노출해 가지고 건강에 안 좋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저것에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 물질이 저런데 살생물제법이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 될 때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속이나 점검을 제대로 해 나가도록 하고요. 살생물제법이 금년에 제정이 되어서 그것이 포함되면 좀 더 저런 문제, 노출로 인한 영향 미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문진국 위원, 서형수 위원, 김삼화 위원, 송옥주 위원, 이정미 위원, 임이자 위원, 장석준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과 기상청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및 기상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용노동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주요업무내용을 소개해 주시고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와 마찬가지로 상세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법안을 제안설명드린 데 이어 올 한 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과 격차 완화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경기 부진,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고용 안정과 일자리 기회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취약한 여건에 있는 근로자들도 일한 만큼 대우 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일자리 정책 추진, 내실 있는 고용서비스 제공, 격차 해소와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세 가지 과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청년·여성·장년 등 핵심대상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다.

청년들이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조기에 찾을 수 있도록 2013년 도입하여 기반을 다진 일학습병행제를 재학생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직업교육훈련의 혜택이 적었던 일반고 재학생들을 위해서도 교육부와 협력해 취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보다 오랫동안 일하면서 목돈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책임공제 제도를 확대하고 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일하는 여성들을 위해서는 특히 모성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장년층에 대해서는 정년 60세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하면서 최종 은퇴연령이 70세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에서 인생 2막을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둘째, 고용서비스가 촘촘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100개소까지 확대하는 한편 질적으로는 고용복지 융합 서비스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내용, 방식, 인프라 전반을 혁신하겠습니다. 특히 폴리텍 등 공공훈련기관을 중심으로 신산업 분야 훈련의 기반을 닦고 우수사례를 민간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조선업 등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상황을 면밀히 살펴가며 고용안정 대책을 보강해 가겠습니다. 최대한 일자리를 지키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정비하고 경영과 고용 상황, 기업의 자구 노력 등을 감안해 조선 대형 3사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노동시장 상황이 어려워지는 만큼 근로자 간 격차 해소와 취약근로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소규모 기업 근로자와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임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반복 체불 사업장, 열정페이 우려되는 업종, 취약계층 고용사업장 중심으로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체불 사업주를 강력히 제재하겠습니다. 금년

1월 말부터 운영 중인 임금체불 통합신고시스템을 통해 체불 사실을 언제라도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감독과 빠르게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근로자 간 격차를 완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관계 부처가 함께 마련한 원·하청 상생 협력과 공정거래 제도가 일자리 관점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단계 하도급이 보편화된 물류, IT, 자동차 업종 등을 대상으로 상향식 근로감독을 실시하면서 하청의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지도하겠습니다.

최근 안타깝게도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에 대해 산업안전 감독의 40% 이상을 집중하고 특히 50대 건설사의 안전 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하청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입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용노동부는 당면한 노동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들이 일을 통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내는지,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가며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입법과 예산편성 그리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새로이 부임한 고용노동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 임서정 노동정책실장입니다.
- 나영돈 노동시장정책관입니다.
- 권혁태 고용서비스정책관입니다.
-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입니다.
- 정지원 노사협력정책관입니다.
-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입니다.
- 류경희 공공노사정책관입니다.
-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입니다.
- 황보국 대변인입니다.
- 장신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입니다.
- 이태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입니다.
- 오복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입니다.

(간부 인사)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상세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했는데 꼭 보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저희 인사말에 큰 취지는 다 담아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그래도 하실 것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시려면 하십시오, 짧게, 다 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기획조정실장이 준비된 자료로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최근 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 2017년 중점 추진 과제, 정부입법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 여건입니다.

고용의 경우에는 2016년 고용률은 66.1%로 2013년 이후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나 취업자 증가는 20만 명 후반대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9.8%로 높은 상황이며 청년 취업애로계층도 110만 명 수준이 되겠습니다.

한편 금년도는 내수 부진,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저성장과 일자리 증가의 둔화가 예상되며 고학력 졸업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졸업 시점인 금년초 청년 취업난 심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 관계입니다.

2016년은 노사분규 건수 및 근로손실 일수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금년도 역시 임금체계 개편, 성과연봉제 등을 둘러싼 노사 갈등 가능성이 잠재하고 구조조정 등 불안 요인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청년·여성 등 핵심 대상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고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서비스를 확충하며 근로자 간 불합리한 격차 완화와 근로조건과 산업안전 등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먼저 적극적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의 조기 입직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반고

비진학자를 대상으로 전문대와 훈련기관에 대한 위탁 훈련을 확대하고 일학습병행제는 재학생 단계 비중을 높이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200개 내외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학 재학생 대상으로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청년취업 아카데미는 인문계 특화 과정 중심으로 재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지원 규모를 지난해의 추경 포함한 물량 이상인 21만 명 정도로 확대하고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해서 2단계 훈련을 다양화하는 한편 3단계에서 취업 알선 소요실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60개 수준으로 확충하고 일본·베트남 등 취업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취업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5만 명으로 확대해서 지자체 인턴사업과 연계해서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2016년 말 만료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2년 연장하고 공공부문에서 2018년까지 2만 5000 개의 플러스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민간부문에도 이러한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중심 채용은 공공부문의 경우 전 기관에 도입을 완료하고 민간기업에도 확산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와 협조·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중장년의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 장년 인턴을 확대하고 정년 60세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60세 이후에도 재취업과 전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금제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장년 취업성공패키지는 64세에서 69세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경우 전직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고령자의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장년 대상 기초 ICT 과정을 신설하고 훈련 과정도 다양화 하겠으며, 실업급여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상한 연령을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

6페이지,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육아휴직 부여 시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을 확대하고,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의 지원 한도를 상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육아휴직 복귀 6개월 이내에 계약 만료되는 기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후 복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녀부터 아빠의 달 인센티브 상한액을 인상하고 취약사업장에 대한 타깃 감독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공공부문 정원의 3%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지원금을 인상하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 지난해 3.0%에서 2019년도는 3.4%가 되도록 하고요, 민간기업의 경우는 3.1%가 되도록 2019년에는 높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연계고용 허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수요 맞춤형 훈련센터를 신설하고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2개에서 4개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전문화하는 한편 물량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청년 사회적기업가 발굴 등을 통해서 제도를 확산시켜 나가고 크라우드펀딩 등 자생력을 제고하며, 사회적기업 10주년을 맞이해서 인식 확산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내실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취업 지원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일자리 발굴 전담팀을 확대하고 취업상담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 배치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선 취업능력 향상을 촉진하고 취업성공패키지 I의 취업성공수당을 인상하

는 한편 지급 방식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공공부문을 보완하기 위해 위탁기관을 확대하고 서비스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총 100개소로 확대하고, 워크넷 모바일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직업훈련을 수요자·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훈련의 내용이라든지 규모를 결정할 때 정부의 사전 결정 방식에서 취업 성과와 훈련생 선택에 따라 정해지도록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융합기술훈련이라든지 신산업 중심으로 폴리텍을 개편해서 모범사례를 창출하여 이를 민간에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훈련의 경우에는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의 경우에 드론 등 신산업 분야를 신규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의 훈련 참여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기부담금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대비한 고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 유지를 위해서 노사 합의하에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한편 실업급여 지급을 현행 240일에서 최대 300일, 60일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빠른 시일 내에 조선업 대형 3사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철강 등 주력산업의 경우에 산업·고용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산업인력정보 지도를 만들어서 맞춤형 고용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중심의 고용 지원을 위해서 구조조정 관련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단계를 간소화한다라든지 지정요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위기를 조기에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구성하도록 해서 위기 단계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격차 해소와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입니다.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서 차별 판단기준을 보완하여 재정비하고 매뉴얼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모든 근로감독 시에 비정규직의 차별 여부를 필수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건에 대해서는 취약사업장 1000개소와 불법이 확정적으로 판결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강화하고 새롭게 등장한 특고업종, 예를 들면 대리운전기사 등에 대해서는 계약서 표준안을 마련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비정규직 관리목표를 확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정규직 정책 패키지도 금년 하반기 중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원·하청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하도급이 보편화된 업종에 근로감독을 집중하고, 근로조건 제고를 위한 원청 역할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물류·IT·시멘트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해서 하청업체 근로자를 위해서 사내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 개선을 유도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이 2·3차 협력업체 중심으로 활성화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공정거래 협약을 활성화하고 법 위반 비율이 높은 업종을 집중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근로계층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취약업체 총 2만개소를 선정해서 1월부터 조기에 감독을 착수하겠습니다.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프랜차이즈와 소속 가맹점 등 법 위반 사실을 지표화하여 공개하고 공공기관 입찰에 대한 불이익 부여, 악의적

처벌에 대한 제재 상향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불 예방과 신속한 체불 해소를 위해서 임금 체불 통합신고시스템을 신설하고, 사업주 용자 확대와 소액체당금 한도도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에 대하여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사고가 다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본사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공현장을 동시에 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법·제도적으로는 원청의 산재예방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원·하청 공동의 공생협력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작업환경 측정을 지원하고 특수건강진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급 수준과 기간을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위해서는 복수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과 부분 실업급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한편 취업성공패키지를 근간으로 하는 취업활동을 전제로 한 생계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루누리사업은 신규가입자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배달대행 배달원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정부입법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 정부입법 계획은 외국인력 고용보험 적용 등 총 11건입니다. 조속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는 불임입니다.

첫 번째 불임은 2017년도 예산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해서 붙였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는 금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붙임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2.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김동식) 고발의 건(계속)

(15시35분)

○위원장 홍영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저희가 안건을 좀 보류했던 것이 있습니다. 국정감사 증인 문제인데요. 일단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동식 증인 그다음에 한국GM에 관련된 두 사람은 저희들의 행정 착오로 본인들이 불출석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셔서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바로 세 사람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증거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받아 보고 난 뒤에 이 다음번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고발조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그 세 사람은 그렇게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백종문 본부장 문제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고발 건에 대한 매듭을 짓고 갔으면 하거든요.

○위원장 홍영표 그 부분은 오전에 강병원 위원님께서 긴급동의로 안건으로 해 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절차가 긴급동의가 들어오면 안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하게 되고, 안건이 채택이 되면 그다음에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제가 재청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백종문 본부장이 자신이 불출석한 사유로 ‘수사 중인 사항이고 방통위 국정감사 예정 사항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나머지는 강병원 위원님께서 오전에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법원 판결의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2006년도 선고판결 내용을 보면 국정감사에서의 증언 내용에 ‘진행 중인 재판에서의 범죄 사실 등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제가 될 뿐이지 증언으

로서의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종문 본부장이 그 당시에 정말 불가피하게 나올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아니라 '재판 중인 사항이다'라고 하는 이유만 가지고 불출석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발 건도 아까 세 분과 함께 처리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신보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보라 위원 백종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지금껏 오게 되었는데에 대해서 좀 면밀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상임위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관련한 절차와 의사진행 과정과 간사 간 협의와 이런 절차들을 원만히 계속 거쳐 왔는가,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가에 대해서 좀 짚어 봐야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국감 첫날 9월 26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게 다소 내용이 길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이 사항을 복기해 보자는 차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는데요.

당시 국감 첫날에 4명 정도의 증인이 불출석했습니다. MBC의 백종문, 토다이의 김한스 사장, 대우조선해양의 정성립 회장, 그다음에 갑을오토텍의 박효상 대표 이렇게 불참을 하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었고요. 당시 저희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9월 그날 저녁까지 최종 국감 날짜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을 오늘 증으로 간사 간에 의결 처리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결국 간사 간 합의에 도출되지 않았거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되지 않았습다. 의결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10월 13일 고용부 종합감사한 날이었는데 그날 동행명령장도 발부되지 않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또 12월 23일 환노위 전체회의 회의록을 보면 나와 있는데 당시에 하태경 위원이 간사 중의 한 분이셨고 그 발언에 따르면 간사 간 여러 증인들의 협상과정에서 네 명에 대해서는 2차 출석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9월 26일부터 10월 13일 전에

수많은 출석 요구를 요청하는 증인에 대해서 간사 간 협의가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과 재출석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서 출석을 하지 않은 절차에 대해서 2조, 6조, 12조에 순차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조에서는 증인 출석이 의무화되어 있고 다만 출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다시 한 번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취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불출석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간사 간 협의과정에서 계속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에 대해서도 의결하지 못했고 그래서 실은 증인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출석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소명할 기회를 일차적으로 갖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주 정도 되는 국감 기간에라도 충분히 결정을 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거나 재소환해서 재출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의 절차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또 이행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감이 다 끝나고 나서 증인은 어쨌든 오지 않게 됐지요. 어쨌든 우리 위원회의 의결과정을 제대로 다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고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도 실은 국감 이후에, 12월 23일 이후로도 지금 2월까지 수차례 간사 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일정 정도 합의에 거쳐서 그러면 않는 것으로 하고 김동식 건에 대해서만 오늘 안건 상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건을 제대로 절차상의 절차를 밟지 못한 우리 위원회의 책임도 일정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간사 간의 협의과정을 계속 거쳐 온 과정을 통해서 오늘 전체회의 안건이 상정됐는데 이 과정 모두를 다시 다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냐, 지금 강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긴급동의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상에서는 그런 명칭이 정확히는 없지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77조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국회법상의 선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사위원 간의 합의 절차들을 관례적으로 존중해 왔던 이런 절차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을 계속 물거품으로 만드는 방식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홍영표 하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河泰慶 위원 저도 몇 부분 기억을 못 한 게 있는데 신보라 위원께서 발언 내용들을 다 찾으셔서 정확히 상기시켜 주셨는데……

이 부분이 제가 편파적이고 보복성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아까 이야기한 백종문, 대우조선 정성립 회장 그다음에 토다이 회장 그리고 갑을오토텍 사장 네 사람은 의견 차이로 합의를 못 한 게 아니라 재출석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사람이에요, 네 사람 다. 그게 지금 기록을 찾은 거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유독 한 사람에 대해서만, 아까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이 ‘이유 불 것 뭐 있냐, 다 하자’, 다 하자라고 하더라도 재출석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독 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고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가면서 같이 협치를 해 온 기본 정신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나가면 앞으로도 우리 상임위의 협치의 틀은 깨질 수밖에 없다, 그 대가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래서 간사님들이, 지금 오늘 한정에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김삼화 위원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틀린 게 있는지, 우리 간사 협의에 계속 참여하셨으니까 그러면 지적을 해주세요. 제가 여태까지 합리적으로 안 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원칙대로 했잖아요. 그리고 합의한 것은 존중을 했고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김동식 단일 건만 상황이 되어 있기에 확인을 해 보니까 김동식도 자료 요청 요구를 안 한 거예요, 위원회에서. 그래서 이왕 그렇게 된 거면 GM 두 사람하고 김동식 세 사람 다 세컨드 찬스(second chance)를 주자, 자료 요청을 해서 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결정하자고 한 것이고 그것은 이제 제대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그렇게 집요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난번 국감 때부터 지금까지 합의했던 것을 다 무위로 돌리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저는 김삼화 위원님이 답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삼화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정에 간사님이 출석을 안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에 불출석했던 증인 4명과 관련해서는 그날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바로 다음 회의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결론을 바로 내리지 못했던 것은, 저도 지금 기억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 했던 것 같기는 하고요. 그 이후에 저희 간사 간 회의에서 하태경 간사님이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그때 이미 끝났으니까 새로운 증인 요청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새로운 증인 출석을 다시 요청을 하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서 일부 증인에 대해서는 서로 간사단에서 협의가 됐고 또 일부 증인에 대해서는 그때하고 좀, 그때는 그때 상황으로 이미 끝났고 그 이후의 상황에서는 증인 요청에 대해서, 증인 합의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이러면서 백종문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더 이상 출석 요구를 못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갑을오토텍이나 정성립, 토다이 같은 경우는 아마 출석이 있었지요. 증인이 하도 많아서, 저도 지금 제가 신청한 증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기억을 못 하는데……

○河泰慶 위원 다 안 나왔어요.

○김삼화 위원 다 안 됐던 건가요? 다 안 됐나요?

그 이후에 어쨌든 증인을 새롭게 증인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세 간사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제가 객관적 사실은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여야 또 각 당에서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면서 조정을 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백종문 증인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과 또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새누리당에서 반대해서 채택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협의 때도 고발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도 하태경 간사가 반대를 해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원만하게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문제가 처리되는 것이 맞지만 지금 더구나 4당 체제에서 이제 간사 1명이 반대해 버리면 참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경과들은 지금 말씀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들으셨으니까 위원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 백종문 증인은 지금 노조에 대한 불법 탄압 문제로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고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시니까 아무튼 위원님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득 위원 말하기가 불편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종문 증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본 위원을 비롯해서 계속 증인 건에 대해서 여러 번 의견 제시를 했지만 지금 신보라 위원님이나 또 하태경 간사님이 얘기하신 간사 간의 그러한 합의에 의해서 증인 채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결론이 이미 내려졌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정에 간사로부터 그렇게 들은 적이 없고 만약에 그랬다면 저희 당 위원들이 그 간사 간 합의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삼화 간사님 말씀에 의하면 백종문 증인에 대해서 그렇게 한 기억이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의 노조 탄압이나 여러 가지 부문의 그의 행태로 봐서 증인 채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불충분한 사유로 인해서 고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 당의 많은 위원들은 그 의견을 철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상돈 위원 백종문 증인은 아마 제가 처음에 증인 신청을 하고 이 사안이 반드시 방송 문제뿐 아니라 그야말로 전혀 없었던 건데 방송사에서의 사실상 인권 침해이고 노동 탄압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출석을 했고 제가 이해하는 한 간사들 간의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그

대로 여기에서 그냥 종결을 할 것인가 또는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이것을 전체회의에서 결정하실 것인가 아마 그것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영표 말씀하십시오,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고 증인 채택 문제 관련돼 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그때 당시 간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에 우리 4당 간사 간에 모여 가지고 이 문제를 얘기했을 때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김동식 건 외에는 전부 다 고발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간사 간에 협의를 하면서 의사 표시가 서로 서툴렀는지 아니면 소통이 안 됐는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민주당 한정에 간사가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여기에서 성급하게 처리하기에는 4당 간사, 물론 저뿐만 아니고 김삼화 간사님도 그렇고 하태경 간사님도 그렇고 입장에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처리하지 말고 보류했으면 합니다.

○강병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강병원 위원님.

○강병원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긴급동의를 말씀드리면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국감이라는 게 위원에게는 1년 농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국감을 위해서 위원뿐만 아니라 보좌진 모두가 몇날 며칠 긴 세월을 준비하고 밤을 새워서 준비를 합니다. 본인의 원하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증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증인을 본인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인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몇몇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간사 합의로 고발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위원회가 의무 이행을 못 했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그 이유가 왜 그랬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당연히 한 위원이, 몇몇 위원이 본인의 국감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증인을 신청을 했는데 왜 이게 어떤 간사가 반대를 하면 합의가 안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간사 합의로 고발이 안 된 것이 아니라 고발을 합의를 안 해 줬겠지요. 명확하게 얘기할 것은 얘기해야 되는 것 아

습니까? 출석 요구, 재출석 요구, 동행명령장 그것에 대해서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것을 합의를 안 해 준 사람이 있어서 이것이 다 흐지부지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합의가 되었다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지요. 합의가 안 됐던 것이고 합의를 안 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준비해 왔던 국감이라는 것이 정말 질문 한 번 증인들에게 던져 보지 못하고 지나갔다는 것을 저는 잘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합의가 안 된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명확히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찌 됐든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이 어쨌든 국회법에 따라서 이 증인고발 건에 대해서 동의 안건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정미 위원께서 여기에 재청을 해 주셨고요. 이것에 따라서 저는 국회법에 맞게 처리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다 생각하는 것은 다르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또 여기에서 되겠어요? 그렇게 했었으면 진즉 국감에서 다 해결이 됐겠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긴급동의 낸 것에 대해서 국회법에 맞게, 절차에 맞게 처리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송옥주 위원님.

○**송옥주 위원** 강병원 위원님께서 국정감사의 의의나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실은 저희 국정감사에서 MBC의 노조탄압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 신청과 거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 이에 대한 접근이나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노동위에서 다루어야 될 중요한 이슈를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 참석하지 않은 증인과 그 과정에 역할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기업과 달리 이 MBC의 백종문 건과 관련되어서는 현재 MBC에서도 노조탄압에 지금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노조의 경영진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어서 이것이 공영방송과 그리고 방송의 공정성과 형평성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요성이 있

는 부분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그냥 증인 신청도 안 하는데도 가만히 두는 부분들은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저희 환경노동위의 특히 노동 파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노사관계의 갈등을 조정을 하고 노사가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부분도 목적과 취지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론의 환경뿐만 아니라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에서 백종문 증인과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고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홍영표** 더 계속 논의하시겠습니까?

○**신보라 위원** 그래도 일정 정도 말씀……

○**위원장 홍영표** 신보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보라 위원** 국감에서 실은 굉장히 많은, 강병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위원들이 증인 신청을 합니다. 저도 증인 신청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간사 합의 과정에서 어떤 것은 철회되고 어떤 것은 받아들여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BC 건만 새누리당이 유독 반대했다…… 아마 야당에서도 반대했던 어떤 사안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간사 간 합의에서 일정 정도 계속 철회되고 조정되고 넣고 빼고가 좀 반복됐던 그 기간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안도 그중 하나였겠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러면 지금 이것을 고발의 건을 의결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그 증인에게 어쨌든 우리가 국회 상임위의 적법한 절차를 준용하면서 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쨌든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지 못함으로써 동행명령장도 발부하지 않았고 종합감사에 다시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명할 기회도 갖지 못했습니다, 증인 차원에서는. 그런데 예컨대 국조특위 같은 경우에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 기회를 부여한 후에도 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판단을 거쳐서 고발 여부를 결정해 왔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 번 참석하지 않았고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는 것을 의결하지 못했고 이런 절차들을 거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5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고발의 건을 재의결하자 이것은 조금 우리가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검토해 봤으

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예.

○河泰慶 위원 제가 사실관계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사실관계를 따질 때 속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보라 위원이 부지런해 가지고 당시 속기록을 찾았고 제가 백종문 포함 4인에 대해서는 제출석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발언을 속기록에서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속기록에 제 발언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합의를 안 했으면 이의를 제기했겠지요, 당연히 우리 환노위 분위기상.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 신보라 위원님 빼고 객관적인 속기록에 근거해서 그것을 합의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아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는 일관되게 해 왔습니다. 그분 네 분들은 제출석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계속 이야기를 해 왔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들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합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우기는 상황이면 제가 여태까지 국감에 대해서 증인 협상이나 죽 협상을 주도해 왔던 사람으로서 이것은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 여태까지 해 왔던 공동의 노력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상임위 제대로 하지 말자는 것과 뭐가 다르냐……

아무튼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강행한다면 저도 강력히 항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논의의 방향을 바꿔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정의당은 예전부터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상시국감 체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특히나 노사관계의 문제를 다루는 저희 환노위 경우에는 이 노사 간의 분쟁이라는 것이 국감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365일 계속 현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MBC 문제는 정말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백종문 녹취록 보면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증거 없어도 잘라라, 일단. 그리고 나중에 소송해 가지고 소송비용이 얼마 들어가든 상관없다. 일단 개네들 잘라 놓고 나서, 가만 놔두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처리하자’ 이

런 식의 녹취록이 발표가 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인 중징계, 징계 사태가 끊이지 않습니다.

MBC가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을 위한 방송이어야 되는데 이 방송이 무슨 정권방송처럼 이렇게 되면서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노동자들은 마구잡이로 자르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조의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국민적 이해관계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정감사 때 이 증인을 출석시켜서 이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했던 것인데, 저는 사실 간사 간 협의를 존중합니다만 이 간사 간 합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적이 있었지만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만 되돌아포로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합의가 그렇게 존중되어야 한다면 저는 그 당시에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따져 묻지 못했던 부분들을 환노위에서 재차 다시 증인을 불러서 그 당시의 이 백종문 녹취록의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환노위에서 다시 청문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2월 6일에 여기 환노위에 계신 몇 분들과 이랜드파크 현장조사를 갔습니다. 이랜드파크가 세 차례에 걸쳐서 사과를 했고 그리고 체불임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라고 하는 것을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10월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1월 이십며칠부터인가 그때부터 돈을 돌려주기 위한 이런 작업들이 진행됐다는 것이 확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끝없는 제보를 통해서 확인한 바는 이랜드그룹의 이랜드파크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전사적으로 이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이랜드리테일이라든가 이랜드월드라든가 이런 데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현장조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5대 혁신안을 내놓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사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월 100시간 넘는 연장근로를 시키면서 20시간에 한정되는 포괄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했더니 ‘모든 노동자들이 나가

서 커피 마시는 시간, 인터넷에서 은행 계좌이체 하는 시간 이런 것을 일일이 다 체크해서 휴게시간을 따질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정말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근 자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전체적인 노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5대 혁신안을 이끌고 가고 있다? 저는 이랜드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정말 우리가 근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청문회라도 열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였고 우리가 정말 힘없는 청년노동자들 위한다고 입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이 문제를 그러면 환노위가 여야 없이 뚝뚝 뭉쳐 가지고 한번 해결해 봅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전 오후로 나뉘어서 이 일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국정감사 때 밝혀지지 못하고 공영방송이 이렇게 망가져가는 것을 이대로 방치해 두지 말고 MBC 백종문 증인을 비롯해서 관계자들 다시 불러서 청문회 하고 그리고 이랜드그룹 관련해서도 청문회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정식으로 이 청문회에 대한 안건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홍영표** 청문회 두 개에 대한 안건 요청하신 것이지요?

○**이정미 위원** 예.

○**위원장 홍영표**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돈 위원** 지금 방금 두 개의 안건을 동시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위원장 홍영표** 이랜드하고 MBC 청문회 하자고 하셨습니다.

○**이상돈 위원** 일단 백종문 증인 건을 좀 마무리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러면 좋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사실관계가 걸려서 이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강병원 위원님.

○**김삼화 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홍영표** 예, 김삼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삼화 위원** 지금 백종문 외 3명의 증인 불출석 일이 아마 첫 번째 국정감사 기일이었다고 생

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아까 앞에서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재출석 요구와 관련되어서 그 이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하태경 간사님께서 새로운 증인 출석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증인으로서는 그때는 합의를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아까 네 명에 대해서 부르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얘기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증인으로 소환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누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백종문 증인을 부르지 못하게 된 것은 간사 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1회 기일 이후에는 부르지 못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삼을 수 없을 것 같고요. 1회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법을 제가 지금 보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일에 출석하지 않은 그 문제를 가지고 새롭게 출석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불출석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강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한번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새롭게 재소환을 하고 동행명령장까지 발부가 됐어야만 증인으로 고발을, 불출석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이후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홍영표** 그 부분은 저도 국회법상 확인을 했는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러면 첫 번째 기일에 불출석한 그 문제를 갖고 얘기하면 됩니다.

○**위원장 홍영표** 저희가 의결을 하면 의결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검찰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김삼화 위원** 예.

○**위원장 홍영표** 검찰에 가서 자기가 소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것을 못 하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강병원 위원** 잠깐……

○**위원장 홍영표** 강병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병원 위원** 속기록 얘기를 하셔서 저도 12월 23일자 속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보면 5페이지에 우리 하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재출석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넘어가 보

니까요 그다음 장애는 어떻게 한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전체를 주시면 그 내용을 3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위증과 관련한 내용 고소·고발 건 조치 부분들은 전체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3당 간사들 간에 협의한다, 합의한다라고 했던 건들이 다 안 된 겁니다. 왜 안 됐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뭔가 시원하게 많은 위원들이 요구했던 건이 단 하나도 협의가 되어서 결과물로 온 적이 없습니다. 다 흐지부지됐던 거예요. 국감에 있는 우리 위원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 간사들에게 그 권한을 상임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맡겼던 것인데 위원들이 요구했던 것이 간사 협의로만 가면 아무것도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다 흐지부지되어 버려서 우리 위원들의 모든 권리는 하나도 없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또 김삼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출석을 요구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만 고발할 수 있는 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긴급동의의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홍영표** 그러면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16시11분)

○**위원장 홍영표** 이것은 강병원 위원으로부터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백종문) 고발의 건을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해 달라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맞지요?

○**강병원 위원** 예.

○**위원장 홍영표** 또 이정미 위원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강병원 위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국회법 제89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국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안건을 추가하는 동의의 경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백종문) 고발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백종문) 고발의 건을 오늘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河泰慶 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위원장 홍영표** 표결하고요, 표결하고요.

○**河泰慶 위원** 아니 그 전에도, 긴급동의해서 하려면 4명을 다 해야 된다고요. 왜 그 한 사람만 정치적으로 합니까?

○**위원장 홍영표** 그것은 또 나중에 안건을 하세요.

○**강병원 위원** 그러면 하세요, 따로. 따로 하시면 되지요.

○**위원장 홍영표** 안건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신창현 위원** 그것을 하시면 되잖아요, 하 위원님. 하 위원님 하세요.

○**위원장 홍영표**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그러면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河泰慶 위원** 나갑시다.

아니, 여태까지 잘 해 왔는데 왜……

○**위원장 홍영표** 자, 앉아 주십시오.

○**河泰慶 위원** 이번 달에 다 엉망으로 하시는지 모르겠네.

○**신보라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3인, 찬성 9인, 반대 4인으로……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저는 정말 이것 다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백종문) 고발의 건을 오늘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이자 위원** 그런데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환노위 전부 다 계속 파행입니다. 앞으로 협치가 되겠습니까? 정말 유감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그러면…… 앉아 계세요.

○**신보라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토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148.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백종문) 고발의 건
(16시13분)

○**위원장 홍영표** 의사일정 제148항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백종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백종문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장의 내용 및 접수 등에 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위원님들이 퇴장하셨는데 사실 증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몇 달 동안 서로 논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이랜드 청문회 건과 MBC 노조 탄압에 대한 청문회를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창현 위원** 저도 삼성전자하고 삼성디스플레이 직업병 청문회를 정식으로 안건을 동의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도 또 김미선 직업병피해자가 삼성전자에서 작업하다가 다발성경화증이라고 하는 직업병 판정을 처음으로 받았거든요, 법원에서. 그런데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는 주로 직업병 피해자들이 노동부를 통해서 삼성전자에 요구했던 직업병 피해입증에 관련된 참고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아서, 그것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안 해서 자료를 확보하는 데 국정감사 기간을 다 소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노동부에서 또 산하기관에서 여러 차례 현장조사도 했고 지도감독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세계 일류기업 삼성에 걸맞지 않는 많은 직업병 피해자 발생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왜 그런지 한번 책임 있는 관계자를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고 대책이 없는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문회를 할 때 삼성 직업병 피해자 관련 청문회도

같이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삼성 직업병 관련 청문회입니까?

○**신창현 위원** 예.

○**위원장 홍영표** 그러면 오늘……

○**강병원 위원** 동의 발언을 할까 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추가로 말씀하십시오, 타당성. 다른 위원님들……

강병원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강병원 위원** 예, 저도 국감에서 신창현 위원님과 함께 삼성전자의 작업환경과 산재 연관성을 규명해 내기 위해서 나름 질의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삼성전자 정재륜 부사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삼성전자의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사과를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삼성전자 임원들이 본 의원실을 찾아와서 본인들이 그렇게 다 지우고 국회에 제출했던 안전진단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들에게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저에게. 거의 99% 정도가 다 들어 있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국감에서 문제가 되고 되돌아보니까 거기에서 영업비밀이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1%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안전보건진단서를 제출했었는데요.

아마 삼성전자에서 직업병 혹은 산재를 입었던 많은 노동자들이 본인들의 산재와 삼성전자 작업환경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국감에서 제대로 규명하지 못해서 그분들께 많이 죄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창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삼성전자 직업병 사태에 대한 청문회에 대해서 저도 그 동의에 재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에 위원이 사임하시고 박주민 위원이 보임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박주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법사위에서 환노위로 새로 옮기게 된 박주민 위원입니다.

서울 은평갑 출신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다.

어느 정도 기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환노위 활동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긴급동의로 3건의 청문회 요청의 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동의에 대해 성안하신 문건이 있습니까?

○강병원 **위원** 예.

○위원장 **홍영표** 제안을 정식으로 다시 한 번 해 주시지요.

아까 이정미 위원님이 두 개를 말씀하셨는데 성안을 누가 하셨나요? 하셨으면……

○이정미 **위원** 저는 이랜드 청문회 관련된 성안을 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그러면 지금 성안한 문건을 같이 드릴 수 있습니까? 그 제안을 좀 설명해 주시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위원님께서 어디……

○강병원 **위원** 저는 MBC 노조 탄압 관련 청문회……

○위원장 **홍영표** 그러면 그 자료를 드릴 수 있나요, 위원님들한테?

○강병원 **위원** 복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홍영표** 복사해서 배포해 주시고, 지금 말씀으로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먼저 이랜드부터 하실래요?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이랜드파크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고요. 이랜드파크가 휴업수당, 연차수당, 연장·야간 수당, 임금 미지급 등 금품을 체불했다는 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후에도 임금체불액 산정 등에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시간깎기, 출퇴근 기록 조작 등의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정규직과 계열사 전체에서 포괄임금계약을 악용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것에 대한 수사가 들어갔고 노동관계법 위반행위가 포괄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기업 이랜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등 법 위반의 실체와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함이고요.

날짜는 일단 위원장님과 여기 위원님들에게 일임해서 함께 지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내용은 이것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증인은 이랜드그룹 박성수 회장을 비롯한 리테일·월드·파크 대표이사와 그리고 이 관련 이사들 총 8명을 채택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참고인으로는 전 이랜드파크 애슬리의 정규직 사원이었던 분과 그리고 애슬리 아르바이트 재직했던 분, 그리고 공인노무사로 이랜드파크 정규직 임금체불 진정사건 대리인, 이렇게 세 명을 참고인으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홍영표** 그러면 먼저 실시계획서 받으실 때까지 다시 그러면 MBC 노조 탄압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강병원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강병원 **위원** MBC는 2012년 노동조합 파업 이후에 조합원에 대한 보복성 해고와 징계, 손배가압류, 단체협약 일방 해지, 직종 폐지, 노조진입자 업무복귀 명령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노동조합 탄압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10명이 해고되고 100명이 부당징계, 167명이 부당 전보발령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이 경영진의 해고 및 징계와 부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MBC 경영진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최민희 전 의원이 공개한 백종문 녹취록에 따르면 MBC 경영진은 아무런 증거 없이 최승호·박성제 조합원을 해고했다고 하는 등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스스로 실토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인사노무관리 담당 임원이며 백종문 녹취록의 당사자인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을 신문하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 정치권력에 의해 언론 독립 보장 등의 이유를 대며 출석하지 않았고, 최근에도 노조 임원선거를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청문회를 통해 MBC의 노조 탄압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MBC의 오랜 노사갈등 해소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일정은 협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증인은 안광한 MBC 사장,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의 6명을 증인으로, 그리고 참고인은 정영하 MBC 해직자—2012년 전 노조본부장입니다—외 10명을 참고인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

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그리고 삼성 직업병 관련해서도 성안이 다 안 되셨으면 주요 골격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 나중에 저희가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의결 이후에. 그러니까 신창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신창현 위원** 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인데요, 삼성전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직업병의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정은 이 앞의 일정과 대동소이합니다. 나머지는 추후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지금 저희가 의결을 하려고 했더니 준비하는 데 약 10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질의를 진행해 주시고 저희가 준비를 마치면 바로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위원장님, 그 사이에 제가 두 가지 의사진행, 자료제출 건……

○**위원장 홍영표**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금 국회에서 이미 청소노동자 203명 직접고용을 했고,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의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파주시만 지난 10년 동안 환경미화 업무를 공단 대행으로 운영해 오다가 얼마 전에 다시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민간업체의 용역비 허위청구, 부정수급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민간위탁이 경영효율성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결과도 보여 주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 혈세로 오히려 민간업체의 이익만 보장해 주면서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을 한정 없이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 그래서 사실 국회도 그리고 여러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러한 파주시의 부당한 민간업체로의 위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우리 위원장님께도 다 제출을 했는데 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그래서 파주시에 자료요청을 반드시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관련 내용들이 이렇게 고집스럽게 청소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 시와 용역업체 간의 어떤 불법커넥션의 의혹이 충분히 제기되고 있는 지점들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의결로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첫 번째 의사 진행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12월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다가 새누리당·바른정당, 이 파행으로 인해서 회의가 제대로 소집되지 않고 결국은 1월·2월 임시국회까지 지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2월 9일 날 대통령 탄핵이 되고 나서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해 왔던 수많은 정책들도 함께 탄핵되어야 된다, 특히나 정말 굉장히 많은 우리 노동자들이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 때문에 현장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성과연봉제, 양대 지침 그리고 단체협약 시정명령과 같은 이러한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환노위에서 지난 20대 국회 6개월 내내 이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상당히 있어 왔고, 이 정책을 핵심적으로 추진해 왔던 박근혜정부가 국정농단의 과정에서 결국 재벌들로부터 일정하게 돈을 받고 재벌의 소원수리해 주는 방식으로 이런 지침·명령들을 남발해 왔다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난 이상 환노위 차원에서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약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 부분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본회의에서 다루어 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도 환노위 위원님들의 전체 결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홍영표** 제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 파주시에 대한 자료 제출은 법적으로 저희가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뭐 국정감사 기간이라든지 또 청문회라든지 그런 특별한 자료 제출에 대한 법적 의무를 갖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전체를 대표해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문제는 아무튼 조금 더 진행을 하면서…… 그것을 지금 어떻게 결의를 해 달라고 하시는 거지요?

○**이정미 위원** 박근혜정부 노동개약 추진 중단 촉구의 내용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연봉제, 양대 지침, 단체협약 시정명령, 이 세 가지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개약 정책을 중단하라는

촉구 결의안을 내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그 안이 있으십니까?

○이정미 **위원** 안은 뭐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그러면 안 되고요. 그것은 아무튼 저희가 좀 더 진행을 하면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처리해 놓고 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아직 안 됐지요?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7. 업무보고(계속)

가. 환경부

나. 고용노동부

다. 기상청

(16시30분)

○위원장 **홍영표** 원래 질의 순서는 아닌데 이용득 위원께서 몸이 좀 불편하셔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다른 분들이 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용득 **위원** 예.

○위원장 **홍영표** 먼저 하시지요. 7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득 **위원** 고맙습니다, 순서를 바꿔 주셔서.

오늘 고용노동부 2017년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저는 노동경시 풍조가 여전히 노동부 내에 팽배해있다 하는 이런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에서 확인된 그 문제점, 우려 그리고 제가 지난 40년간 노동운동을 하면서 느끼고 정리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과거 노동부 시절에는 노사관계가 주요 부분이었고 그 후에 일자리, 고용, 이런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로 바뀌고 나서는 노사관계 부분이 거의 경시되다시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용과 노동 사이의 어떤 중심을 잡아 달라, 또한 노와 사에 있어서 균형감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런데 과거 노동부 시절에도 노사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노사관계에 대한 대안과 그런 올바른 노사관계 정착도 못 하고 고용노동부로 바뀌면서 고용 부분에 치중하다가 노사관계는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다, 지금 고용노동부도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지난해 노사분규 건수나 근로손실 일수가 2008년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노사관계는 완전히 파탄 나고 있다 하는 이런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가 전망했던 올해 노사관계의 불안요인, 즉 임금체계 개편이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근로시간 소송문제, 이런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했거나 또는 잘못된 행정해석을 유지했던 그런 결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노사관계가 파탄으로 가고 미래는 전혀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2017년 정책 추진방향에는 그 솔루션에 일자리나 고용서비스, 격차 해소 이런 것들이 전부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안) 1쪽, 2쪽에 보면 주로 고용 부분이고 노사관계는 거의 없지요.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마 이 장관께서는 상생의 노사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저와 다르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건지, 또 노사의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정하시는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강조하신 노사관계의 중요성 또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은 저도 100% 공감합니다. 더구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독일처럼, 독일은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일자리 4.0 하듯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있기 때문에 미래 변화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는 안 들어 있지만 금년도 국민에 대한 1월 9일 날 업무보고 할 때 그래서 노사정 대화의 활성화,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저희들도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보고에 빠진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용득 **위원** 이 장관님,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것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자리들 중의 상당 부분이 현재 우리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이 보호 범위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소위 안전망 구축이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

고 있습니다.

○**이용득 위원** 제 생각에 처음으로 동의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미조직 노동자들이 90% 이상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으로 일자리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거고 또 이 미조직 노동자들은 점점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전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고나 비정규직,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이해 대변 기구를 통해서 정부가 아닌 노와사가 산업과 경제, 노동정책들에 대해서 좀 자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토대와 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 왔고요.

여기에 대한 사회적 대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려서 이제까지의 노사관계의 어떤 질서 이런 게 아닌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체제, 새로운 틀 결이, 새로운 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이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우선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큰 흐름과 미래지향적으로 말씀한 부분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고,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도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과정에 고용 형태, 계약의 형태, 일하는 형태, 일하는 장소의 다양성, 자율결정성이 많이 높여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거기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다양성과 앞서 지적해 주신 사회안전망 또 거기에 걸맞도록 우리 근로자들을 창조적으로 키워가는 여러 가지 몇 개의 이슈를 놓고 다양한 형태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 대화의 틀을 가질 것인가는 어쨌든 당사자 간에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15년도에 제가 노사정 대표로서 합의를 할 때 그런 문제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15년도에는 개별적인 노동시장의 규율을 우선적으로 합의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깊이 있게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논의를 하자고 이렇게 남겨 놨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4차산업이 저희 목 앞에 와 있기 때문에 한번 당사자 간에, 또 필요하면 정부도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미래지향적으로 어떻

게 틀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나갈 시점이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이용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한 분 더 하고 할까요? 그러면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 끝나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던 결의안 관련해서는 별도로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이 작년 12월 28일 날 홍영표 위원장님 대표발의로 18인의 의원들이 낸 이 중단 촉구 결의안 이것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주십사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장관님, 지난 2월 13일 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제가 잘 봤습니다. 그 상황을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IT 업계 청년노동자들 사이에서 떠도는 말이 있습니다. 구로의 등대,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크런치 모드, 먹을 것을 싸 들고 가서 24시간 잠 안 자고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틀 출근하면 일주일이다 간다, 한 번 나가면 2박 3일씩 일하고 이틀 출근했더니 일주일이다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10시에 퇴근하면 반차 12시에 퇴근하면 칼퇴근 이것이 IT 업계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2015년 5인 이상 상용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178.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게임업계는 205.7시간, 15%를 더 일을 하고요. 그중에서 굉장히 중견기업으로 알려진 넷마블의 경우에는 재직자와 퇴직자들의 조사를 총괄해 보았더니 257.8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이런 게임업체들, IT 산업체들이 포괄임금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고서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출퇴근 시간 기록이 굉장히 불투명하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업체에만 아주 특수하게 사용해야 할 그런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이 분명한 IT 업계에서 이것을 대부분 쓰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작년 한 해 동안 이 넷마블에서 세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두 명은 돌연사를 하였는데 이 돌연사가 과로로

인한 그런 사망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이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산재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IT 노동자들에 대한 과로사 위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동부장관님의 답변도 지금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12월부터 2월까지 IT 업종 89개소에 대한 전면적인 서면조사를 실행을 했고 이것에 근거해서 3월부터 기획감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도자료에는 전반적인 서면조사에 대한 서머리(summary) 자료만 저희들이 받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저희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를 주시지 않아서 이 부분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서면조사 기업에는 넷마블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IT 업계 중에서도 특히나 넷마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지금 있고, 넷마블이 이 문제가 저희 의원실에서 토론회를 하자마자 불거지면서 갑자기 사원들에게 1000만 원부터 1억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인센티브를 막 지급한다 이러면서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정황들도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획감독에 대한 대상 중에 넷마블도 정확하게 포함되는 것인지, 그리고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하는 저의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질문을 다 드리고 답변 듣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날 2013년 철도노조의 KTX 민영화 반대 파업에 대해서 대법원이 업무방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올 1월 31일 날 대전지법이 철도공사에 2016년 5월 30일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수규정 개정안이 철도노조 조합원의 기득권과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한마디로 재판부의 판단이 철도노동자들의 민영화 반대 그리고 성과연봉제 반대에 대한 모든 투쟁들에 대해서 불법성을 부인하는 그런 판결들이 계속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는 검찰의 기소나 경찰의 입건, 법원의 판결 단 한 건도 없었지요? 그것은 확인하고 계시지요, 장관님? 검찰 기소나 경찰의 입건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까? 기소, 입건,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직 거기까지는 안가고 고소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가 6월 9일부터 252명의 조합원에게 징계위원회 심의대상자 통보를 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지하철 파업노조 간부 12명을 해고하고 40명의 무더기 징계를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이들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대법원의 판결 그리고 가처분신청 등이 계속 있고 이들을 사법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는데 철도공사에서만 이 사람들을 보복성 징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만히 따져 보면 결국 노동부가 철도공사나 부산교통공사의 이런 무더기 징계를 부추긴 것이 아닌가,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불법 파업이 아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노동부에서 불법이다, 불법이다…… 그 근거를 기회 삼아서 지금 이런 무더기 징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장관님은 공공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대량 징계 절차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이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근거도 제공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이것까지 함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먼저 작년부터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과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단계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법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개별로 보고드렸던 물류나 택배를 일차적으로 다단계 하도급을 했고 이번에 IT 업계를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포괄임금제를 포함해서 넷마블을 포함해서, 서면조사에 넷마블도 들어가 있고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3월부터 IT 업계 감독을 할 때도 포함을 해

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2명 돌연사 관련해서는 우리 두 공단의 이사장께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조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감독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의 원래의 취지, 그러니까 IT 업계라는 그 특성을 하되 연간으로 계속해서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업무의 성격 때문에 하루 가면 20시간 할 수 있지만 연간으로 계속 근로시간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현저히 높다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 또 여러 가지 임금체계, 그러면서 다단계 하도급이 되어 있으면, 물류체계는 저희들이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감독하면서 한 단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1차가 다 채용을 해서 하고 있듯이 좀 미래지향적으로 대안이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감독을 해서 진행 과정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도노조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위법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무죄 선고가 됐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불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당한 파업이 아니고 불법 파업이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파업 과정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께서 철도 노사 당사자도 불러서 합리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달라고 주문도 하였고 저도 이번 파업 과정에서는 노사 당사자들, 전 위원장, 지금 위원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 위원장과 철도공사 대표이사를 불러서 어떤든 우리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임금체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기준도 만들고 그런 노력을 끝없이 해야 된다고 주문을 했고, 그때 당시에 파업 기관에 징계 이렇게 하려는 것도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철도공사 노사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도를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정미 위원 장관님께서, 정부에서 명령·지침 이런 노사현장에 직접적인 개입을 굉장히 많

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징계 문제는 노사 간에 풀어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게 유리한 것은 정부가 개입하고 정부가 책임지기 싫은 부분은 또 노사가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이번의 이 무더기 징계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징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동부가 이 과정에 부당노동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지적과 해결의 주체로 나서셔서 이런 징계가 더 이상 남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위원장으로서도 장관께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철도노조 문제는 법원에서 판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철도청에서 대량 징계하겠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런 측면을 감안하셔서 노사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리고 이정미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면서 한 가지 좀 불명확하게 드린 게 있는데 넷마블은 별도로 수시감독을 저희들이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미 위원 아니, 기획감독에 안 들어간다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자, 말씀하시겠습니까?

따로 설명 드리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한번 찾아뵙고, 어차피 이게 진행하면서 수시로 상의를 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16시49분)

○위원장 홍영표 자,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신창현 위원으로부터 이랜드파크 임금체불관련 청문회, MBC 노조탄압 관련 청문회, 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청문회 개최의 건을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달라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정미·신창현 위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국회법 제89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국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랜드파크 임금체불관련 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청문회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청문회 자료 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을 오늘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0인, 찬성 10인으로 청문회와 관련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청문회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청문회 자료 요구의 건을 오늘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MBC 노조탄압 관련 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청문회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청문회 자료 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을 오늘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0인, 찬성 10인으로 MBC 노조탄압 관련 청문회 관련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청문회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청문회 자료 요구의 건을 오늘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청문회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청문회 자료 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을 오늘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0인, 찬성 10인으로 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청문회 관련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청문회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청문회 자료 요구의 건을 오늘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따른 추가 상정 안건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 이랜드파크 임금체불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6시54분)

○위원장 **홍영표** 의사일정 제149항 이랜드파크 임금체불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문회 실시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문회는 2월 28일 개의하며, 증인선서 후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포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문회 실시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문회 실시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 이랜드파크 임금체불관련 청문회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홍영표** 의사일정 제150항 이랜드파크 임금체불관련 청문회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증인 및 참고인을 선정하고 그리고 오늘 회의 이후 추가로 신청하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간사 위원 간 협의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1. 이랜드파크 임금체불관련 청문회 자료 요구의 건

○위원장 **홍영표** 의사일정 151항 이랜드파크 임금체불관련 청문회 자료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료 요구는 7일 전에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자료 요구 외에 추가로 접수되는 자료 요구는 위원회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당사자나 해당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당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2. MBC 노조탄압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홍영표** 의사일정 제152항 MBC 노조탄압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문회의 실시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문회는 2월 24일 개의하며, 증인선서 후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포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문회 실시와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문회 실시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 MBC 노조탄압 관련 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홍영표** 의사일정 제153항 MBC 노조

탄압 관련 청문회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증인 및 참고인을 선정하고 그리고 오늘 회의 이후 추가로 신청하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간사 위원 간 협의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4. MBC 노조탄압 관련 청문회 자료 요구의 건

○위원장 **홍영표** 의사일정 제154항 MBC 노조탄압 관련 청문회 자료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료 요구는 7일 전에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자료 요구 외에 추가로 접수되는 자료 요구는 위원회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당사자나 해당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당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5. 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홍영표** 의사일정 제155항 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문회 실시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문회는 2월 28일 개의하며, 증인선서 후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포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문회 실시와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문회 실시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 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청문회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7시00분)

○위원장 홍영표 의사일정 제156항 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청문회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증인 및 참고인을 선정하고 그리고 오늘 회의 이후 추가로 신청하는 증인 등의 출석 요구는 간사 위원 간 협의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7. 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청문회 자료 요구의 건

○위원장 홍영표 의사일정 제157항 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청문회 자료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료 요구는 7일 전에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자료 요구 외에 추가로 접수되는 자료 요구는 위원회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당사자나 해당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당 기관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7. 업무보고(계속)

가. 환경부

나. 고용노동부

다. 기상청

(17시02분)

○위원장 홍영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출한 결의안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답변을 주셔야지요.

○위원장 홍영표 그것은 조금 협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진행하면서요.

다음 서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형수 위원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서형수 위원 질의가 한 번밖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죽 질문을 먼저 드리고 답변을 모아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학습병행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발의돼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서형수 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법률이 시기적으로 좀 성급하고 내용적으로 부실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집중적으로 일학습병행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지막 종합질의 때 한 4페이지 정도의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1장 정도로 짧게 왔더라고요.

일단 지금 현재 과연 일학습병행제가…… 제도 도입한 지 한 3년, 만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단계에서 너무 물량 목표에 따라가면서 아직 안정돼 있지 않다는 말씀 하나하고.

또 하나, 원래 이 제도의 모델이 독일의 직업훈련, 도제훈련이라고 보면 실제 독일의 도제훈련을 도입 시도한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다 실패했다고 나옵니다. 그것은 결국 독일이 하고 있는 직업훈련, 역사적·문화적·제도적인 어떤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도입해서 왔던 결과로 지금 정평이 나 있고요.

그에 비해서 가장 우리로서도 중요한 게 지금 현재 표에도 나오지만 우선 우리가 2013년도에 시험 도입하고 난 뒤에 3년 동안 너무 급속하게 물량 목표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내용면을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자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과연 일학습병행제를 수용할 만한, 기업 측에서 그런 어떤 역량이 되느냐…… 기업에서 현장교사의 역량이라든지 시설·장비 역량, 프로그램 역량이 있느냐, 해당 기업이 되지 않으면 그 기업이 속한 산업계 내에서 그런 대비

가 돼 있느냐? 전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산업계가 지금 준비돼 있지 않은 거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사회적 파트너십으로서 상공회의소라든지 지역하고 돼 있는데 전혀 그렇게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규모뿐만도 아니고 지금 현재 도제훈련의 기본은 최소한 기간 자체가 평균적으로 한 4년 정도, 짧더라도 한 3년 정도 보장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처음 도입할 때 1년 정도 했다가 심지어는 6개월 정도로 축소했다가 오늘 보고에 보니까 다시 1년 정도로 환원하던데요.

지금 전체 표를 보면 일단 1년, 2년 프로그램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기업 규모도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50인에서 300인까지 기업이 도제훈련의 한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20인 미만 쪽이 한 20%, 현재 50인 미만자가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 제도의 성숙도로 보나 제도 도입 자체에 봤을 때는 일단 저는 시기가 성급하고 내용도 부실하다.

참고로 뒤의, 조금 전문적인 자료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 결국은 일학습병행제 가운데 있는 거라는 것은 원래 왼쪽에 있는 전문학교, 오른쪽에 있는 대학하고 연계된 하나의 교육시스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교육부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교육시스템하고 이 제도를 어떻게 조화시키는데 대한 고민도 아직 부족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료를 보더라도 일학습병행제, 병행제라는 용어 이해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듀얼시스템이라는 것은 일하고 학습을 병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OJT, 사내훈련과 사외훈련 자체를 병행한다는 뜻이지 일과 학습을 병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부족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도 방금 얘기했듯이 산업 부문과 기업과 정부 자체의 사회적 파트너십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제도 도입 자체는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홍영표 위원장, 김삼화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 문제는 지금 고용부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질 좋은 일자리의 하나로써 단시간 노동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단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제도적 지원이 없습니다. 휴일, 연차, 유급 휴가, 퇴직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단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들도 상시적·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근원적인 발상을 전환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요.

특히 이번에 마사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체 단기근로자 중에서 2700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실직급여 자체는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자체를 부과하는 조치까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회보험에서 보험자가 보험료 의무는 부담하면서 권리는 확보하지 못한 이런 사태 같은 경우는 결국 단기근로자에 대한 우리 고용정책 자체가 얼마나 허술한지 그 사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랜드 건인데요 이랜드가 지금 부실, 미지급금 지급을…… 지난번 우리가 현장에 가니까 기업 쪽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임금채권으로 보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해서 3년 전에 발생한 부분 자체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지적했지만 이것이 순수한 임금채권인지 아니면 부당행위에 따르는 손해배상인지에 따라서, 손해배상인 경우에는 이것은 임금채권 3년의 소멸시효가 아니고 안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설사 3년이 경과한 미지급금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 특히 일종의 사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분들이 만드시 미지급 자체에 대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더입니다.

한 보름 전에 신문에서 ‘실제 실업자 450만 명’이라는 기사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난해에 저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집계하고 있는 실업률이라는 것이 너무 좁은 범위만 적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좁, 전체적으로 우리의 실질적인 체감실업률과 통계에 나온 실업률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2012년부터는 ILO 권고를 받아서……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삼화 1분만 더 주시지요.

○서형수 위원 고용보조지표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고용보조지표라는 용어 자체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분명히

용어 자체가 실질적 실업자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단시간 근로자, 그다음 두 번째는 실제 일을 할 의향도 있고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최근 4주 동안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안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실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포함시켜서 실질적 실업률을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보조지표라는 애매한 용어를 쓰지 말고 실업보조지표라는 용어를 쓰시고, 저 부분도 마찬가지로 연령대별로 정확하게 통계를 좀 내셔서 우리 전체 고용정책을 추진하는 데 형식적 실업률보다는 실질적 실업률을 가지고 정책을 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일학습병행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독일처럼, 독일은 20세기 초반부터 이것을 해 왔고 교육체계와 맞물려 있어서 아주 성공한 제도고요. 저희는 3년 전에 시작해서 일단 졸업한 우리 청년들을 우선 적용하는 상황이라 기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년짜리도 있고 6개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저희 일학습병행제의 도제학교는 재학생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저희가 꾸준히 협의할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보기에 지금 우선은 일학습병행제 자체가 학습 근로자의 지위가 현재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배우는 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산재랄지 최소한의 근로조건 보호랄지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법을 좀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부족한 부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참여 기업에 있어서도 50~300인 기업들이, 소위 중견기업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소기업 쪽이 많다고 지적하신 부분이랄지 또는 여러 가지 기간의 문제랄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위원님께도 보고

드리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초단시간 노동관계법 적용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지난번 1차 노사정 대타협을 할 때 이 문제는 2단계로 전문가와 노사가 모여서 보호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의제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현실적으로 대안이 뭔지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현재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형수 위원** 비용만 부담을 하고 거기에 혜택을 안 주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마사회 경우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용을 할, 그러니까 고용보험료를 받고 나중에 그 일을 안 했을 때 실업급여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당사자 분들은 내가 실업급여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문제 제기를 해서 이 조항은 살아 있지만 현장 적용에서 어떤 애로가 있는지는 또 저희들이 세심히 봐서 이 부분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면 보완을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랜드 관련해서는 이랜드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체불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시간을 꺾었다든지 또는 쥐야 될 당연한 통상임금을 못 줬다든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체불로 보고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손해배상으로 이렇게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여기서 즉답드리기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즉답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KBS, 실제 실업자 450만은 저희가 이제 소위 ILO 규정에 의한 또는 OECD 규정의 실업자 개념으로 하면서 이것이 정부가 고용서비스를, 소위 취업지원 서비스를 해야 할 대상은 꼭 실업자만이 아니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 특히 청년들 경우에는 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할 대상을 거기까지 넓게 봐야 된다고 하고 보조지표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개념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정책의 대상으로 보고 고용보조지표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곳

은 U1, U2, U3로 하고 있는데 보조지표로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U3의 대상을 저희들은 굉장히 넓게 봤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더 넓게 보고 있는 연구기관도 있어서 450만까지 보고 있는데 저희는 전체적으로는 한 300만 명 정도를 U3 대상으로 보고 있고, 청년은 실제 지금 현재 실업자로는 40만 정도로 잡혀 있지만 소위 취업지원 대상, 취업에 로게충이라고 저는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취업준비생들, 졸업 유예자들 하면 현재 100만에서 110만 명을 왔다 가고 있고.

저희들이 청년대책의 시급함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자연적으로 놔두면 130만, 150만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연령 대별로 분석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삼화 서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저는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중에서 안전한 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안전한 일터 조성 사업을 위해서 건설업 안전관리 강화, 하청 및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보호, 사업주 처벌 강화와 같은 계획을 추진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송옥주 위원 1월 초에 본 위원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평택에 있는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2건의 사망 사건에 대한 제보가 들어와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점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고용노동부의 대책만으로는 이 문제가 전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평택 고덕단지의 삼성반도체 공장과 관련돼서 혹시 이 산재 사망이나 그런 것 들어 보셨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사망 사고가 났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보고받았습니다.

○송옥주 위원 삼성전자가 15조 6000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플랜트 공사이고요 시행도 삼성그

룹에 있는 계열사인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고를 보고받기 전에는 국내 굴지의 삼성이라는 회사가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삼성반도체 공장 신축 현장에서 한 달 기간 내에 가스 질식사 와 추락사 등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했고요 자살로 추정되는 1건을 포함해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살펴보니 이러한 문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고 고용노동부가 갖고 있는 대책만으로는 기본적으로 예방이 될 수 없는 사고다, 그야말로 인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스 질식사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가 사전에 작업 공간에 잔여가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만 적절히 준수했다라고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추락사의 경우에는 함석판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에 따른 적정 높이의 안전가벽만 설치해 놓았다면 이 역시도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지금까지 규정이나 법률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건설 현장에서 바쁘면 대충 무시해도 된다는 만연된 규율위반 의식이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삼성반도체 현장에서 본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급박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만성적인 돌발작업입니다.

평택의 삼성반도체 공장은 원래 201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했는데요 반도체 시장이 호황이라는 이유로 공기를 3개월이나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일 야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돌발작업은 근본적으로 근로자들의 작업 주의력을 약화시키고요 안전 예방시스템이 적절히 작동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관도 이런 문제점이 현장에 만연해 있는 것을 잘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송옥주 위원 두 번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안전과 휴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규정된 현행법이 전혀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고법 규정에 의하면 건설 현장에서는 설치 기준에 따라 휴게실과 화장실, 식당, 탈의실이 적절히 공급·제공되어서 근로자들이 충

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자료를 보시면요 휴게실이 없어서 바닥에서 자고 있고요, 저런 시설이나 옆에서 그냥 쭉 그러서 쉬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보면 아주 그냥, 근로자들이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설 데가 없어서 인근에서 저렇게 쉬고 있고요.

그러니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위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마 국회의원들이 찾아간다고 하니까 며칠 전에 부랴부랴 시설을 확충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고 노동자들께서 저희한테 그것을 카톡으로 보내온 바도 있습니다.

현장의 현실이 이런데 고용노동부가 내놓는 계획은 대부분이 지원 강화, 감독 추진, 방지대책 수립과 같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행정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가서서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저희들도 현장에 꼼꼼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옥주 위원** 저희 을지로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는 과정에 기업체, 사 측과 노동자와 관련해서 안전보건협의회를 만들자는 제안을 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주에 해당하는 삼성물산과 엔지니어링이 포함돼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련된 노동조합이, 지금 건설노동자가 있는 건데 안전보건협의회를 만들 때 저희가 하청업체 근로자들도 함께 구성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건설 현장과 관련해서는 원청 근로자들은 대부분 총감독만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업무는 하도급업체 직원들이 담당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논의를 원청 따로 하청 따로 하게 되면 실질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청업체 근로자들도 포함되는 안전보건협의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에게도 요청드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이를 통해서 안전한 일터 조성사업이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달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들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지적하신 건설 현장 하도급업체의 안전에 대한 열악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궁극적으로 건설 현장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록 하도급업체에서 재해가 나더라도 원청이 책임을 똑같이 무겁게 지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입법 개정안에……

현재는 20개의 위험 장소에서만 사고가 났을 때 원청이 책임지고 있는데 모든 작업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원청이 책임을 지는데, 또 책임 범위가 지금 현재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다쳤을 때는 협력업체의 대표에 대해서는 무겁게 책임을 묻는 반면에 원청은 좀 가볍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의 중함도 똑같은 취지로 묻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원청이 책임지고 자기 원청의 바운더리 내에 있는 모든 안전에 대해서 책임질 것이라고 보고 그것이 최고의 답이라고 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발주자나 또는 원청이 여러 가지 혼재 작업, 지금 작업 일정에 대해서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 서두르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방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은 또 현재 저희들이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 관할지청에서 수시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지적사항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감독을 할 때 같이 참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삼화**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현 위원**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PPT를 좀 보면서……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과로사하고 자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같이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체국 집배원이 택배 배달 도중 숨졌다는 기사인데, 2015년 10월에 집배원 토요일무체가 다시 도입이 됐더군요. 1년 만에 우정사업본부가

토요 근무를 부활시켰는데 그러고 나서 토요일 날 배달하다 사망하신 것이지요.

다음, 이것은 아까 이정미 위원도 질의하신 넷마블·엔씨, 게임업체 4명 과로사 또 자살. 자살은 20대 여사원이 사옥 10층에서 투신자살을 했는데 경찰은 우울증과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니냐 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조사 진행 중이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다음, 부장판사님이 대법원에서 과로사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1심, 2심에서는 모두 ‘판사가 무슨 과로사냐’ 해서 기각됐는데 대법원에서 과로사로 인정해야 된다고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다음, 또 역시 대법원에서 학교폭력 지도 업무를 맡았던 중학교 선생님인데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한 것을 1·2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대법원에서 자살로 인정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해서 자살할 수 있다, 고로 이것도 산업재해다라고 판정하신 것이지요.

다음, 역시 대법원에서 기러기 아빠가 과로로 뇌경색이 발생한 사례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좀 편하다는 공공기관인 농어촌공사의 직원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지방으로 발령받아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뇌경색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소개한 이 사례들을 보면 첫째는 아직도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과로사 또는 자살을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데 상당히 인색하구나,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음.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토요일 날 근무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일·가정 양립하자고 홍보·계몽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부터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로. 이게 어디 보건복지부뿐이겠습니까, 장관님? 고용노동부도 해당되지 않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근로시간 공공부문부터 줄여 가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창현 위원** 김경선 국장님, 여성으로서 토요일 근무 전면 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경선**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신창현 위원** 복지부에 박수를 보내고 싶지요? 앉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휴일은 절대 직원들 못 나오게 하자가

제1번 수칙입니다.

○**신창현 위원** 그래서 장관님, 노동부도 복지부 처럼 이런 것이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한번 나게 직원들의 과로 방지 대책을 고민해서 발표를 해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제가 있는 동안은 어떠한 휴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안 나오도록 했는데요. 혹시 실·국별로 다시 봐서 더 보완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선례가 중요하니까 장관님이 그런 지침을 만들어 놓으시면 그다음에 계속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일은 PC 자동 오프제도 해 보고 했는데요, 더 보완이 필요하면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신창현 위원** 다음 페이지.

이것은 너무나 잘 아시는 통계지만 우리나라가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많고요, 2113시간. 쪽 가 보면,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일본이 열일곱 번째 1719시간, 우리가 일본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한 400시간이 더 많아요. 이것은 조금 창피한 얘기 같아요.

다음.

12년부터 16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 유족급여 청구 사건인데 보시다시피 승인비율이 40% 아래인 것 같아요, 10건 중 4건 정도 인정한다. 물론 대개 과로사로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로 분류를 하는데……

그러면 왜 승인 비율이 이렇게 낮은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한번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이분들이 터무니없이 유족급여 청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색하게 판정을 한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로사에 대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닌지, 이것 좀 조사해서…… 이 불승인 사유들 2012년부터 500·450·450·436·427건인데 이 불승인 사유별로 정밀분석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면 좋겠어요. 이것은 왜 불승인됐고 저것은 무슨 이유로 불승인됐는지 이런 것들을 우선 조사해서 왜 과로사가 발생하는지를 한번 역추적해 보자는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그것을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시간이 됐으니까……

1분만 더 주시지요.

다음.

작년 12월 27일 날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과로사 예방 긴급대책입니다.

‘불법적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거나 이로 인한 과로 자살 발생 시 그 해당 기업의 이름을 공표하겠다’, 굉장히 심각한 것이지요. 삼성이나 현대가 자기 회사에서 일하다 과로사로 죽었다라는 것이 공표되면 누가 거기에 취직하려고 하겠습니까? 3D 부서의 하나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일본은 긴급대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장시간 노동의 기준도 월 100시간 이상에서 월 8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자, 이거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시간외근무 월 60시간으로 제한한다, 이런 것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실 것입니다. 다음 회의 때는 이런 것에 관해서 같이 고민한 흔적을 보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일하는 시간이 많아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주 44에서 40으로 이렇게 한 4년을 낮춰서 저희들이 한 200시간 정도, 지금 정확히…… 제가 오래된 기억입니다. 마는 그때 한 200시간 정도 근로시간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13년에서 17년 사이에 사실은 저희들이 또다시 한 190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지금 굉장히 낮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일하는 시간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줄여 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원인별 분석 관련해서는 금년에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기 때문에 할 때……

○신창현 위원 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원인별로 분석을 이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제가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산재가 안 되더라도 건강보험에서 과로사가 있을 때는 지원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굳이

우리처럼 전부 산재로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마지막에 예시해 준 일본의 여러 가지 근로시간 단축이나 명단 공개랄지 이런 부분들도 연구용역하면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함께 상의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김삼화 신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원 위원 장관님, 혹시 노란봉투법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노란봉투법요?

○강병원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가물가물합니다.

죄송합니다.

○강병원 위원 쌍용차 사태 이후에 한 분이 노란 봉투에 4만 7000원을 담아서 잡지사에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쌍용차 손배가 너무…… 47억 원 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강병원 위원 그렇게 좀 거액의 손배를 청구를 해서 그 노동자들의 아픔에 함께하고자 해서 노란 봉투라는 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손잡고’라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노동자들을 다 죽이고 정말 가정도 파탄시키는 손배가압류를 없애자 이런 취지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노란봉투법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노동법안소위를 하게 되면 20일 날 이정미 위원께서 개정안 내신 것들을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도 ‘손잡고’가 만든 그 법안을 함께 발의를 해서 지금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헌법 제33조에 노동삼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의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 같은 경우도 이런 헌법에 있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법이 운용이 되어야 되는 게 맞을 텐데…… 헌법 33조와 큰 틀의 법 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앞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드릴 때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노동시장 규율을 고쳐 나가는 데 개별적 노동시장 규율하고 집단적 규율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다라던 지난번 합의는 개별적 쪽에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삼화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병원 위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장관님하고 노조법에 대해서, 특히 손배가압류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볼까 하고요. 그런 고민 속에서 나중에 노동법안소위 할 때 함께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게 우리 환노위에서 노조법 개정안 의결할 때도 힘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현재 사업주 측에서 하고 있는—무차별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손배가압류는 회사의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이후부터는 기업의 손배가압류는 노조를 파괴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아마 무노조 경영을 자랑삼아 말하는 삼성 같은 경우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서 이 손배가압류를 노조 파괴 시나리오의 하나로써 사용을 했고요. 유성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갑을오토텍, SJM, KEC 등 수많은 기업에서 이 손배가압류를 노조 파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노조의 폭력을 유도하는 전략까지도 그 시나리오에 나와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배가압류가 회사의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는 쪽 노사관계를 보면서, 손배 문제 등등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선진국하고 비교해 보면 법을 지키는 노력을 노도사도 좀 더 해야 된다, 그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난 87년 이후의 30년을 되돌아보면서 노사 모두 법을 지켜서 이러한 원인들을 좀 해소해 가는 노력을 하자……

제가 전에 손배가압류 문제가 심각해서 민사절차법, 노동운동으로 인한 손배가압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때 당시에 한 번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한 예외를 둔다는 것은 어렵다라고 그때 논쟁이 많이 돼서 그러면 최소한 급여에 가압류하는 것은 좀…… 어느 정도 생계가 유지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민사절차법을 고쳐서 급여의 2분의 1, 2분의 1이 또 생계비에 제약이 되면 생계비만큼 못 하도록 그런 보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해 가는 과정에 저희가 느꼈던 것은 무엇보다도 노사 모두 법을 지켜서 손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정답이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민주노총이 집계한 기업의 손배 청구금액은 한 22개 사업장에 1600억 정도 됩니다. 가압류 금액은 175억 정도고요. 실제 MBC 같은 경우는 손배가압류로 195억을 청구를 했습니다. 거기 과업에 참여했던 노조원들은 다 죽으라는 얘가지요. 그런데 대법원이 손해로 인정한 금액은 22억에 불과합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른 제안들 또 한 번 드려 볼게요.

노동조합 단체행동의 결과로 조합원 개인에게도 손배를 물리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개인의 불법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강병원 위원** 그리고 신원보증인에게도 청구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노동조합이라는 단체행동이기 때문에 노조에게 손배가압류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할 만하겠습니다, 정당한 이런 부분은 논외로 치더라도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조합원 개인이나 신원보증인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게 말씀드린 대로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 집행하는 내용을 이것은 되고 안 되고 행정부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강병원 위원** 아니요, 우리가 이제 법을 개정안을 가지고 논의를 할 텐데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법을 개정을 해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집단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배가압류 좋다 이겁니

다. 그러나 조합원과 개인에게까지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려 보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지식이 좀 짧아서 담당 국장이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정지원 국장님.

○**고용노동부노동사협력정책관 정지원** 대법원 2006년도 판례에 의해서 일반 조합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공동 불법행위를 부과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과 그 불법 행위를 기획하거나 지도한 간부들을 제외한 일반 조합원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다만 그 조합원이 안전이나 이런 시설에 있어서의 주의를 요하는 자리에 있는 경우에 그 자리를 이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단순 가담한 일반 조합원에 대해서는 손해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정지원 국장님 말씀…… 제가 대법원 판례도 들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노조법 개정안 논의할 때는 개인이나 조합원에게는 청구하지 않는 부분들이 전향적으로 한번 논의됐으면 좋겠고요.

또 MBC 같은 경우도 손해가압류 금액이 195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굉장히 악의적으로, 노조를 아예 파괴해 버리겠다는 그런 사측의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손해를 인정한 금액이 22억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이렇게 손해가압류를 할 때 노동조합의 존립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손해배상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도 꽤 오래전에 민사절차법 개정에서 개인의 급여 절반 이상 못하도록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민사법상 문제가 여러 개 연결이 돼 있어서, 민사법 문제가 근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것은 되고 안 된다고 답 드리기는 어렵고……

○**강병원 위원**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자 이런 말씀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소위할 때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할 때 경감 청구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의행위의 원인과 경위, 배상 의무자의 경제 상태, 사업자의 영업 규모라든지 시장상황 등도 고려를 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손해배상형을 정말 기업이 청구하는대로 무조건 다 받을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경감들도 한번 고민할 수 있게끔 범조항에다 삽입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전반적으로 손해가압류가 근로자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자는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 하나하나가 이렇게 제도로 우리 법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민사법하고 가능한지 여부는 법률적인 문제라서 저희들이 깊이 고민을 해야 될 요소라고 보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병원 위원** 하여튼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노조법 노동법안소위에서 얘기할 때는 충분히 이런 문제도 함께 고민이 돼서 정부와 활발한 토론이 돼서……

정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삼권이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에서는 말살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손해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악용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조합원 개인에게까지도 너무나 죽음으로, 가정파탄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도 합리적으로 범으로써 구제할 수 있는 좋은 방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폭넓게 정부와 논의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영표** 강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화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장관님, 작년에 9월부터 10월까지 한 달 동안 237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용역계약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 표 안 나왔나요?

잠깐만요, 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지침 지키는지 보고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예,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시중노임단가는 보니까 한 절반 정도밖에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최근에 부산 금정구와 용역계약 체결해서 생활폐기물 처리하던 업체 두 곳이 청소노동자 인건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이랬다가 구의회 항의 받고 뒤늦게 지급했던 일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이 자치단체에 가급적 용역근로자 지침을 지키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조사에서도 절반밖에 지키지 않은 것처럼 공공부문 용역근로자가 받아야 될 정당한 임금이 중간에 용역업자에 의해서 빼이는 그런 사례가 이번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한참 문제가 됐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목숨을 잃었던 김 군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월급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130만 원에 수당을 다 합쳐도 월급은 최대 160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니다, 작년에 김 군 같은 경우에. 그런데 서울메트로에서는 시중노임단가 적용해서 계약서상에는 일인당 240만 원을 노무비로 책정을 해 놔던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나중에 구의역 사고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에서 서울메트로 담당자가 ‘임금 등 경영사항은 하청업체로부터 별도로 보고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하청업체인 은성PSD는 정부지침은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것? 그래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 2017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부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지키지 않는 용역업체는 최대 3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지

침 준수 여부를 발주처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금년도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김삼화 위원** 그런데 지침 위반하면 용역업체한테 3개월 입찰참가 제한하는 게 그 기간 동안에 입찰이 없으면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금년에 우선 시행을 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 문제를 따져서 더 필요하면 좀 보완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부분은 공공기관에서는 굉장히 중시 여기기 때문에, 자기 원청의 경영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아마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이 지침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렵게 기재부한테 그 평가방안에 넣어 달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김삼화 위원** 3개월 넣었다는 데 의미가 있겠지만 적어도 1년 정도는, 최소한 1년 정도는 공공계약 입찰자격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조금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장관님 미국의,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도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맥나마라 오하라 서비스(McNamara-O'Hara Service) 계약법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때 지적을 해서……

○**김삼화 위원** 그 법은 미국 정부에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체결된 계약사업하에 고용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유사업무 종사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에 부합하는 임금과 부가급여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그런 법이고 또 임금 수준도 최저임금보다는 훨씬 높게 책정을 하도록 돼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상당히 강력한 제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 3년 동안 정부 계약에 입찰을 할 수가 없고 엄청난 금액의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미국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나라도 도입을 검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보호지침에 의하면 발주기

관은 용역업체가 제출한 근로조건 보호 약약서의 약약 내용 이행 여부 수시로 확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김삼화 위원** 그런데 2015년에 조사한 것을 보면 노동관계법 위반을 한 게 많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약서 위반 사실을 적발한 적 있다’ 이렇게 응답한 발주 공공기관은 그렇게 많지 않은 소수에 불과해서 7개 기관의 11개 용역계약에 불과하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발주기관도 약약서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강제성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주기관이 용역업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그런 고용노동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계약 용역업체의 임금 또 근로조건 관련 정보 이런 것도 수집을 해서 이것을 그냥 개별 공공기관이나 용역업체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좀 중앙집중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한다든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공공기관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 정보를 입력한다든가 또는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한다든가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준수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기관이라든가 또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감독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장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 공감을 합니다. 특히 발주기관이 자기 용역업체들이 시중노임단가를 지키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금년도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요소에 소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준수되느냐 여부가 평가요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지키는지, 앞서 부분이 체크가 되어야 반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완되도록 저희들도 현장점검을 할 때 유념해서 하겠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공기관들이 자기 용역업체에서 이게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한테 전부,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해서 저희들 망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입력되는 상황을 보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 가면서 어려운 부분은 미국 같은 경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오하라 서비스 계약법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의 임금이 낮아서 시장의 임금을 적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공공부문이 시장보다 조금 높아서 이런 고민들이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김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김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장관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해서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의 경우에 특별감독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감독관 집무규정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서 오늘 두 개 사업장에 대해서 특별감독을 꼭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회사는 동광기연입니다.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이 회사가 바로 설 명절을 코앞에 두고 노동자 전원에게 문자로 해고통보를 날렸습니다. 정말 이것 너무나 처사 아닙니까?

이 회사가 2년 동안 인천에서 익산, 익산공장이 불났다고 다시 인천, 다시 인천에서 안산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 뺄뺄이를 돌렸던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 직원들이 수십 년 동안 동광그룹 내에서 동광기연을 가장 탄탄한 회사로 잘 키워왔던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폐업을 결정하면서 다 해고통보를 한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회사는 노동조합과 ‘폐업의 경영환경 초래 시 자구안 마련 등 관계사로의 순환근무 등의 고용 보장’ 2016년 4월 29일 단체협약 노사합의 이것을 체결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사들이랑 이 합의를 같이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분들을 고용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다른 계열사로 보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합의를 했는데도 그냥 일방적으로 해고를 했다는 것 그리고 이 회사가 폐업을 하는 과정에 남동공단 공장의 매각대금 330억 원으로 계열사 주식이 격을 높여서 순환출자구조를 통한 2대 경영 세습 과정에 대한 의혹도 지금 불거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서, 지금 다 길바닥에 앉아 있어요. 단체협약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파기하고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거리로 내쫓은 이런 기업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창원 소재의 한화테크윈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해고를 시키고 나서 중노위의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복직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것 안 하고 90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납부하고 나서 지금 나몰라라 손 떼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관리자료를 동원한 지속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있고 또 복수노조를 이용한 노조 파괴행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수노조의 교섭권 관련된 갈등과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창원지법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노조교섭요구 사실공고 이행가처분 이것을 인용했다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교섭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 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지금 적법한 여러 가지 법원의 판단과 처분이 있었는데도 이행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이행할 것을 즉각적으로 특별감독을 통해서 관리감독 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이 두 개 좀 살펴봐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자세한 내용을 한번 잘 살펴봐서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벌써 끝나셨어요? 모처럼 일찍 끝나셔서……

○**이정미 위원** 제가 3분만 쓴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다음 서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형수 위원** 아까 장관님 일학습병행법의 주

취지가 학습근로자의 권리 보호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독일에도 법제로 보면 직업훈련법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벌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라는 기왕에 법을 두 개를 벌써 갖고 있습니다. 또 새로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학습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면 기왕에 있는 법에다가 이것을 저는 포섭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그게 성격이 다르다 그러면 고용부가 잘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침 하나 만드세요. 만드셔서 가지고 그 지침으로 하면 충분히 될 겁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랜드 건 하면서 제가 조금 빠뜨린 게 있는데 설사 그것이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래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우리 민사법 체계에 보면 소멸시효 이익 자체를 포기를 하면 일단은 그 권리 자체는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이랜드그룹의 사과문을 보면, 1월 16일자 사과문을 보면 ‘우선 이랜드파크의 아르바이트 직원 분들께 과거의 미지급 사례들까지 확인하여 미지급분 및 지연 이자까지 빠짐없이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이것은 3년이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설사 임금채권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소멸시효 포기로 보시든가, 아니면 불법행위에 따르는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셔서 권리구제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작은 건입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보면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고도 지금 실제로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질병 자체가 사실은 작업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어떻게 보면 아주 중소규모 산단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사실 저희 지

역구인 양산이나 웅상 같은 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를 좀 강화해 주시고.

또 여기에 필요한 게 근로자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심이라든지 대기업이 몰려 있는 큰 공단보다는 소규모 공단, 아주 작업환경이 어려운 쪽에 이 건강센터를 적절하게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방금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불법쟁의행위에 따르는 손배소와 가압류에 대해서 일단 장관님은 계속해서 민사법 체계를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민사법 체계의 근본은 민법이지 않습니까? 민법 2조에 보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는 게 2조 1항이고요, 2조 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자들이 하고 있는 손해 배상이나 가압류는 전형적인 신의칙 위반과 권리 남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까 그런 금액 자체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정한 제한 내지는 감경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장관님이 지금 까지 죽 계시면서, 제가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노동자 조직률이 민간 부분은 한 8%밖에 안 되더라고요, 조직률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낮은데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적용률은 한 85% 정도 되고 산별노조 형태로 조직해서……

저희들도 어쨌든 지금 노동시장에서 차별 철폐, 차별 축소하기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보상할 경우에 단체협약 자체의 확장 적용을 가져가야 되는데 과연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장관님 나름대로 해안이 있는지 제가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셔서 혹시 제가 순서를 바꾸더라도 깊이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학습근로자 일학습병행제는 교문위에서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할 경우에 근로자를 버리지 않는 것을 기본 취지로 담고 있어서 이게 현장에서 나중에 좀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위원님이 지금 일학습병행법을 독일과 비교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 지적은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보완을 하면서라도 일학습

병행법은 법적 근거를 빨리 들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 번 위원님께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 근거를 두면서 제도적인 부분은 위원님이나 환노위에 수시로 보고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앞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더 보완할 부분은 수시로 보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랜드 관련해서 미지급 지연 이자 이런 민사법적인 문제 또 임금채권 시효 관련 문제는 제가 위원님만큼 법률적 지식이 깊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방금 주신 말씀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한번 법률 검토를 해 보겠고요,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리는 것은 아직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근로격계 관련 중소기업들 소위 유해 요인 조사 관련은 저희들도 그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관련된 TF를 운영을 해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운영하는 과정에 특히 위원님 중소기업들 사정을 현장에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의를 드리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로자건강센터는 특히 병원 가기가 좀 어려운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게 실효성이 높다고 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배소 관련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프랑스 노동자 조직률은 8%, 단체협약 적용률은 85%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가 개별기업 개별노사 교섭으로 인해서 변화에는 빨리 대응할 수 있으나 격차가 커지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협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장관하기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한 강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중간 차원에서 위아래를 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봐서 업종별이나 지역별로 그런 어떤 격차를 줄이는 논의구조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은 노사 간에 많은 논의와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가질의가 없으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오늘 저희가 몇 가지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이번 달에 법안소위가 이미 예정돼 있는데 지금 법안소위원장을 놓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표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저희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이 비판받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로 국가가 표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위원님들이 안 계시지만 법안소위원장 문제, 특히 고용노동법안소위의 위원장 문제를 조속히 결론을 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회의가 열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강병원	김삼화	문진국	박주민
서형수	송옥주	신보라	신창현
이상돈	이용득	이정미	임이자
장석춘	하태경	홍영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전문위원	김양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장관	조경규
차관	이정섭
기획조정실장	이운섭
환경정책실장	이민호
물환경정책국장	홍정기
자연보전국장	박천규
자원순환국장	김동진

기후대기정책관	김법정
상하수도정책관	오종극
환경정책관	김영훈
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국제협력관	황석태
대변인	유제철
감사관	주대영
기상청	
청장	고윤화
차장	남재철
기획조정관	이우진
예보국장	정준석
관측기반국장	유희동
기후과학국장	김성균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장동언
지진화산센터장	이미선
수치모델링센터장	이동규
운영지원과장	김영동
수도권기상청장	진준모
부산지방기상청장	김남욱
광주지방기상청장	권혁신
강원지방기상청장	육명렬
대전지방기상청장	서장원
제주지방기상청장	김세원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김금찬
국립기상과학원장	박호훈
국가기상위성센터장	박오웅
기상레이더센터장	박정규
항공기상청장	김종석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정홍상
APEC기후센터원장	홍성유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장	백운석
국립생물자원관장	박광석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김나정
화학물질안전원장	송형근
한강유역환경청장	이경용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최홍진
금강유역환경청장	김상훈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박미자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정병철
원주지방환경청장	
대구지방환경청장	

새만금지방환경청장 조 병 옥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 병 성
 국립공원관리공단 이 박 보 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 용 주
 국립생태원장 이 희 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 재 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안 영 희
 고용노동부 이 기 권
 장관 고 영 선
 차 관 박 종 길
 기획조정실장 문 기 섭
 고용정책실장 임 서 정
 노동정책실장 나 영 돈
 노동시장정책관 권 혁 태
 고용서비스정책관 김 경 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 박 성 희
 고령사회인력정책관 권 기 섭
 직업능력정책국장 정 지 원
 노사협력정책관 정 형 우
 근로기준정책관 류 경 회
 공공노사정책관 김 왕 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김 용 호
 정책기획관 정 민 오
 국제협력관 황 보 국
 대변인 조 병 기
 감사관 장 신 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이 주 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송 문 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이 태 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김 영 국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오 복 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신 영 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직무대리 박 준 성
 중앙노동위원장 임 인 택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장 정 정 식
 고용보험심사위원장 심 경 우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 영 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영 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 영 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 승 규
 한국고용정보원장 이 재 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오 광 성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엄 현 택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 사 우 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김 기 영
 한국잡월드이사장 장 대 익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 영 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사무총장 직무대리 권 재 록

【보고사항】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조원진	배덕광	새누리당	2017. 2. 13.

○의안 회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

(2017. 1. 19. 장석춘·정병국·문진국·김석기·박명재·강석진·홍철호·이종명·주광덕·성일종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 1. 19. 정부 제출)
 이상 2건 1월 20일 회부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17. 1. 20. 이용호·김관영·오세정·조배숙·정인화·장정숙·주승용·소병훈·김광수·황주홍·서영교·김삼화 의원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7. 1. 20. 임이자·장석춘·문진국·홍문종·강석호·윤종필·金成泰·김한표·김승희·이양수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7. 1. 20. 신창현·강창일·권미혁·김병관·김병기·김상희·김성수·김정우·김한정·김현권·박재호·박정·박주민·박찬대·설훈·소병훈·송옥주·안호영·어기구·우원식·위성곤·유동수·유승희·유은혜·윤관석·윤후덕·이원욱·이철희·이학영·이훈·조승래·최명길·최운열·표창원·홍영표·홍익표·황희 의원 발의)

이상 3건 1월 23일 회부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7. 1. 24. 박인숙·김세연·김무성·황영철·주호영·권성동·하태경·박성중·김재경·정병국·이종구·김영우·이학재·정양석·홍문표·이진복·홍일표·김학용·여상규·장제원·강길부·오신환·유의동·이혜훈·김용태·이은재·정운천·유승민·이군현·박순자·황희·김철민·남인순·박주민·김현아·이명수·신상진·황주홍·서영교·김성원 의원 발의)

1월 25일 회부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2017. 1. 25. 정동영·황주홍·윤영일·윤종오·박주현·김종민·김경진·권은희·노웅래·김종회·김광수·최도자·김관영 의원 발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생물다양성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 2017. 1. 25. 정부 제출)

이상 3건 1월 26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17. 1. 26. 강병원·김한정·위성곤·김병기·신창현·박찬대·송영길·이용득·진선미·송기현·박재호·서형수·김현권·소병훈·양승조·김현미 의원 발의)

1월 31일 회부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

(2017. 1. 31. 유승민·박인숙·유의동·하태경·이은재·정병국·김세연·이종구·김무성·이군현·여상규·오신환·강길부·장제원·홍일표·정양석·김현아·주호영·이학재·김학용·김용태·홍문표·이혜훈·황주홍·박성중·서영교·정운천·황영철·권성동·이진복·김성태·남인순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

(2017. 1. 31. 유승민·박인숙·유의동·하태경·이은재·정병국·김세연·이종구·김무성·이군현·여상규·오신환·강길부·장제원·홍일표·정양석·김현아·주호영·이학재·김학용·김용태·홍문표·김재경·이혜훈·황주홍·박성중·서영교·정운천·황영철·권성동·이진복·김영우·김성태 의원 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 발의)

(2017. 1. 31. 박정·이찬열·노웅래·윤후덕·

박광온·안규백·김병관·이개호·정인화·도종환·신경민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1일 회부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 발의)

(2017. 2. 1. 김종민·권철승·김영주·김종대·양승조·윤소하·이정미·인재근·최인호·추혜선·황희 의원 발의)

2월 2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 발의)

(2017. 2. 2. 이종걸·김종민·정재호·서영교·강창일·민병두·김경진·박용진·노웅래·유성엽·심재권 의원 발의)

2월 3일 회부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7. 2. 6. 한정애·김성수·김정우·김종훈·박정·박찬대·박홍근·변재일·소병훈·송옥주·최도자 의원 발의)

2월 7일 회부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 발의)

(2017. 2. 7. 어기구·김경진·이찬열·민병두·홍의락·김성수·박정·민홍철·윤관석·김병욱·소병훈·김영춘 의원 발의)

2월 8일 회부됨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7. 2. 9. 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욱·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17. 2. 9. 어기구·박정·문미옥·손혜원·오영훈·위성곤·우원식·서영교·전해철·정재호·박남춘·조승래·윤후덕·도종환·유동수·기동민·이철희·김한정·박찬대·김병욱·김현권·소병훈·김철민·박영선·김병기·김정우·김현미·박용진·유은혜·김영호·송옥주·이재정·최운열·정성호·박광온·권미혁·김상희·송영길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0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7. 1. 24. 양승조·김정우·윤소하·전혜숙·
김상희·김영진·설훈·강훈식·이찬열·
이개호 의원 발의)

1월 2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2017. 2. 1. 김영우·전희경·신보라·정성호·
김종석·김현아·정병국·이현재·홍철호·
김성원 의원 발의)

2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재외동포기본법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17. 2. 6. 김경협·박재호·박정·추미애·
박주민·전혜숙·박남춘·설훈·김병욱·
소병훈·심재권 의원 발의)

2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17. 2. 7. 전해철·홍익표·황희·박정·
소병훈·박찬대·오제세·윤관석·박홍근·
민홍철·정성호·김정우 의원 발의)

2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